

A study on the measures of increasing local tax
revenue in Goyang City

고양시 지방세 수입 증대방안 연구

석호원
이주현

A study on the measures of increasing local tax revenue in Goyang City

고양시 지방세 수입 증대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석호원(고양시정연구원, 시민정책연구부,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이주현(고양시정연구원, 시민정책연구부, 위촉연구원)

발행일 2019년 10월 31일

저자 석호원, 이주현

발행인 이재은

발행처 고양시정연구원

주소 1039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빛마루방송지원센터 11층

전화 031-8073-8341

홈페이지 www.gyri.re.kr

S N S <https://www.facebook.com/goyangre/>

I S B N 979-11-89636-35-7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고양시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7
제2장 지방세 체계	9
제1절 지방세의 의의	11
제2절 지방세 체계	13
제3장 지방세 수입 영향요인 분석	17
제1절 시·군 지방세 세목별 특징과 선행연구 검토	19
제2절 분석모형의 설정	52
제3절 분석결과 및 해석	55
제4장 고양시와 유사(類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 비교	71
제1절 지방세 수입 일반현황 비교	73
제2절 지방세 세목별 세부항목 수입현황 비교	94
제5장 시사점 및 정책제언	151
제1절 연구의 시사점	153
제2절 정책제언	167

참고문헌 175

Abstract 179

표 목차

[표1-1]경기도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현황	5
[표2-1]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 과목구조	13
[표2-2]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체계	16
[표3-1]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21
[표3-2]주민세 구성과 세율	24
[표3-3]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27
[표3-4]자동차세 소유분 과세표준 및 세액	30
[표3-5]담배소비세 과세표준과 세율	32
[표3-6]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 규모	33
[표3-7]지방영업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개편방안	36
[표3-8]지방세 수입 영향요인 및 구성변수	54
[표3-9]시와 군의 지방세 수입 영향요인 패널분석 결과(단위(천원))	55
[표3-10]시와 군의 사업체 수 및 종사자 규모(2017년 기준)	57
[표3-11]시 인구 규모에 따른 지방세 수입 영향요인 패널분석 결과)	59
[표3-12]산업종분류 기준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도시규모별, 2017년 기준)	61
[표3-13]종사자 규모 기준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도시규모별, 2017년 기준)	62
[표3-14]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자가상승률과 지방세 수입 간 상관분석 결과	67
[표3-15]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자가상승률과 지방세 수입 편상관분석 결과	68
[표4-1]고양시 주민세 연도별 구성항목 금액 및 비율(2011-2017년)	96
[표4-2]5개 대도시 주민세 구성항목 금액 및 비율(2011-2017년)	102
[표4-3]고양시 재산세 연도별 구성항목 금액 및 비율(2011-2017년)	109
[표4-4]5개 대도시 재산세 구성항목 금액 및 비율(2011-2017년)	114
[표4-5]고양시 자동차세 연도별 구성항목 금액 및 비율(2011-2017년)	122
[표4-6]5개 대도시 자동차세 구성항목 금액 및 비율(2011-2017년)	125
[표4-7]도시규모별 1인당 자동차세 수입과 1인당 등록 자동차 대수의 상관관계(1)	129

[표4-8]고양시 담배소비세 연도별 구성항목 금액 및 증가율(2011-2017년)	131
[표4-9]도시규모별 담배소비세 수입과 흡연율과의 상관관계	134
[표4-10]고양시 지방소득세 연도별 구성항목 금액 및 비율(2011-2017년)	137
[표4-11]5개 대도시 지방소득세 구성항목 금액 및 비율(2011-2017년)	142
[표4-12]5개 대도시 산업중분류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2017년 기준)	147
[표4-13]5개 대도시 기업 규모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2017년 기준)	148
[표5-1]시와 군의 사업체 수 및 종사자 규모(2017년 기준)	153
[표5-2]시와 군의 산업중분류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2017년 기준)	154
[표5-3]5개 대도시 지방세 징수율(2011-2017년)	159
[표5-4]5개 대도시 주민세 징수율(2011-2017년)	159
[표5-5]5개 대도시 재산세 징수율(2011-2017년)	160
[표5-6]5개 대도시 자동차세 징수율(2011-2017년)	161
[표5-7]5개 대도시 지방소득세 징수율(2011-2017년)	162
[표5-8]5개 대도시 담배소비세 징수율(2011-2017년)	162
[표5-9]5개 대도시 종합소득세 징수율(2011-2017년)	163
[표5-10]5개 대도시 양도소득세 징수율(2011-2017년)	163
[표5-11]5개 대도시 법인세 징수율(2011-2017년)	164
[표5-12]5개 대도시 징수촉탁 수수료(2011년-2017년)	171
[표5-13]지방세외 수입 20% 이상 증가 항목(2014년 대비 2017년)	173

그림 목차

[그림3-1]대도시 지역의 전세 및 자가 비율	63
[그림3-2]고령자 특성Ⅰ(교육수준, 2017년 기준)	65
[그림3-3]고령자 특성Ⅱ(소득수준, 2017년 기준)	66
[그림3-4]고령자 특성Ⅲ(기초연금 수급율, 2017년 기준)	67
[그림4-1]5개 대도시 인구변화(2011-2017년)	73
[그림4-2]5개 대도시 총세입(2011-2017년)	74
[그림4-3]5개 대도시 총세입(1인당, 2011-2017년)	75
[그림4-4]5개 대도시 지방세 수입(2011-2017년)	76
[그림4-5]5개 대도시 1인당 지방세 수입(2011-2017년)	77
[그림4-6]5개 대도시 총세입 대비 지방세 수입 비중(2011-2017년)	78
[그림4-7]5개 대도시 주민세 총액(2011-2017년)	79
[그림4-8]5개 대도시 1인당 주민세(2011-2017년)	80
[그림4-9]5개 대도시 지방세 수입 대비 주민세 비중(2011-2017년)	81
[그림4-10]5개 대도시 재산세 총액(2011-2017년)	82
[그림4-11]5개 대도시 1인당 재산세(2011-2017년)	83
[그림4-12]5개 대도시 지방세 수입 대비 재산세 비중(2011-2017년)	84
[그림4-13]5개 대도시 자동차세 총액(2011-2017년)	85
[그림4-14]5개 대도시 1인당 자동차세(2011-2017년)	86
[그림4-15]5개 대도시 지방세 수입 대비 자동차세 비중(2011-2017년)	87
[그림4-16]5개 대도시 담배소비세 총액(2011-2017년)	88
[그림4-17]5개 대도시 1인당 담배소비세(2011-2017년)	89
[그림4-18]5개 대도시 지방세 수입 대비 담배소비세 비중(2011-2017년)	90
[그림4-19]5개 대도시 지방소득세 총액(2011-2017년)	91
[그림4-20]5개 대도시 1인당 지방소득세(2011-2017년)	92
[그림4-21]5개 대도시 지방세 수입 대비 지방소득세 비중(2011-2017년)	93

[그림4-22]고양시 주민세 및 종업원분 추이(2011-2017년)	95
[그림4-23]고양시 주민세 세부항목 추이(2011-2017년)	95
[그림4-24]5개 대도시 주민세 및 종업원분 수입(2017년 기준)	97
[그림4-25]5개 대도시 주민세 세부항목 수입(2017년 기준)	97
[그림4-26]5개 대도시 주민세 구성 비율(2017년 기준)	98
[그림4-27]주민세 및 종업원분 수입 추이(경기 고양시와 4개 도시 평균, 2014-2017년)	100
[그림4-28]주민세 세부항목 수입 추이(경기 고양시와 4개 도시 평균, 2014-2017년)	101
[그림4-29]고양시 재산세 추이(2011-2017년)	108
[그림4-30]고양시 재산세 구성항목 비율 추이(2011-2017년)	108
[그림4-31]5개 대도시 재산세 수입(2017년 기준)	110
[그림4-32]5개 대도시 재산세 구성 비율(2017년 기준)	111
[그림4-33]재산세 세부항목 수입 추이(경기 고양시와 4개 도시 평균, 2011-2017년)	112
[그림4-34]5개 대도시 아파트 가격 추이(2012-2017년)	119
[그림4-35]5개 대도시 자기변동률 추이(2011-2017년)	120
[그림4-36]고양시 자동차세 세부항목 추이(2011-2017년)	121
[그림4-37]5개 대도시 자동차세 수입(2017년 기준)	123
[그림4-38]5개 대도시 자동차세 구성 비율(2017년 기준)	124
[그림4-39]자동차세 세부항목 수입 추이(경기 고양시와 4개 도시 평균, 2011-2017년)	125
[그림4-40]자동차세 수입과 1인당 자동차 대수의 상관관계	128
[그림4-41]5개 대도시 자동차 등록대수(2017년 기준)	129
[그림4-42]5개 대도시 유류보조금(2017년 기준)	130
[그림4-43]5개 대도시 담배소비세 수입(2017년 기준)	132
[그림4-44]5개 대도시 담배소비세 추이(2011-2017년)	133
[그림4-45]5개 대도시 흡연율(2011-2017년)	134
[그림4-46]고양시 지방소득세계 및 세부항목 추이(2011-2017년)	135
[그림4-47]고양시 지방소득세 구성항목 비율(2011-2017년)	136

[그림4-48]5개 대도시 지방소득세 수입(2017년 기준)	138
[그림4-49]5개 대도시 지방소득세 구성 비율(2017년 기준)	139
[그림4-50]지방소득세 세부항목 수입 추이(경기 고양시와 4개 도시 평균, 2011-2017년)	140
[그림5-1]지가변동률 추이(도시규모별, 2011-2017년)	157
[그림5-2]아파트 가격 추이(도시규모별, 2012-2017년)	158
[그림5-3]5개 대도시 징수축탁 수수료(2011-2017년)	171

요 약

1.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지방세입(地方歲入)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공공수요 충족을 위한 자원조달 활동의 결과로서 정책실행력 담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의의를 지님
 -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의 복지증진에 있으며 이러한 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서는 분권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신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신장은 재정역량의 함수이며, 이는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통해 현실화할 수 있음
 - 즉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신장 및 재정역량 강화는 지방자치의 목적달성을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음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이 일상화된 뉴노멀 시대의 도래와 함께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팽창하는 반면 저성장으로 인한 지방세입의 신장성은 둔화되고 있음
- 고양시 지방세 수입은 수원, 성남, 용인, 창원 등 유사 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이에 대한 원인진단과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인 시 지방세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요인의 영향력 분석 및 고양시와 유사한 규모를 지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현황 비교분석에 기초하여 고양시의 지방세 수입 증대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시(市) 지방세 세목별 특징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시(市) 지방세 수입 영향요인 도출 및 동 요인의 영향력 분석을 위한 모형을 설정하고, 패널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군 그리고 인구 규모로 범주화된 시의 지방세 수입에 미치는 각 요인의 영향력을 비교 분석함
- 고양시와 유사한 인구 규모를 지닌 4개 대도시(수원, 성남, 용인, 창원)의 지방세 수입현황 및 특징을 비교 분석함

2. 지방세 체계

□ 지방세의 의의와 지방세 체계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 신장 및 안정적 자원 확보 그리고 자원의 효율 창출 측면에 비추어 볼 때 더 효과적인 지방세입 확충 방안은 자체수입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세 수입 증대라 할 수 있음
- 지방세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 충당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로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총 11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시, 군, 자치구의 3개의 유형으로 구분되나 지방세 체계는 자치구세와 시·군세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이 중 시·군세는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으로 구성됨

3. 지방세 수입 영향요인 분석

□ 분석모형 설정

- 선행연구와 지방세 세목별 특징에 기초하여 시 지방세 수입 영향요인을 경제적, 인구·사회적, 지역적 요인으로 구성함
- 종속변수는 지역의 1인당 지방세 수입으로 설정하며, 경제적 요인을 구성하는 변수로는 각 지역의 1인당 GRDP(로그), 경제활동인구, 실업률, 사업체 수 등을 설정하도록 하며 인구·사회적 요인 변수로는 인구증가율, 고령인구비율, 수급자 비율을 활용하도록 함
- 지역적 특성변수로는 지역의 지가상승률, 수도권 여부 등을 설정하도록 하며 이외에 지방세 징수율을 추가로 고려하도록 함

□ 분석결과

- 시와 군의 분석결과, 지방세 수입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지방세 징수율과 수도권 여부 그리고 지역의 GRDP로 나타나고 있음
 - 지방세 징수율은 시에서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크며 수도권 여부는 군에서 시의 2배 이상 1인당 지방세 수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경제적 요인 중 사업체 수는 두 지역 모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업률의 경우 군 지역에서만 양의 관계로 나타나 군 지역이 시 지역의 조세를 부담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각 요인의 영향력이 중소 도시와 질적, 양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대도시의 경우 인구증가율은 1인당 지방세 수입 증대에 오히려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고령인구 비율 역시 중·소도시와 달리 1인당 지방세 수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 규모에 따라 고령 인구의 담세력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함
- 특히 대도시의 경우 지역의 사업체 수는 1인당 지방세 수입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 반면 GRDP와 실업률은 지방세 수입 증대에 주요한 영향변수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100만 이상 대도시의 지방세 수입증대를 위해서는 부가가치 혹은 고용과급효과가 큰 산업분야의 기업유치에 전략적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4. 고양시와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 비교

□ 고양시 지방세 세목별 특징

- **고양시 주민세 수입은 5개 대도시 중 가장 낮은 수준임**
 - 주민세 수입의 가장 중요한 구성항목은 종업원분으로 2017년 기준 4개 도시 평균 주민세 수입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나 고양시의 경우 54.5% 수준으로 그 구성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음
- **2017년 기준 고양시 재산세 구성항목별 수입은 각 항목 모두 고양시를 제외한 4개 도시 평균에 다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용인, 성남 등에 비해 주택분과 토지분 수입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음**
- **고양시 자동차세 수입은 4개 대도시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자동차 소유분 수입이 주행분 수입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자동차 소유분 수입은 등록자동차 대수와 비례관계가 있으나 주행분 수입은 자동차의 종류 및 운송업 특징 등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음
- **고양시 지방세 수입에서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나 담배소비세 수입액은 4개 도시 평균보다 낮은 것**

로 나타나고 있음

- 지방소득세는 4개 대도시 지방세 수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이나 고양시의 경우 지방소득세 비중과 수입액 모두 4개 대도시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고양시와 다른 대도시의 지방소득세 수입 격차는 고양시의 낮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과 특별징수분 수입에서 기인함

5. 시사점 및 정책제언

□ 지방세 수입 일반 영향요인 분석결과의 시사점

- 시 지방세 수입 증가를 위한 전략은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음
 - 첫째, 고용창출 효과가 큰 규모 있는 양질의 기업유치 및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부문 육성 전략이 필요함
 - 둘째, 인구 100만 미만 도시의 경우 인구증가에 따른 지방세 수입의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므로 지역의 인구증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셋째,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안 마련 및 지역 가치 상승을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이 필요함
- 100만 대도시의 경우 지역의 GRDP 영향력이 중·소 도시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산업 특화 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부문을 전략적으로 유치,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중·소도시와 달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단순한 인구증가는 지방세 수입 증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고령 인구 비중 증가는 소도시와 달리 지방세 수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가상승률은 시 전체 수준 및 인구 50만 이하의 시에서 1인당 지방세 수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지가상승률과 1인당 지방세 수입은 오히려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음

- 이는 대도시 지역의 지가상승률이 중·소 도시에 비해 높지 않을 뿐 아니라 지가상승으로 인한 세입증가 효과가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의해 희석된 결과라 할 수 있음

□ 5개 대도시 지방세 세목별 세부항목 수입현황 비교결과의 시사점

- **고양시와 다른 4개 대도시 주민세 수입의 차이는 법인균등분과 종업원분 수입 격차에서 기인함**
 - 법인균등분 및 종업원분 수입은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체 규모와 밀접한 관련을 지님
 - 따라서 부가가치 및 고용과급효과가 높은 규모 있는 기업체의 유치 및 육성이 고양시의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음
- **고양시의 지방소득세 수입은 다른 대도시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러한 격차의 원인은 법인세분과 특별징수분 수입 차이에서 기인함**
 - 고양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낮은 수입 원인은 고양시 소재 기업 규모의 영세성 및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특징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 특별징수의무자는 결국 소득의 지급자이므로 특별징수분 역시 지역에 위치한 사업체 수 및 종사자 규모와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됨
- **재산세는 고양시 지방세 수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세목임**
 - 2017년 기준 고양시 재산세는 4개 도시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용인, 성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분 및 토지분 수입에서 비롯된 것임
 - 최근 고양시의 지역 가치 상승률은 다른 유사 자치단체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과표설정 기준이 되는 비교표준지가 지역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책제언

-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있어 인구집중유발시

**설의 신설(증설) 행위 제한, 부담금, 과밀억제구역 내의 취득세 증가 등의 규제
제로 인해 기업의 이전 및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조세감면 규정 등을 근거로 고양시의 규제 완화 방안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음. 따라서 기업유치 유인책의 일환으로 탄력세율 활용을 통한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고양시 소재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사, 영업소 등의 납세지 현황 파악을 통해 고양시 내에 본점 내지 주사무소가 위치한 경우 원천징수 본점일괄납부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도모하고, 지점이나 영업소 그리고 사업장의 경우 고양시를 납세지로 변경(유지)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고양시의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징수촉탁제와 징수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고양시의 표준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고양시의 지역 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고양시를 포함한 4개 대도시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및 100만 대도시 위상에 부합하는 재정 권한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
 - 대도시 재정수요에 부합하는 재정권한 확보를 위해 4개 대도시의 지속적 공조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5개 대도시 지역에서 신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고양시의 경우 활용이 미진한 세외수입 항목은 국·공유 재산임대료, 입장료 수입, 일반부담금 수입 등임**
 - 고양시의 경우 대규모 투자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우수한 관광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므로 동 자원의 상호 연계를 통해 입장료, 사용료, 임대료 등의 세외수입 확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공공수요 충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 관리, 지출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주민의 삶의 질 고양이라는 지방자치의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자원과 정책을 포함하고 있음
- 지방세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공공수요 충족을 위한 재원조달 활동의 결과로서 정책실행력 담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의의를 지님
 -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의 복지증진에 있으며 이러한 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신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이달곤 외, 2012; 이승중, 2014)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신장은 재정역량의 함수이며, 이는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통해 현실화할 수 있음
 - 즉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신장 및 재정역량 강화는 지방자치의 목적달성을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음
-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중 의존재원의 경우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약화 및 지방재정의 중앙의존성 심화 등의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음
 - 따라서 안정적인 지방세입의 확충은 자체수입 기반 강화를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에서 지방세 수입 비중은 일반회계기준 지방세입의 약 43%(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2018)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재원확보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이 일상화된 뉴노멀 시대의 도래와 함께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저출생·고령화 등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환경 변화에 따라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팽창하는 반면 저성장으로 인한 지방세입의 신장성은 둔화되고 있음(유태현 외, 2018)

- 2018년 당초예산기준 중앙과 지방의 세입비율은 55:45 수준이나 세출은 40:60 수준으로 지방과 중앙의 세출 및 세입 불균형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또한 서울 82.5%, 광역시 53.4%, 도 38.8%(제주특별자치도 42.5%), 시 37.8%, 군 18.5%, 자치구 30.3%로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 수준에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지방세로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50%를 상회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자체재원 기반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지방자치단체 통합 재정 개요, 2018)
- 이러한 맥락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제시하면서 “지방의 세입구조 개선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 이는 지방자치의 실질화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지방세 수입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가 매우 시급한 과제를 방증(傍證)하는 것이라 할 것임
- 이러한 지방세 수입의 현실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수입 관련 연구의 대부분은 세입현황 분석과 이에 근거한 지방세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은 자치단체의 유형 및 지역경제, 인구, 지리적 조건, 지방세제도, 징수율 등 다양한 변수의 함수라 할 수 있음
- 즉 자치단체별로 규모, 지역경제·산업적 특성, 인구구성, 제도적 환경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세원이 편재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 증대방안 모색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상기한 지방자치의 본질적 목적달성을 위한 지방세 수입의 핵심적 역할에 주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시하고 동 요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한편 고양시 지방세 수입은 경기도 유사 자치단체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2017년 기준 5천 770억 수준에 불과함
- 또한 총세입 중 자체수입 비율은 37% 수준으로 경기지역의 유사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경기도 전체(43%)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의 주원인은 지방세 수입 격차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며 고양시의 지방세 수입 비율은 성남시와 용인시에 비해 10% 이상 낮게 나타나고 있음

[표1-1]경기도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총 세입
경기수원시	859,266,986	258,020,421	2,330,420,243
경기성남시	962,514,429	174,578,785	2,307,994,064
경기고양시	576,929,811	137,301,506	1,945,603,863
경기용인시	914,906,229	158,673,776	2,133,857,825

출처 :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

- [표1-1]은 경기도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과 세입을 나타낸 것으로 고양시의 경우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지방세입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을 뿐 아니라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진단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시 지방세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요인과 더불어 고양시와 유사한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 현황 비교 분석을 통해 고양시 지방세 수입의 특징을 규명하고 이에 근거하여 고양시 지방세 수입 증대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 본 연구의 목적은 1)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市)¹⁾의 지방세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요인의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2) 동 분석을 통해 도출된 이론적 결과 및 고양시와 유사한 인구 규모를 지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 현황 비교 분석에 기초하여 고양시 지방세 수입 증대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음
 - 이에 연구의 분석대상은 시(市) 지방세입 중 보통세 5개 항목을 대상으로 하되 시간적 범위는 시·군세 항목의 동일성 유지 및 활용 가능한 결산 자료의 범위를 고려하여 2011년에서 2017년의 기간으로 설정하도록 함

2. 연구의 방법

- 연구방법의 경우 통계분석 및 비교연구를 수행하도록 함
- 통계분석의 경우 2011년에서 2017년 기간의 패널자료를 활용한 패널데이터분석

¹⁾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인구 규모(50만 미만, 50만 이상 100만 미만, 100만 이상)로 구분된 시(市)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으로 하되 군(郡)의 분석결과를 아울러 비교하도록 함. 인구 규모에 따른 시의 지방세 수입 영향요인 비교의 이유는 다음과 같음. 먼저 시의 경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치구에 비해 GDP, 실업률 등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가 넓은 장점이 있음. 또한 현재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인구 50만 이상 및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사무 및 재정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다수의 법률에서 대도시에 대한 사무 특례를 두고 있음. 특히 2019년 3월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권한의 범위와 동 권한이 도 및 다른 중소규모 도시에 미치는 행정적 영향력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이는 도시 규모에 따라 편제된 세원의 구성과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파생되는 지역의 행정 및 재정수요 역시 차이가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음.

(panel data analysis)을 활용하도록 하며²⁾ 1) 제시된 경제, 사회, 인구학적 요인의 일반적 영향력 비교를 위해 시와 군의 회귀결과를 분석하고 2) 최근 특례시 추진과 관련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 인구 100만 이상인 4개 시와(수원, 고양, 용인, 창원), 성남시³⁾를 하나의 범주로, 그리고 50만 이상 90만 이하 시와, 50만 미만 시를 별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도시 규모별 영향요인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도록 함

- 비교연구의 경우 고양시 지방세 수입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고양시와 유사한 규모의 4개 대도시(수원, 성남, 용인, 창원)의 지방세 수입현황을 비교하도록 함

○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먼저 제2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체계를 제시하도록 하며 제3장에서는 시(市) 지방세 세목별 특징 검토 및 선행연구의 이론적 검토를 통해 시 지방세 수입 영향요인의 경험적 분석모형을 도출하고 그 분석결과를 제시하도록 함
- 제4장에서는 3장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고양시와 비슷한 인구 규모를 지닌 4개 대도시(수원, 성남, 용인, 창원)와 고양시의 지방세 수입 현황 및 특징에 관한 비교분석을 수행함
-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3장 및 4장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고양시 지방세 수입 증대방안을 모색하도록 함

2) 패널데이터의 경우 횡단면 데이터와 시계열데이터의 특성을 동시에 지니기 때문에 분석모형의 오차항에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 혹은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이 경우 회귀계수의 표준오차가 증가함으로 인해 회귀계수의 유의성 판단의 정확성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Gujarati,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도비 검정 (likelihood ratio test)과 우드리지 검정 (Wooldrige test)을 통해 이분산성과 자기상관 여부를 진단함. 진단결과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이 존재할 경우 수정된 오차항을 이용하는 “Panel GLS” 추정방법을 활용하도록 함.

3) 성남시 인구는 2019년 현재 94만으로 100만 대도시에 근접해 있으며, 1기 신도시로서 고양시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100만 대도시 범주에 포함하기로 함.

제 2 장

지방세 체계

제1절 지방세의 의의

제2절 지방세 체계

제절 지방세의 의의

1. 지방세의 의의

-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필요한 공공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 관리, 지출하는 활동을 의미함
 - 따라서 지방재정은 지역주민의 공공적 삶의 질 고양을 위한 정책과 그 실행자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정책 실행자원은 지방세입으로 조달됨
- 이러한 지방세입은 크게 자체재원(자체수입)과 의존재원(의존수입)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자체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징수하는 수입으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으로 구성됨
 - 의존재원은 중앙정부 혹은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조달되는 재원으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그리고 보조금 등이 이에 해당됨
- 한편 지방세입은 그 비도(費道)의 지정여부에 따라 일반재원과 특정재원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일반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용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원을 의미하며 지방세 수입 중 보통세수입과 세외수입 일부 그리고 의존재원 중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⁴⁾ 등이 이에 해당됨
- 특정재원은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재원으로 지방세 수입 중 목적세와 세외수입 일부 그리고 의존재원 중 보조금이 동 범주에 해당됨
- 의존재원을 구성하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경우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재원보전을 통해 재정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점이 있으나 지방재정의 중앙

4) 지방교부세의 유형 중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는 일반재원의 성격을 지니며 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는 특정재원의 성격을 지님(윤영진, 2018).

의존성 심화, 역차별⁵⁾, 지방재정의 불안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른 의존재원인 보조금의 경우 국가시책에의 참여 유도 및 외부효과의 시정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등의 기능을 수행함(Fisher, 2007; Harvey and Gayer, 2010)
 - 그러나 보조금의 자의적 배분 가능성 및 지방비 매칭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 가중,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비효율적 자원배분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음
 - 또한 이론적으로 볼 때 비도가 지정되어 있는 보조금에 비해 자율성이 보장되는 일반재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효용이 더 높게 나타남
 -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 신장 및 안정적 재원 확보 그리고 재원의 효용창출 측면에 견주어 볼 때 보다 효과적인 지방세입 확충은 자체수입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세 수입의 실질적 기반강화를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⁵⁾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가 과다 배분됨으로 인해 오히려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가용재원 및 인당 세입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

제2절 지방세 체계

1.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목 체계

-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그 내용과 성질을 기준으로 장·관·항·목으로 구분되며 세입예산 과목은 세입 원천에 따라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 등으로 구분됨
- 2014년 이후 새로운 예산과목으로 ‘보전재원 등 및 내부거래’가 신설되어 종전 세외수입에 포함되었던 내부거래와 잉여금이 동 항목에 포함되었음
 -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 과목구조는 다음의 [표2-1]와 같음

[표2-1]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 과목구조

장	관	항	목
100 지방세 수입	110 지방세	111 보통세 112 목적세	11101 취득세 11102 등록면허세 ...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1 재산임대수입 212 사용료수입 ...	21101 국유재산임대료 21101 공유재산임대료 ...

2. 지방세의 분류

1) 국세와 지방세

- 조세는 과세 주체, 특정한 지출과의 연계 여부, 과세대상, 과세표준, 과세대상의 독자

성 여부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이 가능함

- 먼저 과세 주체를 기준으로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할 수 있음
- 지방세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로서 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라 도세, 시·군세, 특별시세, 광역시세, 자치구세로 구분됨
- 국세는 총 14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세목에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종합부동산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음
-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총 11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및 업무의 특징에 따라 특별·광역시세-자치구세 그리고 도세-시·군세의 2원적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 특별·광역시세-자치구세의 경우 9개의 세목이 특별·광역시세에 배분되어 있으며 도세-시·군세의 경우 6개의 세목이 도세에 그리고 5개의 세목이 시·군세로 배분되어 있음

2) 보통세와 목적세

- 보통세는 조세수입이 특정한 지출에 연계되지 않은 조세를 의미하며 목적세는 조세수입이 특정한 지출에 연계되어 있는 조세를 의미함
- 국세 14개 세목 중 목적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의 2개의 세목이며 지방세 중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등이 이에 해당됨

3) 종량세와 종가세

- 종가세는 과세표준이 화폐로 표시된 가격으로 설정되어 있는 조세로서 취득세, 재산세 등이 이에 해당됨
- 종량세는 과세표준이 과대대상의 수량, 용적 등의 단위로 표시되는 조세를 의미하며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등이 종가세에 해당됨

4) 소득, 소비, 재산 및 기타 과세

- 지방세는 과세 성격에 따라 소득, 소비, 재산, 기타 과세로 구분될 수 있음
- 소득과세에는 지방소득세가 있으며 소비과세로는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자동차세 주행분 등이 이에 해당됨
- 재산과세의 경우 보유과세와 거래과세로 구분될 수 있음
 - 보유과세에는 재산세, 자동차세 소유분, 지역자원시설세(부동산) 등이 있으며 거래과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등이 이에 해당됨
 - 이외의 주민세, 등록면허세(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 자원), 지방교육세 등은 기타 과세에 해당됨(국회예산정책처, 2017; 윤영진, 2018)

3. 지방세 체계

-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시, 군, 자치구의 3개의 유형으로 구분되나 지방세 체계는 자치구세와 시·군세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자치구세는 보통세인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로 구성되나 광역시와 서울특별시의 자치구는 세목 구성항목에서 일정한 차이가 존재함
-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이외에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 역시 자치구세에 해당됨
 - 서울특별시의 경우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특별시분(50%)과 자치구분(50%)로 구분하여 특별시분은 시세에 포함하여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고 있음
- 시·군세는 보통세 5개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동 항목에는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해당됨
- 따라서 지방세 11개 항목 중 광역시세에는 보통세 7개와 2개의 목적세가 있으며 도(道)세에는 보통세 4개 항목과 2개의 목적세가 존재함
- 자치구세는 광역시와 특별시 간 일정한 차이가 있으나 보통세 2개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시·군세는 5개의 보통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2-2]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체계

세목	구분	광역시세	도세	시·군세	자치구세
취득세	보통세	○	○		
레저세	보통세	○	○		
담배소비세	보통세	○		○	
주민세	보통세	○		○	
지방소득세	보통세	○		○	
자동차세	보통세	○		○	
지역자원시설세	목적세	○	○		
지방교육세	목적세	○	○		
등록면허세	보통세		○		○
재산세	보통세			○	○
지방소비세	보통세	○	○		

제 3 장

지방세 수입 영향요인 분석

제1절 시·군 지방세 세목별 특징과 선행연구 검토

제2절 분석모형의 설정

제3절 분석결과 및 해석

제절 시·군 지방세 세목별 특징과 선행연구 검토

1. 시·군 지방세 세목별 특징

1) 지방소득세

(1) 개요

- 종래의 지방세는 재산에 대한 거래세와 보유세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어 지역 내의 소득 및 소비활동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음
- 2010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가 도입됨으로써 지역 내 소득활동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세목으로 세금부과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음(한국지방세연구원, 2017)
- 동 세목은 주민세와 사업소세의 변천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바, 2010년 도입 당시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지방소득세 소득분과 종업원분으로 편성하였음
- 그러나 소득세와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부과하는 부가세(surtax) 형태로 과세되어 기존 지방세 세목의 재편성에 불과하였음
 - 이후 2014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이관되었으며, 과세표준은 국세와 공유하되 세율,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사항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독립세로 개편되었음

(2) 납세의무자와 납세지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과세대상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됨
-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대상은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며 법인지방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양도소득, 미환류소득으로 구분함
-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주소지이나 주소지가 없는 경우는 거소지가 되며 연금소득 중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주소지 그리고 사업소득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됨
-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⁶⁾에 따라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登記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며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됨
- 특별징수의 경우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은 납세의무자의 근무지가 되며 이자 및 배당소득의 경우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의 지급지가 됨

⁶⁾ 제 9조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登記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함.

(3) 세율

-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과 동일하며 소득세 및 법인세율의 10%를 과세함
- 단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의 50/100이 범위에서 가감조정이 가능함
-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다음의 [표3-1]와 같음

[표3-1]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개인	과세표준	세율	비고
종합소득 (표준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1,000분의 6	소득세 세율의 10%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7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58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4	
	88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159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 5억원 이하	376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38	
	5억원 초과	1천70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40	
퇴직소득	퇴직소득액	종합소득세 표준세율과 동일	
양도소득	양도소득 최종금액	과세표준 × 자산 유형 및 보유형태별 세율	
특별징수	소득세법 상 원천징수액 * 10%		부가세율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범위에서 가감조정 가능

-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가 누진세율 체계를 지니고 있어 이와 동일하게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세율체계가 지방세의 특징인 편익원칙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 동 세

목의 문제점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음

- 즉 편익이 소득과 비례적으로 증가함을 전제할 때 누진세율체계는 결과적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게 됨으로써 지방세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임
- 한편 지방의 소득과세는 편익원칙의 반영을 위해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거주하는 곳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나,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 등에 대한 납세지는 거주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거주자와 그 지역에서 소득을 얻는 비거주자가 함께 이를 부담하게 되는 특징이 있음
- 법인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법인세의 납세지와 동일하므로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됨
- 따라서 지방소득세는 지역의 경제활동 인구, 실업률, 사업체 수 등 지역의 경제적 요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다른 지역에 근무지가 있는 주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지역에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적을 경우 지역의 경제적 요인이 양호하다 하더라도 지방소득세 수입은 이에 비례하여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2) 주민세

(1) 개요

- 주민세는 1973년에 신설된 이후 2010년 지방소득세 신설 이전까지 대표적인 지방소득과세의 역할을 담당하였음(한국지방세연구원, 2017)
- 주민세는 시·군의 보통세로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그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로서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 종업원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유훈 외, 2015)
- 2010년 이전 주민세는 주민세 균등할과 소득할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2010년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지방소득세가 신설되면서 주민세 소득할은 지방소득세에 편입되었고

사업소세의 재산할이 주민세의 구성항목이 되면서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이 주민세의 구성항목이 됨

- 이후 2014년 지방소득세의 종업원분이 주민세에 편입되면서 현재 주민세는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2) 납세의무자와 납세지

- 주민세 균등분은 개인분과 법인분이 존재함
- 개인 균등분 납세의무자는 당해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주소지분)과 시·군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⁷⁾이며 법인 균등분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의 사업소별로 과세함
- 납세지는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경우 주소지 그리고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은 사업소 소재지가 됨
-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상에 등재된 사업주이며,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신고 납부함
- 종업원분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매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서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에 신고 납부함
-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 330m² 이하인 경우 그리고 종업원분의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270만원 × 50명) 이하인 경우 면세대상이 됨

⁷⁾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3) 서울

- 개인 균등분은 시장·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며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표준세율은 50,000원으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50/100범위에서 가감이 가능함
- 법인 균등분은 자본액 또는 출자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만원까지 부과하며 역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50/100범위에서 가감이 가능함
- 재산분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의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연면적 1㎡당 250원(표준세율)의 세율을 적용하며 조례로서 표준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으며 연면적이 330㎡이하의 경우 면세점이 됨
- 종업원분의 경우 종업원 월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표준세율은 0.5%이며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조정이 가능함

[표3-2]주민세 구성과 세율

시기	주민세 구성	납세의무자	표준세율	탄력세율
2010년	균등분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10,000원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50,000원	표준세율의 50/100내에서 가감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50,000원~500,000원(자본금액 및 종업원 수 기준)	
	재산분	과세대상에 등재된 사업주	250원/사업소 연면적(㎡)	표준세율 이하로 설정 가능
2014	종업원분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종업원급여 총액의 5/1,000	표준세율의 50/100내에서 가감

*2014년 주민세의 균등분과 재산분은 2010년의 내용과 동일

- 주민세 수입의 경우 균등분과 재산분 그리고 종업원분으로 구성되므로 지역의 인구 및 지역 내 사업소 개수와 규모 등의 경제·인구학적 요인이 중요한 영향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3) 재산세

(1) 개요

- 재산세는 1961년 국세인 대지세 및 광구세와 지방세인 가옥세, 임야세, 선세가 통합되면서 도입되었으며, 2019년 현재 시·군·구 내에 소재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에 부과되고 있음
- 토지의 경우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토지의 재산세 포함 여부는 여러 차례 변동이 있었음
 - 1989년 토지분 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합하여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합산하는 종합토지세가 토지에 대한 종합과세를 목적으로 도입되면서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 토지가 제외되었음
 - 이후 2005년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서 지방세로 부과되었던 부동산 보유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되었으며 재산세의 과세 대상으로 토지가 다시 편입되었음
- 2010년에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종전 16개의 지방세 세목을 11개의 세목으로 간소화하면서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통합하였음

(2) 납세의무자와 납세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등으로 원칙적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예외적으로

사용자, 공부상 소유자, 주된 상속자, 매수 계약자 등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음(지방세법 제107조)

- 과세대상인 토지는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의미하며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지칭함
- 주택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함(지방세법 제104조)
- 한편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납세지는 동 과세대상의 소재지가 되며 선박의 경우 선적항의 소재지 그리고 항공기의 경우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 또는 소유자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됨

(3) 세율

-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범위 내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며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함(지방세법 제110조)
- 지방세법 제 111조에 따른 각 토지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에 관한 표준세율은 다음의 [표3-3]과 같음

[표3-3]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구분	세율
(1)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1억 원 이하 1억원 초과	1000분의 2 10만 + 5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별도합산과세대상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10억 원 초과	1,000분의 2 40만원+2억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백80만원+10억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분리과세대상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이외의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 건축물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공장용 건축물 기타건축물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과세표준의 1000분의 5 과세표준의 1000분의 2.5
(3) 주택	
별장 주택 6000만 이하 주택 6000만 초과~1억 5천만 이하 주택 1억 5천 초과~3억 이하 주택 3억 초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 6만 + 6000만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9만 5천 + 1억 5천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57만 + 3억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4) 선박 고급선박 이외의 선박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의 1000분의 3

출처 : 지방세법 제 111조

- 토지 및 건축물 그리고 주택의 과세표준은 시가 표준액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므로 개별공시지가 및 지역 부동산 시장의 동향에 영향을 받게 됨
- 따라서 재산세의 경우 지역의 부동산 투자가치 및 표준 및 개별공시지가 그리고 지가 변동 등의 지역적 요인이 중요한 영향변수가 될 수 있음

4) 자동차세

(1) 개요

-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와 주행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재산보유세의 성격과 도로혼잡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 성격을 동시에 지님
- 동 세금은 자동차 소유에 대한 부분과 자동차 주행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됨
- 자동차 소유분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을 과세 대상으로 하며 자동차 주행분은 휘발유·경유 등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함

(2) 납세의무자와 납세지

- 자동차 소유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로서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함(지방세법 제128조)
- 자동차 주행분은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며(지방세법 제135조)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기한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장(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납부해야 함
-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자동차세를 다음 달 25일까지 자동차 소유에 의한 지방자

치단체별 자동차세 징수세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방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함(지방세법 제 137조)

- 현재 특별징수의무자는 울산광역시장이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 징수세액과 유류세 보조금을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함(지방세법 시행령 제133조)

(3) 서울

- 자동차 소유분의 세율은 자동차의 종류, 배기량 및 용도에 따라 달라짐
- 승용자동차의 경우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구분하여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금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年稅額)으로 함
- 승합자동차의 경우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구분하여 일정액을 과세하며 화물자동차의 경우 역시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구분하되 적재적량에 따라 일정액을 과세함
- 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표준세율의 50/100까지 가산하여 정할 수 있음
-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으로 하며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인해 조정이 필요할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에 의하면 현행 조정세율은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천분의 260으로 규정되어 있음

[표3-4] 자동차세 소유분 과세표준 및 세액

구분	영업용(cc당 세액)		비영업용(cc당 세액)	
	승용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16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이하		19원	-	-
2500cc 초과		24원	-	-
승합	영업용(cc당 세액)		비영업용(cc당 세액)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	

- 자동차세 소유분의 경우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달리 부과되므로 지역의 자동차 대수 뿐 아니라 자동차의 배기량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따라서 지역주민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그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소유분 자동차 세액 및 유류세보조금에 따라 주행세가 안분되므로 지역의 경제적 요인 및 운송업 특징 등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

5) 담배소비세

(1) 개요

- 담배소비에는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및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다양한 조세와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음

- 원래 담배세는 농지세 개편에 따른 세수보전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며 1984년 12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1985년 담배판매세가 신설되었음
- 이후 1986년 지방세법 개정안에서 담배판매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서 그 세율 또한 시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22로, 군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22에서 100분의 55로 크게 상향조정 되었음
- 1988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1989년 담배소비세가 신설되었음(한국지방세연구원, 2017)
- 2014년에는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물담배와 머금은 담배가 추가되면서 현재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은 피우는 담배(제1종 궐련, 제2종 파이프담배, 제3종 엽궐련, 제4종 각련, 제5종 전자담배, 제6종 물담배),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머금은 담배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지방세법 48조)

(2) 납세의무자와 납세지

-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제조자, 수입판매업자, 입국자 등이며 제조자의 경우 제조장으로부터 반출 시,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 시 그리고 입국자의 경우 입국자의 휴대품·별송품 또는 해외 직구 등을 통해 탁송품으로 담배 반입 시 납세의무가 발생됨(지방세법 제49조)
- 한편 제조자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 및 수입판매업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의 경우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이 납세지가 되며 담배제조 및 국내반입 시는 제조장 및 반입장소 관할 시·군이 납세지가 됨

(3) 세율

-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개비수, 중량, 니코틴 용액의 용량 등임
 - 담배소비세 세율은 담배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표3-5]로 구분되며 세율의 30/10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이 가능함(지방세법 제52조)

[표3-5]담배소비세 과세표준과 세율

종류	세율
피우는 담배	
제1종 곁련	20개비당 1,007원
제2종 파이프담배	1g당 36원
제3종 엽곁련	1g당 103원
제4종 각련	1g당 36원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사용	니코틴 용액 1ml당 628원
연초 및 연초고형물	곁련형(20개비당 897원), 기타형 1g당 88원
제6종 물담배	1g당 715원
씹거나 머금은 담배	1g당 364원
냄새 맡는 담배	1g당 26원

2. 선행연구의 검토

- 본 연구는 시 지방세 수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본 항에서는 먼저 전체적인 지방세 연구 동향을 검토하기로 하며 이후 구체적인 시 세목 관련 최근 연구를 검토하기로 함

1) 지방세 연구동향

- 전술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지역주민의 공공적 삶의 질 고양에 있으며 지방세입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목적 실현을 위한 자원으로서의 역

할을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세입은 세원의 중앙 집중,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과 낮은 재정자립도 등 다양한 문제를 지니고 있음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총재정규모(607조 7414억)에서 국가예산은 330조 8144억원 인 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210조 6784억, 지방교육예산 66조 2,216억원으로 중앙과 지방(지방교육 포함)의 세입예산은 54.4:45.6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재정총사용액은 중앙과 지방의 비율이 39.5:60.5로 지방재정의 중앙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시사하고 있음

[표3-6]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 규모

단위(억, %)	2017		2018	
	재정수입액	재정지출액	재정수입액	재정지출액
중앙정부	3,031,432 (54.6)	1,691,075 (40.0)	3,308,414 (54.4)	1,812,512 (39.5)
지방정부	1,931,532 (34.8)	1,907,660 (45.1)	2,106,784 (34.7)	2,088,857 (45.5)
지방교육	590,660 (10.6)	629,893 (14.9)	662,216 (10.9)	685,441 (15.0)

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예산개요』, 2018

- 한편 재정자립도의 경우 서울 82.5%, 광역시 53.4%, 도 38.8%(제주특별자치도 42.5%), 시 37.8%, 군 18.5%, 자치구 30.3%로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에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 그 격차 또한 심각한 수준임(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2018)
 - 이러한 세원 불균형 및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재원의존도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재정의 중앙의존성이 높아질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자율성 약화 및 재원조달 불안정성 심화, 연성계약으로 인한 책임성 약화 등의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체수입 기반 강화

를 통한 지방세입 확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재원 확충을 통해 필요한 만큼의 재원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일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환경 또한 상이하기 때문에 지방세입 확충은 자체재원 강화에 초점을 맞추되 이전재원의 적극적 활용 역시 고려될 필요가 있음(유태현 외, 2018)
- 또한 조세의 특성에 비추어 이양 가능한 국세의 지방세 전환 및 기존 지방세목의 세율조정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세입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재정분권의 필요성 그리고 지방세 수입 현황분석을 통한 지방세 제도개선 모색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국세와 지방세 간 세원배분 및 세목조정, 세외수입 확충, 신세원 발굴의 필요성 등이 주요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이상훈 외, 2017; 하능식 외, 2017; 유태현, 2015; 광채기, 2005)
- 물론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광역, 기초자치단체 간 세목 재조정 등의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지방정부의 강화된 과세자주권과 더불어 재정지출에 관한 재정책임성 확보 또한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음(Bird, 2009; Oates, 2008; Weingast, 2006)⁸⁾
- 아울러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지방세 확충을 위한 다양한 대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효과는 선형적이 아니라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은 자치단체의 유형 및 지역경제, 인구, 지리적 조건, 지방세제도, 징수율 등 다양한 변수의 함수라 할 수 있음
- 즉 인구 규모, 지역의 경제·산업적 특성, 사회적 환경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세원이 편재되어 있으므로 제도 개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 변화 및 수직적·수평적 재정불균형 해소 정도 등은 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것임
- 선행연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으로 주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은 지역적 성격이 강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의

8) 전통적 세원배분론에서는 그 고려요소로 세출수요와 세입수단의 일치여부, 경기변동과의 관계, 세원의 이동성 정도, 편익과 비용부담의 귀착(응역원칙) 등이 제시되고 있음(Oates, 1972; Musgrave & Musgrave, 1989; McLure, 1994). 현대적 관점에서는 전통적 세원배분론이 수직적 재정불균형 해소에 소극적인 점 그리고 예산제약 연성화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음(광채기, 2005).

지방 이양 및 지방소비세의 세율조정, 지방소득세의 규모확대 등이 있음

- 그러나 제도개선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 정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유형 및 특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유태현 외, 2018)
- 결론적으로 실질적 재정분권 및 재정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인 지방세 확충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대안 모색에 있어 지역별 상이한 세입환경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지역의 GRDP, 취업률, 종사자수 등의 경제적 요인과 인구증가율, 고령인구 비율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그리고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수도권 여부, 자치단체의 종류 등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환경 구성요인이 제시되고 있음(임성일, 1991; 배인명·양기용, 1995; 성명재·박노옥, 2003; 오병기, 2009; 주만수 외, 2010)

2) 소결

- 지방세의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연구의 경우 현 지방세 수입의 현황분석 이후 당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또한 지방세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한 연구의 경우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그 초점도 지역의 경제변수의 영향력 검증에 맞추어져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은 지역의 경제, 사회, 인구, 지역 특성의 복합적 함수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종합적 요인이 동시에 고려된 분석이 필요하며 이러한 분석결과의 축적을 통해 보다 적실한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역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3) 시·군 세목별 연구 검토

(1) 주민세

- 2011년 세제개편 이전에는 세율현실화 문제가 없는 주민세 소득할의 비중이 지나치게 큰 관계로 주민세 관련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었으나 2010년 세제개편 이후, 사업소세 재산분이 이관되면서 주민세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하였음(손희준, 2014)
- 이영희 외(2012)는 자치단체의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대응한 재정책임성 강화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간 합리적 세원조정 방안을 연구하였음
 - 이를 위해 (구)사업소세가 포함된 총 4개의 세원배분 조정대상을 제시하였음
 - 세원배분 조정 방법으로 (구)사업소세인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매출액 기준 지방영업세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율 개편방안을 다음 [표3-7]과 같이 제시하였음

[표3-7] 지방영업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개편방안

세율	과세표준	I안: 현행유지 (급여+면적)	II안: 과세표준 변경 (매출액)
1안: 세율현실화		- 종업원분: 급여*0.517 - 재산분: 단위면적*261원	- 매출액 기반 세율(.0369) - 종업원 수 50인 초과대상
2안: 과세대상 확대 (면세대상의 과세전환)		- 종업원분: 1인과 동일하나 50인 미만도 과세 - 재산분: 1인과 동일하나 330㎡ 미만도 과세	- 매출액 기반 세율(.0369) - 종업원 수 50인 미만도 과세

출처 : 김영희 외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세원조정 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2012, 26(1) : 96

- 하능식(2014)은 이영희 외(2012) 연구의 확장개념으로,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뿐만 아니라 주민세 법인균등분 및 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분까지를 모

두 포함하여 지방영업세로 일괄 이전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손희준(2014)은 주민세 제도의 변천과정과 현황분석을 통해 주민세의 현행 과세대상 및 세율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세율 현실화 방안 모색, 그리고 주민세 운영 및 과세체계의 개선 등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음
- 하능식(2016)에 의하면 대형 복잡 건축물(백화점, 마트 등) 내 개별사업장은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임에도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과세 형평성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하였음
 - 이에 도심지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일정기준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소재한 개별사업장은 면세점 이하의 경우라 할지라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하능식, 고은비(2019a)는 주민세 재산분 과세표준 문제점에 기반하여 관련 과세체계 개편방안 도출을 시도하였음
 - 주민세 재산분은 1976년 말 (구)사업소세로 도입된 이래 세목의 명칭과 세율에 있어 일부 변화는 있었으나,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은 도입 당시 모습으로 그대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함
 - 특히 기존 과세대상과 성격상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과세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고 세율체계 운용상의 문제점 역시 제기되고 있어 과세대상 간 형평성 확보 및 지방세 확충 차원에서 과세체계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음
 - 그 주장의 근거로는 주민세 중 재산분과 종업원분이 환경과세(environmental taxation)적 성격보다는 편익과세(benefit taxation)적 성격이 강한 점, 주민세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므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과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 그 수평투영면적인 점, 주민세 재산분은 환경비용 유발 원인에 대한 부담으로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지방공공서비스 편익과세 측면으로 볼 수 있음에도 그동안 오히려 환경오염을 더 유발하는 사업소나 공공서비스 혜택을 더 많이 받는 사업소에 제대로 과세가 되지 않는 과세불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키는 점 등을 제시하였음
 - 또한 주민세 재산분의 경우 균등분과 함께 세율이 일정 금액으로 정해지는 정액세

을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서울현실화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주요 개편방안으로 시설을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방안, 시설물 없이 토지만 사용하는 사업장의 과세대상 추가문제, 차등세율 적용방안 검토, 중장기적으로 편익원칙에 충실한 외형표준과세 도입검토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면서 기존 과세대상과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과세대상을 선별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음

- 또한 주민세 재산분이 정액세율임에도 불구하고 1991년 서울 인상 이후 변동없이 운영되고 있어 그동안의 물가상승이나 소득수준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현실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하였음
 - 아울러 주민세 재산분의 과세표준이 과세성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과세성격이 불분명하며, 과세체계의 복잡성에 비해 세수효과도 크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관련 세목을 통합하여 기업의 영업활동에 따른 편익과세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제안하였음
- 최병호 외(2011)의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과 관련하여 면세점에 근접한 기업들의 고용과 투자행태에 관한 분석을 진행하였음
- 분석결과 다른 규모의 기업에 비해 50인 기업이 세금회피를 위해 추가적인 고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대신 자본으로 대체하는 등의 행태를 특별히 더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과세가 기업 고용결정에 미치는 영향 역시 매우 미미함을 제시하였음
- 정재연·기은선(2017)은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율을 200%에서 추가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음
- 종업원분 주민세의 세부담이 임금수준의 0.5%에 불과하여 실제 기업의 노동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공제율을 2배로 인상하더라도 임금수준의 1%에 불과해 기업들이 실질적인 고용비용 감소를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주장하였음
- 김민정, 김필현(2018)은 중소기업 고용지원을 위한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제도의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하면서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제도의 실질적 효율성 문제를 지적

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불일치가 가장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 공제 제도는 고용수준과 지원액을 연동하여 고용주에게 직접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즉각적 노동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지원방법일 뿐, 중소기업의 고용실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함
- 또한 조세지원의 고용창출효과를 위한 대책으로서 동 제도의 불명확한 실효성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장·단기적 제언을 제시하였음
- 먼저 단기적으로는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조정하여 추가고용에 따른 조세지원 효과를 현실화해야 함을 주장하였는데, 그 요지는 현재의 공제율로는 기업 입장에서 신규고용을 유도하기에 한계가 있어 고용촉진을 위한 적정공제 규모를 재검토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임
- 한편 장기적 방안으로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에 맞는 지원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음
- 이는 실제 중소기업의 근본적 문제는 고용시장에서의 구조적인 수급불일치 상황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에 대한 직접적 지원보다 중소기업으로 취업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세지원을 해 줌으로써 노동공급자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선호를 높여주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것임
- 특히 주민세 종업원분과 같이 조세부담이 적은 세목에 대한 지원보다는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방식을 통해 구직자가 중소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책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음을 제시함

(2) 지방소득세

- 2010년 신설된 지방소득세에 관한 연구는 2014년 독립세 개편 이후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먼저 개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장상록(2016)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주소

- 지 또는 거소지가 아닌 소득발생지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음
- 개편대상 및 방식은 보험가입 모집인과 방문판매인의 납세지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제도 보완 및 시·군·구로의 납세지 변경, 겸업 근로자의 납세지 명문화,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처리 시 유의사항 확인 등을 제시하였음
- 허등용(2018)은 불평등 지수분해를 통해 소득유형별 개인지방소득세 세수가 지역 간 개인지방소득세의 전체적인 세수 불평등에 기여하는 정도를 분석하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해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세수자료를 기반으로 소득유형별 불평등도 분해 방법을 활용하였음
 - 분석결과 전체적인 개인지방소득세 세수 불평등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지역 간 근로소득분 형평화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유형별 세수의 불평등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연금사업·이자기타배당·퇴직소득분 순으로 지역 간 세수 형평화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주장하였음
 - 또한 납세지를 소득발생지로 개편할 경우 양도소득분과 사업소득분의 불평등 기여도 감소로 인해 전체적인 개인지방소득세 세수 불평등이 감소함을 주장하였음
 - 이를 기반으로 향후 개인지방소득세 세수 비중 확대 논의 시, 지역 간 세수 불평등도를 완화하는 방법으로서 소득발생지 원칙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조은주·이영환(2018)은 법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과체체계 개편 이후 대두되고 있는 납세자 부담증가와 지방재정 불균형 심화를 둘러싼 과세체계의 법적·제도적 쟁점 사항을 분석하고 이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그 방안으로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통칙내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를 별도의 절로 구분하여 법령체계를 정비하는 동시에 부과제척기간 및 가산세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음
 - 또한 납세자 측면에서 납세협력비용 절감 및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과 중복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본점 일괄신고 및 납부,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도입 그리고 세무조사 최소화 방안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 정현우·유태현(2019)은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 있어 이중과세 문제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 진단과 개선점을 제안하였음

-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이전 부가세 방식과 동일하게 세액공제 및 감면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수감소 보전과 중복공제배제 등을 이유로 세액공제 및 감면이 폐지되었음
 - 이로 인해 법인이 해외에서 세납한 경우 기존에는 법인세와 지방소득세에서 중복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이루어졌으나, 독립세 방식으로 개편한 이후 법인세 단계에서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되었음
 - 그러나 법인세 단계에서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법인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보다 작은 경우 동 제도를 통해 국가 간 이중과세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실현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음
 -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기간의 확대, 공제한도초과액 손금산입 허용을 통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지방소득세 단계로 파급되지 않고 법인세 단계에서 해결되도록 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는 법인세 단계에서 전액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되는 잔여 외국납부세액을 납세자가 선택하여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법인지방소득세 단계에서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만큼은 법인세 이월공제잔액에서 차감하도록 하는 관련 법령개정 방안을 제안하였음
- 하능식 외(2019b)는 미국, 캐나다, 스위스, 일본, 스페인 등 5개국을 대상으로 지방소득세의 자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를 분석하였음
- 먼저 이론적으로 과세자주권 강화(지방소득세의 자율적 운영) 및 지방소득세 감세 정책은 지역의 경제성장을 촉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지적하였음
 - 지방소득세의 자율적 운영이 이루어지는 대표 사례로 미국 뉴욕주의 START-UP NY 프로그램과 로드아일랜드주의 역사보존 세액공제 프로그램, 캐나다의 CRCD, 스위스의 주크칸톤 등을 제시함
 - 일본은 지방소득세가 단일비례세율이며 재산세도 비례세율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 간 세수 격차가 우리보다 적고, 스페인 또한 과세자주권 허용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음을 소개함
 - 동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소득세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과세자주

권 허용범위의 적극적 확대와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함

- 이와 더불어 향후 국세 이양 혹은 세율인상 등에 의해 지방소득세가 확충될 경우, 해당 부분은 현행 시·군세 대신 도세로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함

(3) 재산세

- 박상수·유보람(2016)은 재산세액이 사실상 과표에 의해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과표 결정 권한 확대가 중요함을 지적하면서 현행 재산세 관련 과표문제 진단 및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음
 - 재산세 과표결정의 문제로 지방자치단체가 과표를 독자적 결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점,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사실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권자라는 점, 그리고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동주택가격인데 이에 대한 결정권자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인 점, 아울러 공정시장가액비율 결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음
 - 토지 및 주택 공시가격의 성격과 활용목적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 과표현실화율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과세불공평성의 개선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공시가격 산정 및 결정에 있어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가 필요함을 제안하였음
- 오문성(2016)은 개정 전 종부세법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 조정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2986 판결)에 대하여 이중과세의 조정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이며 이를 조정하더라도 이중과세 조정방식과 수준은 입법자의 재량을 일탈하지 않는 한 위법이나 위헌으로 볼 수 없음을 제시하였음
- 전병욱(2019)은 세대원 간 주택 공유와 관련하여 1) 개인별 지분비율 취급이 재산세액, 종합부동산세액 및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재산세 공제액에서 일관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고, 2) 재산세 공제액 계산 시 단독 명의 1세대 1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기준금액인 6억 원 대신 9억 원을 차감하여 이중공제가 적용되는 문제점과 함께 3)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외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중과세 조정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점 그리고 4)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제도에서 보유세 부담액의 연도별 비밀관성 문제가 존재함을 지적하면서 관련 법령의 합리적 개편을 통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함을 제안하였음

- 이는 오문성(2016)의 연구가 주택분 종부세액 및 재산세액 계산과 관련하여 입법자의 재량을 바탕으로 포괄적 측면에서 현행 세액계산구조의 타당성을 주장한 반면 동 연구에서는 세부적인 세액계산방식을 구체적 분석을 통해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측면에서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4) 자동차세

- 자동차세는 다른 지방세에 비해 체납 수준이 매우 높은 특징을 지니고 있음
- 이러한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해 2009년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최근 자동차세 연구에서는 동 제도에 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음
- 장상록(2013)은 자동차세의 체납 증가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및 조세형평성 저하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징수촉탁제도에 주목하고 대구시에서 도입한 징수촉탁제도의 주요 내용 및 활용 방식, 추진 성과 등을 분석하였음
 - 분석결과 징수촉탁제도의 도입을 통해 대구시의 변호관영치 차량이 증가하였으며 체납액 또한 제도 시행 이전 해 대비 15억 원이 추가 징수됨으로써 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에 동 제도가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김태호(2015)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및 공매제도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공매제도 활성화를 통해 체납세금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행정적 개선방안을 제시함
 - 특히 체납자의 재산 압류와 관련하여 현재 소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를 개선하여 촉탁징수비용을 현행 30%에서 40%까지 확대하고, 변호관영치, 강제건인 및 공매 등 해당 행위별로 비용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함

- 최원구·김진아(2017)는 징수촉탁제도의 적극적 시행을 위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촉탁실적에 대한 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나, 작은 포상금액과 예산제약 등으로 인해 포상금이 전부 지급되지 못하는 등의 동 제도의 현실적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 또한 자동차세가 특·광역시에 있어서는 특·광역시세이지만, 도에 있어서는 시·군세라는 점이 징수촉탁제도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아울러 제시하고 있음
 - 즉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특·광역시 내에서는 타 기초자치단체의 자동차세 체납을 징수하여도 징수촉탁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동 제도의 활성화가 어렵다는 것임
 - 이에 동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업무강도에 비해 30% 수준으로 낮은 현재의 촉탁수수료율을 50%로 상향조정하고, 징수촉탁업무를 담당하는 개인 및 조직에 대한 적정 수준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며,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징수촉탁 시행수준 및 대상 확대, 징수촉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련 정보시스템 개선과 인력 및 기술 지원, 정책홍보 및 기관 간 연계를 통한 행정 전반에 걸친 지원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함을 제안하였음
- 하태중(2017)은 최근 보급률이 증가하고 있는 배기량 개념이 없는 친환경 차량 및 모터와 엔진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량 등의 kw개념에 대하여 배기량처럼 합리적 근거에 따른 과세방안이 지방세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음
 - 이에 전기차에 대한 과세 기준으로 차량무게 기준, 판매가격 기준, 전기자동차의 최대 출력기준, 전기 충전량 또는 사용량 대비 주행거리 기준, 주행거리 기준 등을 제시하였으며, 다운사이징, 친환경 등을 고려한 하이브리드식 복합과세의 필요성을 아울러 제안하였음
 - 또한 지방세수 확충방안으로 3톤이하 소형자동차를 비롯하여 향후 출시될 여지가 높은 출력이 작은 전기차 등에 대한 과세안을 제시하였음
- 김양희(2017)는 한미 FTA를 계기로 개정된 법률 중 제도 선진화 여부를 두고 찬반

논란이 극심했던 국내 자동차세의 선진화 정도를 잠정 평가하였음

- 분석결과 법 개정으로 과세 투명성이 제고된 점은 긍정 평가하나 그 개정 방향에 있어 자동차세의 환경과세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할 뿐 아니라 국민의 환경권 저해 위험으로 인해 제도 선진화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음
- 아울러 자동차세의 배기량 기준 과세원칙에는 복잡한 세제적 특성에 더해 미국 기업과 국내 기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동 관련 규정의 재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음

(5) 담배소비세

- 담배 소비는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등 다양한 조세와 연계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국민건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담배소비 촉진요인과 그 영향력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음
- 김성준(2002)은 1960~1997년간의 성인 1인당 담배소비량을 종속변수로, 담배소비량 시차변수(lagged variable), 담배평균가격, 1인당 실질가처분소득, 담배갑 경고문 구표기여부(더미변수) 등을 독립변수로 하는 시계열모형을 사용하여 가격에 대한 담배의 수요탄력성을 -0.27 로 추정하였음
- 김용익 외(2003)는 1980~2002년의 1인당 담배판매량을 종속변수, 1인당 GDP, 시차, 담배소비량, 담배소비자물가지수, 1998년 전후 더미변수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담배의 가격탄력성을 $-0.18 \sim -0.303$ 으로 추정한 바 있으며, 김원년·서정하(2005)는 2004년 담배가격 인상 전후의 설문조사결과 자료를 이용하여 담배의 가격탄력성을 -0.3418 로 추정하였음
- Chaloupka and Warner(2000)는 미국의 담배산업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의 경제적 성과와 국민건강증진 간 관계에 대해 분석하면서 담배 산업의 발전이 공공보건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나, 전체적인 경제 활성화에 있어 상당 부분을 기여했음을 지적하면서 미국의 담배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을 $-0.4 \sim -0.6$ 수준으로 추정하였음

- World Bank(2004)는 세계 여러 국가의 원자료를 이용한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대한 논문들을 조사·정리하였음
 - 동 보고서에서는 담배수요 추정에 있어 자주 사용된 도구변수로 담뱃세, 담배생산에 필요한 생산요소의 가격, 지난 기의 담배가격 등이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담배 소비에 대한 가격탄력성은 일반적으로 -0.14에서 -1.23 사이로 추정되나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담배수요모형에서는 전반적으로 -0.3과 -0.5 사이로 추정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음
- 김혜련(2007)은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흡연율 차이가 건강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음에 초점을 두고 국민건강영양조사(1998, 2001, 2005년) 결과 비교를 통한 흡연율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음
 - 분석결과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육체 노동자일수록 흡연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동 패턴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제시하였음
- 이영·나성린(2007)은 1965~2005년의 41년간 국내 담배소비량 및 가격에 대한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음
 -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되었던 기존 연구와는 달리, 시간추세를 통제할 경우 총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국산 담배의 가격탄력성이 각각 -0.20과 -0.31로 추정되며, 담배 수입이 자유화된 1988~2005년으로 시기를 한정하면 두 탄력성의 추정치는 각각 -0.50, -0.79로 높아짐을 제시하였음
 - 또한 담배에 대한 제세공과금과 지난 기의 담배가격을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담배 가격의 내생성을 통제하는 경우 탄력성은 다소 감소하나 여전히 매우 큰 가격탄력성이 존재함을 밝히고 있음
 - 이러한 실증결과는 담배 관련 제세공과금 인상이 담배소비량 감소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담배의 제세공과금 10% 인상이 약 4.5%의 담배수요 감소 유도 효과가 있음을 의미함
- 한편 한국조세연구원(2008)의 연구에서는 소득분위별로 달라지는 가격탄력성을 분석하면서 가격탄력성을 대체로 -0.3에서 -0.5의 범위로 보는 기존 견해와는 다소 다

른 결과를 제시하였음

- 2001~2006년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한 준이상적 수요모형(AIDS)을 활용하여 추정된 결과 가격탄력성은 $-0.512 \sim 0.194$ 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탄력적인 수요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비흡연 가구가 표본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구매 가능성의 변화가 고려되지 않아 가격탄력성이 과소추정되었을 가능성 역시 아울러 존재함
- 윤형호·임병인(2012)은 2009년 재정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소득분위별 담배지출액과 지출액 비중을 분석하여 담배소비세가 흡연 가구의 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였음
 - 분석에 따르면, 담배가격이 인상되더라도 저소득계층의 담배지출액은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세율인상의 타당성을 주장하였음
- 민희철(2012)은 이분모형(two-part model)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가구의 담배수요를 추정하고 이를 대안적 수요모형 결과와 비교하였는데, 가격 인상은 흡연 조건부 구매량뿐 아니라 흡연 가능성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소득증가는 흡연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반면, 흡연 조건부 구매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증가는 흡연 가능성과 구매량에 상호 상반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동 연구는 가구별 지불 금액에 대한 정보가 분석에 포함되지 않아 구매량 측정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음
- 민희철(2013)은 실물단위 측정이 가능한 NSTB(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소득과 담배수요 간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음
 - 추정에 활용된 변수는 담배소비액, 담배소비량, 가구소득, 가구원수, 연령, 성별, 혼인상태, 교육수준 등이며, 분석결과에 따르면 흡연자의 비중과 함께 담배구매량은 중위소득계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수준 대비 담배구매량은 고소득 계층으로 갈수록 비례적으로 감소하여 담배소비세의 역진성이 존재함을 시사하였음
 - 또한 수요함수 추정을 통해 소득탄력성을 분석한 결과, 흡연 가능성은 소득 증가

에 유의하게 반응하지는 않으나, 흡연 조건부 구매량은 소득에 따라 증가하는 정상재(normal goods)의 특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음

- 한편 소득탄력성 추정값은 흡연 가능성에 대해 -0.023 , 조건부 수요에 대해서는 0.038 로 나타났음
- 전승훈(2013)은 1998~2011년 가계동향자료를 이용한 QUAIDS 모형추정을 통해 담배소비세 및 담배가격 인상이 가구의 소득분위별 담배소비지출과 담배관련 조세 및 부담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 추정결과,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담배수요의 비보상가격탄력성은 약 -0.411 , 보상가격탄력성은 -0.408 로 측정되었으며, 소득분위별 비보상가격탄력성은 $-0.265 \sim -0.595$, 보상가격탄력성은 $-0.185 \sim -0.515$ 로 측정되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담배수요가 가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13년 당시 2,500원 수준이었던 담배가격을 3,000원, 4,000원, 5,000원으로 증가시키는 시나리오 하에서 소득분위별 담배소비지출액과 담배관련 조세 및 부담금 수준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소득 2~5분위에 해당하는 가구는 담배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담배소비지출액과 담배관련 세부담이 현재보다 증가하였음
 - 그러나 소득 1분위는 담배가격이 5,000원으로 증가할 때, 담배소비지출액과 담배관련 세부담이 현재보다 감소하였음
 - 또한 담배관련 조세 및 부담금의 평균실효세율은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담배관련 조세 및 부담금의 역진적 성격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음
 - 다만 담배가격 인상 시 고소득분위의 담배관련 평균실효세율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담배관련 조세 및 부담금의 역진성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최성은(2014)은 담배과세와 재정 간 관계를 분석하였음. 동 분석에 의하면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존재하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수요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음
 - 또한 담배세수의 경우 담배가격이 4,500원에 이를 때까지는 담배관련 세수입이

증가하였으나 4,500원을 넘어서면 조세수입이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추정하였음

- 이에 근거하여 담배가격이 8,000원일 경우 담배관련 세수입이 약 5조 7,5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였으며 담배가격이 4,500원일 때 조세수입이 가장 높을 것이라는 결과를 제시하였음
- 유효림·윤성만(2017)은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자의 흡연량과 무관한 단순 종량징액 과세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그 교정효과가 제한되고 있음을 주장하였음
 - 이에 담배소비세의 징수납부방식을 현행 간접방식에서 직접방식으로 전환하고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처럼 1년간 누계흡연량과 담배소비세 등의 누계액을 정산하여 4~5단계의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이 경우 담배소비자는 매년 담배소비세 등을 정산하여 납부하는 단계에서 본인의 흡연으로 인한 조세부담수준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되므로, 담배 관련 조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금연을 시도하거나 담배소비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 등 담배소비세의 교정기능이 적극적으로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음
 - 담배소비세 구매자 납부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흡연자의 담배소비량과 담배소비세에 대한 누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담배의 현금거래를 금지하고 반드시 ‘담배소비전용카드’를 이용하여 담배를 구매하도록 현 담배 판매 방식을 개편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음
 - 또한 담배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을 고려한 소득구간에 따른 누진구조를 설계 혹은 최저 흡연량 내지 흡연 감소량 등에 근거한 일정 수준의 과세점(면세점)을 설정함으로써 담배 관련 조세수입의 감소를 방지함과 동시에 가격인상에 따른 교정기능 역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음
 - 아울러 2005년 담뱃세 인상과 2015년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설 및 담배소비세 관련 부담금 인상 등은 담배소비자의 조세 부담만 가중시켰을 뿐, 흡연을 감소라는 근본적 목적 달성 효과는 제한적임을 밝히고 있음
 - 아울러 담배소비세 등의 인상을 통한 금연정책 효과가 기대보다 미흡한 이유로 담배의 중독성 강한 기호품으로서의 특징을 제시하면서 동 이유로 인해 일반적인

경제학 이론과는 다르게 장기적으로 가격에 대한 담배수요가 비탄력적일 수 있음을 밝히고 있음

- 이창규 외(2018)는 국내·외 전자담배 시장 및 과세현황을 분석하고 전자담배 관련 세제 문제 및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음
 -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비교적 체계적인 전자담배 제세공과금 제도를 갖추고 있으나 최근 신형 전자담배 등장에 따른 세제 사각지대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음
 - 한편 전자담배 관련 이슈로 쉐련형 전자담배의 등장, 기존 담배소비세의 종량세 체계에 따른 세수확보 문제, 전자담배의 조세회피 문제 등을 제시하면서 국민의 보건증진을 위해 일반담배에 부과하는 죄악세 성격의 세금을 전자담배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음
 - 특히 담배소비세 과세가 종량세 체계를 갖고 있다는 점과 전자담배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담배소비세 수입이 향후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4) 소결

- 지방세 관련 최근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력 및 재정 권한의 취약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지방세 수입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의 경우 주로 지역의 경제지표와 지방세 수입 간 관계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세원 분포는 지역의 자연적 특성, 인구구성, 산업구조 등의 재정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므로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 효과 역시 지역의 재정환경에 따라 달리 나타나게 될 것임
- 또한 지방세 관련 제도변화에 따른 정부 간 재정 관계 변화 역시 지역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임
- 따라서 지방세 제도변화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지역적 다양성과 이러한 다양성에서

기인하는 제도변화의 비선형적 영향력이 적절히 고려될 필요가 있음

- 같은 맥락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은 지역경제, 인구, 지리적 조건, 지방세제도, 징수율 등 다양한 변수의 함수이므로 지방세 수입 영향요인 분석에 있어 지역경제지표 이외에 지역의 다양성이 적절히 반영된 보다 적합한 모형 구성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제2절 분석모형의 설정

1. 종속변수

- 본 연구의 목적은 시 지방세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을 제시하고 이들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분석을 통해 고양시 지방세 수입 확충을 위한 대안 모색 시 유용한 정보를 산출하는 데에 있음
- 이를 위해 군과 시 그리고 시의 도시 규모(인구 50만 이하, 50만 ~ 100만 미만, 100만 이상⁹⁾)에 따른 각 요인의 영향력을 상호 비교 분석하도록 함
- 이에 종속변수는 시와 군 그리고 해당 도시 규모 범주의 1인당 지방세 수입액으로 설정하도록 함

2. 설명변수

- 시(市) 지방세 수입은 시의 경제, 사회, 인구학적 요인의 함수라 할 수 있음
-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의 경우 지역의 GRDP, 취업률, 종사지수 등의 경제적 요인과 인구증가율, 고령인구비율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그리고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수도권 여부, 자치단체의 종류 등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환경 구성요인이 제시되고 있음 (임성일, 1991; 배인명·양기용, 1995; 성명재·박노옥, 2003; 오병기, 2009; 주만수

⁹⁾ 본 연구의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고양시와 주로 비교되고 있는 성남시를 본 범주에 포함하기로 함. 성남시는 2019년 6월 기준 94만 5천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구 50만 이상 100만 대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 부천시(83만 3천 명) 및 청주시 (83만 9천 명)에 비해 10만 명 이상 인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성남시, 부천시, 청주시 홈페이지, 2019. 10. 25).

외, 2010)

- 먼저 자치단체의 경제적 요인은 지역의 소득과 소비 그리고 지역의 재산 및 투자가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방세 수입의 주요 영향변수로 제시되고 있으며 그 측정변수로서 GRDP, 종사자 수 등이 주로 활용되고 있음
- 고용자(취업자) 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측정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배인명·양기용, 1995; 주만수 외, 2010) 특히 지역의 경제성장 내지 경제력 측정 변수로 GRDP가 다수의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음(임성일, 1991; 박병희, 2002; 성명재·박노옥, 2003; 오병기, 2009; 주만수 외, 2010)
- 지방세 수입 영향요인 연구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와 지방세수 간 관계 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인구·사회적 변수와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는 주로 경제적 요인 변수의 순(純) 영향력(net effect) 파악을 위한 통제변수로 활용되고 있음
- 인구·사회적 변수의 경우 지역의 인구, 인구증가율 고령인구비중 등이 (임성일, 1991; 배인명·양기용, 1995; 오병기, 2009; 주만수 외, 2010) 제시되고 있으며 지역적 특성변수로서 수도권, 대도시 여부 등이 활용되고 있음(주만수 외, 2010)
- 지방세 수입은 납세의무자의 양적, 질적 특성과 일정한 함수관계를 지니게 되므로 담세자의 규모뿐 아니라 이들 납세 주체의 담세력 역시 중요한 영향변수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지역의 인구증가율 등의 인구학적 변수뿐 아니라 고령인구비율, 수급자비율 등의 인구·사회적 요인 역시 설명변수로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수도권 여부 등은 지역의 재산 및 투자가치, 인구구성 등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게 되므로 지방세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모형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경제적 요인, 인구·사회적 요인¹⁰⁾, 지역적 특성 등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도록 함
- 경제적 요인을 구성하는 변수로는 각 지역의 GRDP, 경제활동인구, 실업률, 사업체 수 등을 설정하도록 하며 인구·사회적 요인 변수로는 인구증가율, 고령인구비율, 수급자 비율을 활용하도록 함

10) 인구학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은 상호 연관되어 명확한 구분이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두 요인을 인구·사회적 요인의 범주에서 제시하도록 함.

- 지역적 특성변수로는 지역의 자가상승률, 수도권 여부 등을 설정하도록 하며 이외에 지방세 징수율을 추가로 고려하도록 함
 - 특히 본 연구에서는 시(市) 전체 및 인구 50만 이하 시, 인구 50만 ~ 100만 미만 시, 100만 이상 시를 비교 분석하여 도시 규모에 따른 각 요인의 영향력 차이를 제시하도록 함
- 아래의 [표3-8]은 본 연구의 분석요인과 그 구성변수를 정리한 것임

[표3-8]지방세 수입 영향요인 및 구성변수

변수		설명
Y_{it}^*	1인당지방세 수입	주민1인당 지방세 수입(단위: 천)
경제적 요인 $X1_{it}$	$GRDP_{rit}$	ln 1인당 지역내총생산(로그)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GRDP)**
	$ecoperson_{rit}$	경제활동인구비율(단위: %)
	$unemploy_{rit}$	실업률(단위: %)
	$business_{rit}$	인구천명당 사업체수
인구·사회적요인 $X2_{it}$	$popgrow_{rit}$	인구증가율(단위: %)
	$elderly_{rit}$	고령인구비율(단위: %)
	$poor_{rit}$	인구천명당 수급자수(단위 명)
지역적 요인	$realestateprice_{it}$	지가변동률(단위: %)
	$metro_{it}$	수도권 여부(dummy)
	$real5colrate_{it}$	지방세 징수율(단위: %)

* Y_{it} 의 기초지방자치단체 i 의 현황을 의미

**GRDP의 경우 2011 ~ 2016년까지의 데이터만 활용 가능함

제3절 분석결과 및 해석

1. 시(市)와 군(郡)의 지방세 수입 영향요인 분석결과

- 아래의 [표3-9]는 지방세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인구·사회적 그리고 지역적 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한 것으로 각 요인을 구성하는 변수가 시(市)와 군(郡)의 1인당 지방세 수입액에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냄

[표3-9]시와 군의 지방세 수입 영향요인 패널분석 결과¹⁾ 단위(천원)

요인 및 변수	시(市)	군(郡)
ln_grdpr	250.4467***	240.5462***
ecopersonr	-7.1832	35.8075*
unemployr	3.9087	12.9305***
businessr	3.0546***	2.2211***
popgrowr	3.0169***	-1.6605349
elderlyr	-4.6208***	-3.13089***
poorr	0.009	-0.4394**
realestate~r	24.4784***	12.9253***
real5colrate	1071.4046***	599.2924***
metro	147.5842***	309.7151***
_cons	-5168.7490***	-4717.210***

legend: * p<.1; ** p<.05; *** p<.01

1) 패널분석 과정에서 이분산성과 자기상관이 진단되어 이를 치유한 Panel GLS 추정결과임

- 군의 1인당 지방세 수입액은 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요인에 더욱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먼저 지역 내 총생산의 경우 군과 시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음
- 분석결과에 의하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1인당 GRDP가 1% 증가하는 경우 지방세 수입이 24만 원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역의 GRDP는 지역에서 이루어진 전체 생산 활동 결과 창출된 부가가치의 합으로 추계되므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분야의 비중이 높을수록 지역세수 증대 효과가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함
- 15세 이상 인구 중 일할 의사 및 능력이 있는 인구를 나타내는 경제활동인구비율은 지역 인구의 경제적 잠재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음
 - 동 변수는 시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군의 경우 경제활동인구비율이 1% 증가할 경우 1인당 지방세 수입이 약 3만 6000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실업률은 안정적 소득을 통한 가계의 소비 및 자산 형성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므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방세 수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분석결과 실업률은 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군의 경우 일반적인 예측과 달리 지방세 수입과 양(positive)의 관계로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만약 군 지역 취업자들이 당해 지역이 아닌 인근 도시지역으로 취업하는 빈도가 높고, 군 지역에 취업한 근로자의 실업이 소득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아닐 경우 당해 지역의 실업률은 지방세 수입에 예상과 다른 결과를 가져올 개연성이 있음
 - 군 지역 취업자의 근무지에 관한 직접적인 자료는 없으나 KOSIS 통계에 의하면 2011~ 2017년 기간 시 지역의 평균 실업률은 2.55%인 반면 군 지역의 실업률은 1.18%로서 시 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군과 시 지역의 평균 종사자 규모는 시가 군에 비해 8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를 통해 볼 때 군 지역 취업자의 근무지가 동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위치해 있을 가능성이 있음
 - 물론 군 지역의 실업률과 지방세 수입의 정의 관계는 더욱 직접적 자료를 바탕으로

로 재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표3-10]시와 군의 사업체 수 및 종사자 규모(2017년 기준)

(단위: 개, 명)

지역 구분	시		군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소기업(50인 이하)	11921.53	69547.33	1665.22	9436.45
중기업(50~300인)	225.65	21952.24	26.99	2495.49
중견기업(300~1000인)	13.52	6490.85	1.06	477.30
대기업(1000인 이상)	2.48	7202.99	0.19	398.43
합계	12163.19	105193.4	1693.468	12807.68

자료 : 고용노동부.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사업체노동실태현황』, 2017

- 법인의 경우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 다양한 지방세 세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분석결과 역시 지역에 위치한 법인 수는 시와 군 지역에서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군 지역에 비해 시 지역에서 약 1.4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시 지역 법인의 군 지역 대비 종사자 규모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 [표3-10]에 의하면 시와 군지역의 중견기업 이상 규모를 지닌 기업의 수는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임
 - 이를 통해 볼 때 법인 변수의 영향력 차이는 양 지역에 위치한 법인의 규모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됨
- 인구·사회적 요인은 군과 시에서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음
 - 인구증가율은 군 지역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없으나 시 지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역의 고령인구 비율의 경우 시·군 모두 1인당 지방세 수입에 부(負)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군에 비해 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큰 지방세 수입 감소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

- 수급자 비율의 경우 군 지역에서는 1인당 지방세 수입과 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나 시 지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가상승률은 시와 군 지역 모두 지방세 수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 지역에 비해 시 지역에서 그 영향력이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시 지역의 지가가 군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지가 상승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됨
- 지방세 징수율 역시 시와 군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다른 변수의 영향력 대비 매우 강력한 세수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동 변수는 군 지역에 비해 시에서 1인당 지방세 수입 증대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의 경우 징수율이 1% 증가할 경우 1인당 지방세 수입은 107만 원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군의 경우 약 60만 원)
 - 2017년 기준 군과 시의 평균 지방세징수율은 각각 96.2%와 96%로 추가적으로 징수율을 더 높이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지방세 수입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감안할 때 지속적인 징수율 증대 노력이 경주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지역이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위치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시와 군 모두에서 1인당 지방세 수입이 증가하며, 군 지역이 시 지역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약 31만 원 정도의 1인당 지방세 수입증대 효과를 보이고 있음
- 시와 군의 분석결과 지방세 수입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지방세 징수율과 수도권 여부 그리고 지역의 GRDP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징수율은 시에서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수도권 여부는 군에서 시의 2배 이상 지방세 수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이외에 경제적 요인 중 사업체 수는 두 지역 모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업률의 경우 군 지역에서만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음

2. 인구 규모에 따른 시 지방세 수입 영향요인 분석결과

- 아래의 [표3-11]는 인구 규모에 따라 분류된 시(市) 1인당 지방세 수입 영향요인 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임
- 분석결과 인구 100만 이상 지역의 1인당 지방세 수입 영향요인의 계수 값은 중·소도시 지역과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3-11]시 인구 규모에 따른 지방세 수입 영향요인 패널분석 결과¹⁾

단위(천원)

요인 및 변수	시 전체	50만 이하	50만~100만	100만 이상 ¹⁾
ln_grdpr	250.4467***	290.500***	36.4630	405.9212***
ecopersonr	-7.1832	-8.9721	-64.6762	-173.855***
unemployr	3.9087	1.0751	-30.5042**	-18.726**
businessr	3.0546***	3.3776***	14.47238***	-5.5675
popgrowr	3.0169***	3.2689***	40.8426***	-40.2534***
elderlyr	-4.6208***	-5.5655***	17.1022	92.698***
poorr	0.009	-0.0223	-1.0056	4.6389
realestate~r	24.4784***	22.3646***	14.2840	-34.582**
real5colrate	1071.4046***	1155.6717***	737.9527	2616.826**
metro	147.5842***	150.1655***	161.8063***	164.3911***
_cons	-5168.7490***	-5937.4161***	-2105.188*	-9477.1704***

legend: * p<.1; ** p<.05; *** p<.01

1) 성남시가 포함된 총 5개 대도시(수원, 성남, 용인, 창원, 고양) 분석결과임

- 먼저 경제적 요인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경제적 요인 중 지역 내 총생산은 인구 50만~100만 사이의 도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가장 큰 계수 값을 나타내고 있음
 -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의 유치 및 특화 등이 지방세 수입증대를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경제활동인구비율은 시 전체 및 100만 미만 대도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오히려 음의 회귀계수 값을 나타내고 있음
- 실업률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인구 규모가 큰 시의 경우 실업률은 지방세 수입에 중요한 영향요인이 될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음
- 인구 1000명당 기업체 수는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함
- 특히 인구 50만~100만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지방세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상 경제적 요인의 분석 결과를 통해 볼 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역에서는 실업률이 지방세 수입과 관련된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음
- 또한 다른 시 지역에 비해 단순한 기업의 수 보다는 기업의 규모 및 산업분야 등이 지방세 수입에 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 아래의 [표3-12], [표3-13]은 산업중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된 사업체와 종사자의 도시규모별 현황(평균)과 종사자 규모에 따라 분류된 도시규모별 기업 수 현황(평균)을 나타낸 것임

[표3-12] 산업종분류 기준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도시규모별, 2017년 기준)

(단위: 개, 명)

지역	5개 대도시		50만 이상 100만 이하 시		시전체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농업, 임업 및 어업	15	174	18.8	183.2	20.88	212.72
광업	5	56	6.8	80.4	6.55	108.65
제조업	3,947	58,311	5621.8	78058.4	2154.89	32026.8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4	617	12.5	386.8	9.08	382.17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86	1,389	102.2	1275	52.59	645.37
건설업	1,860	23,452	1414.9	15437.7	696.33	7566.40
도매 및 소매업	8,942	47,587	5794.2	28052.8	2688.15	13282.27
운수 및 창고업	617	12,485	397.7	6842.2	238.68	4097.68
숙박 및 음식점업	6,951	31,997	4514.4	19249.7	2237.37	9484.12
정보통신업	602	14,392	221.9	2365.3	109.07	1699.75
금융 및 보험업	646	10,820	433.2	6896.5	207.97	3209.88
부동산업	1,651	9,326	890.8	4479.5	410.77	2153.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97	26,235	849.4	10764.6	368.89	4581.2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857	20,533	573.5	11433.8	269.36	4891.15
교육 서비스업	2,339	20,199	1314.9	11057	604.60	5202.6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732	33,491	1770.5	21377	849.72	10376.2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13	6,982	617.5	3217.5	296.12	1827.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755	11,993	1858.7	6905.1	942.16	3445.83

자료 : 고용노동부.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사업체노동실태현황』, 2017

[표3-13] 종사자 규모 기준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도시규모별, 2017년 기준)

(단위: 개, 명)

지역	5개 대도시		50만 이상 100만 이하 시		시전체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소기업(50인 이하)	35783.8	204901.2	25880.80	152154.20	11921.53	69547.33
중기업(50~300인)	677.4	67122.2	499.40	48538.50	225.65	21952.24
중견기업(300~1000인)	52.8	25117.4	29.40	13950.90	13.52	6490.85
대기업(1000인 이상)	12.6	32899	4.10	13418.90	2.48	7202.99
합계	36526.6	330039.8	26413.7	228062.5	12163.18	105193.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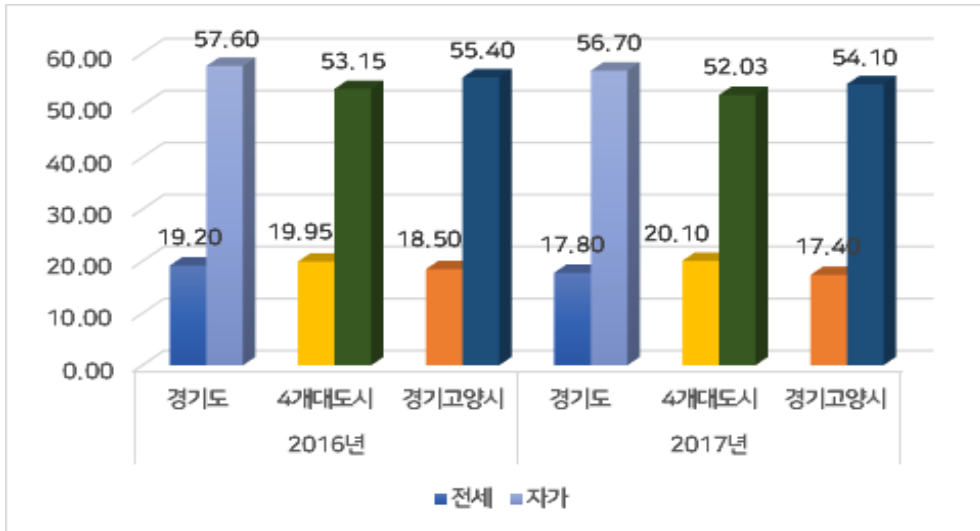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사업체노동실태현황』, 2017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중간 규모 도시에 비해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과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평균 종사자 규모 기준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 반면 중간 규모의 도시는 100만 이상 대도시에 비해 광업, 제조업, 농·임어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 기업규모의 경우 1000인 이상 대기업 수는 100만 이상 도시에서 중간 규모의 도시에 3배 이상 많으며 종사자 수 규모는 약 2.5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이는 중간 규모 도시에 비해 대도시의 사업체 규모가 더 크고 특화된 산업부문의 부가가치가 더 높음을 의미함
 - 이를 통해 볼 때 대도시의 경우 기업 수에 따른 규모의 경제보다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기업의 유치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부문의 특화 등이 지방세 수입 증대를 위한 보다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상정할 수 있음
- 인구·사회적 요인과 관련하여, 먼저 인구증가율은 인구 100만 미만의 시에서는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10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지방세 수입에 오히려 부(負)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는 인구증가에 따라 지방세 수입의 절대액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1인당 부담하는 지방세 수준이 상대적으로 적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결과임

[그림3-1]대도시 지역의 전세 및 자가 비율

(단위: %)



자료 : 경기도 『사회조사 보고서』, 2017
 경기 고양시 『사회조사 보고서』, 2017
 경기 성남시 『사회조사 보고서』, 2017
 경기 용인시 『사회조사 보고서』, 2017
 경기 수원시 『사회조사 보고서』, 2017
 경남 창원시 『사회조사 보고서』,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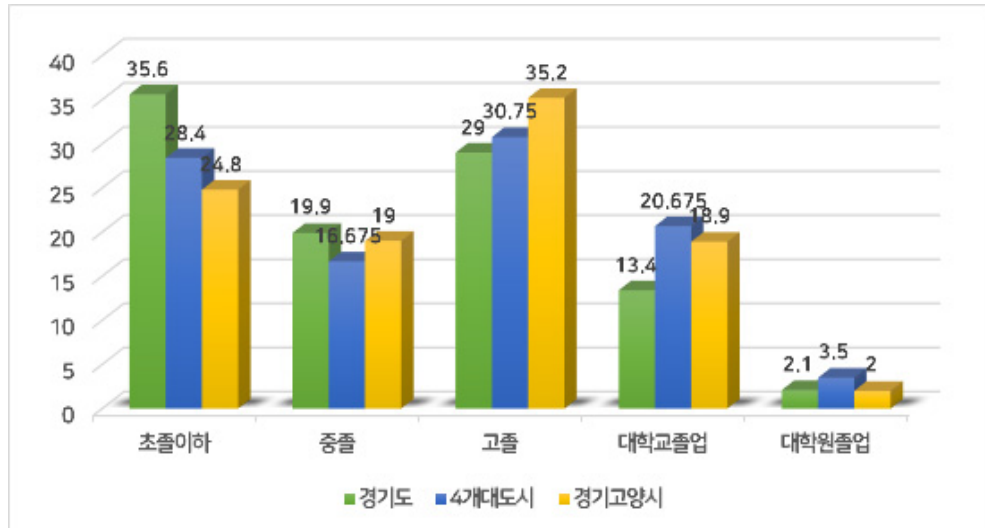
- [그림3-1]은 경기도와 4개 대도시 그리고 고양시의 2016년과 2017년의 자가 및 전세 비율을 나타낸 것임
- 2016년 대비 2017년 모두 자가 비율은 경기도가 대도시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16년 대비 2017년 자가 비율은 0.9% 포인트 감소하였음
- 5개 대도시 지역의 자가 비율은 평균 1.16% 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전세 비율의 경우 2016년 대비 경기도 전체 수준에서 1.4% 포인트 감소한 반면 4개 대도시의 경우 전세 비율이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고양시를 포함한 평균 변화는 2016년 19.66에서

2017년 19.56%로 0.1% 포인트 감소하였음

- 한편 2011년에서 2017년 기간의 평균 순 유입 인구는 100만 이상 대도시 지역이 3084명으로 50만 이상~90만 이하 1190명과 50만 이하 1141명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상대적으로 대도시 지역의 순 유입 인구가 많을 뿐 아니라 순 유입인구가 자가로 편입되는 비율 또한 낮은 것을 의미함
- 동 결과를 통해 볼 때 다른 지역과 달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유입인구의 양보다는 질이 1인당 지방세 수입에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상정할 수 있음
- 이와 달리 중·소도시의 경우 지방세 수입과 관련하여 인구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임
- 한편 고령인구 비율이 1인당 지방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력은 100만 이상 대도시와 중·소 규모 도시의 결과가 매우 큰 차이를 보임
- 50만 미만 소도시의 경우 고령인구 비율이 증가할수록 1인당 지방세 수입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50만~100만 사이의 도시에서는 고령인구 비율과 지방세 수입은 인과관계가 없으나 10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인당 지방세 수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영향력 또한 (약 9.3만 원)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고령자와 군 및 기타 시 지역 고령자의 경제 사회적 특징이 다르기 때문이라 생각되며 대도시 지역 고령자의 담세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으로 추정됨
- [그림3-2]와 [그림3-3]은 경기도와 4개 대도시 그리고 고양시 고령인구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을 나타낸 것임
- 대도시 고령인구의 경우 경기도에 비해 고졸 이상의 비율과 1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초연금 수령자의 비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이를 통해 볼 때 대도시 지역 고령인구의 담세력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음

[그림3-2]고령자 특성 I (교육수준, 2017년 기준)

(단위: %)



자료 : 경기도 『사회조사 보고서』, 2017

경기 고양시 『사회조사 보고서』, 2017

경기 성남시 『사회조사 보고서』,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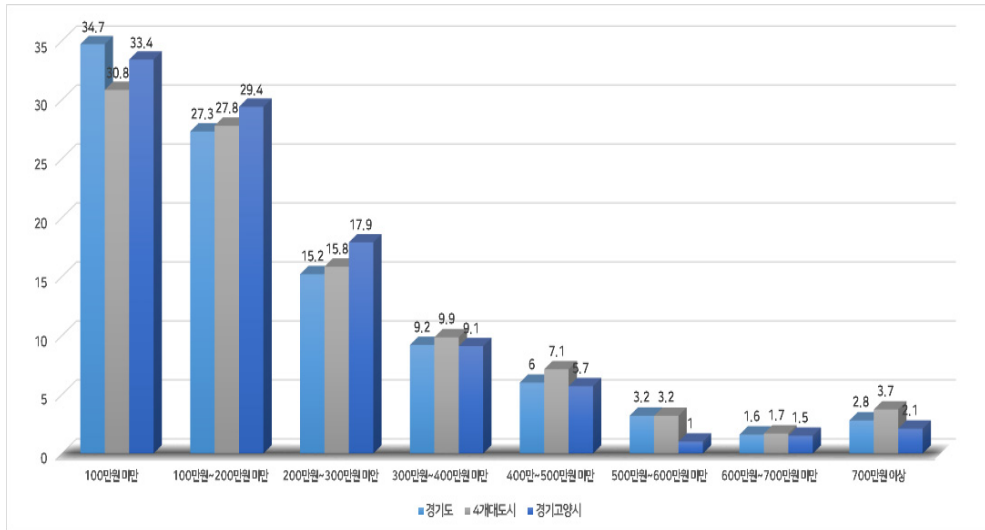
경기 용인시 『사회조사 보고서』, 2017

경기 수원시 『사회조사 보고서』, 2017

경남 창원시 『사회조사 보고서』, 2017

[그림3-3]고령자 특성II(소득수준, 2017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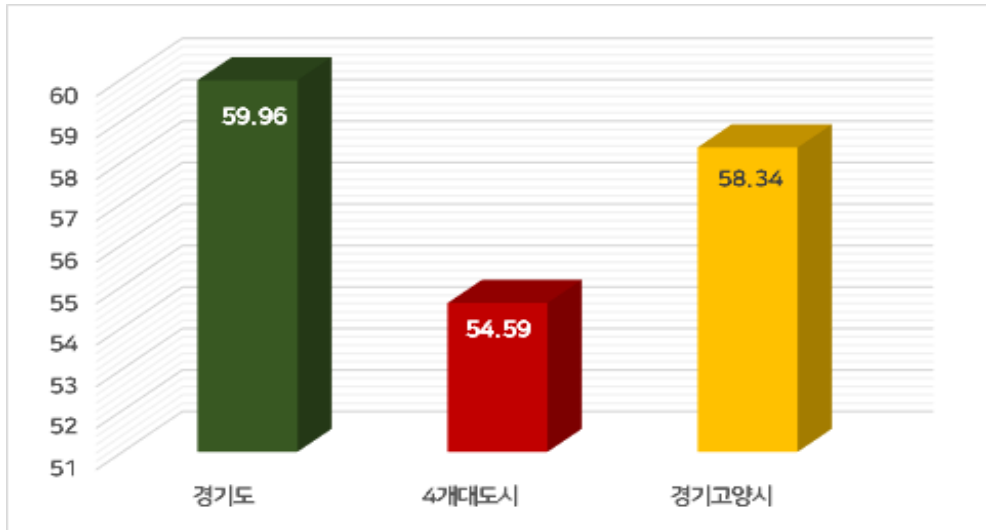
(단위: %)



자료 : 경기도, 『사회조사 보고서』, 2017
 경기 고양시, 『사회조사 보고서』, 2017
 경기 성남시, 『사회조사 보고서』, 2017
 경기 용인시, 『사회조사 보고서』, 2017
 경기 수원시, 『사회조사 보고서』, 2017
 경남 창원시, 『사회조사 보고서』, 2017

[그림3-4]고령자 특성III(기초연금 수급율, 2017년 기준)

(단위: %)



자료 : 경기도 『통계연보』, 2017

- 지가상승률은 시 전체 및 인구 50만 미만 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지가상승률과 1인당 지방세 수입은 오히려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음
- 아래의 [표3-14]은 인구 100만 대도시의 지가상승률과 1인당 지방세 수입 간 상관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임

[표3-14]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가상승률과 지방세 수입 간 상관분석 결과

pop_localt~m	1							
realestate~r	0.4147	1						
P-value	0.0132							
popgrowr	-0.218	-0.486	1					

P-value	0.2082	0.003							
unemployr	0.3776	0.1939	-0.082	1					
P-value	0.0253	0.2643	0.637						
poorr	-0.101	0.4883	-0.744	0.0072	1				
P-value	0.5604	0.0029	0	0.9675					
elderlyr	0.532	0.6399	-0.199	0.3017	0.2736	1			
P-value	0.001	0	0.2504	0.0781	0.1118				
ecoperson	0.2344	0.4063	-0.1231	0.2666	0.2694	0.6959	1		
P-value	0.1753	0.0154	0.481	0.1216	0.1176	0			
businessr	-0.1119	0.4633	-0.728 4	-0.034	0.8803	0.2018	0.3561	1	
P-value	0.5223	0.0051	0	0.8462	0	0.2451	0.0358		
ln_grdpr	0.7031	0.5033	-0.229	0.1793	-0.107	0.0401	0.135	0.1596	1
P-value	0	0.0046	0.2232	0.343	0.5737	0.8333	0.4768	0.3996	

- 다른 요인들이 통제되지 않은 일반 상관계수는 0.4147로 지가상승률과 1인당 지방세 수입 간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¹¹⁾

[표3-15]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가상승률과 지방세 수입 편상관분석 결과

variables	partial corr	significance value
realestat~r	-0.3493	0.1024
popgrowr	-0.4785	0.0209
unemployr	0.3041	0.1584

¹¹⁾ 일반 상관관계의 경우 도시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함.

poorr	0.469	0.024
elderlyr	0.6429	0.0009
ecoperson	-0.0736	0.7384
businessr	-0.6911	0.0003
ln_grdpr	0.8636	0

- 위의 [표3-15]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지가상승률과 1인당 지방세 수입과의 편상관분석 결과를 나타냄
- 일반 상관분석에서는 지가상승률과 1인당지방세 수입이 0.4147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다른 인구·사회·경제적 요인이 통제된 경우 상관관계 계수의 부호가 음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므로 편상관분석 결과에 의하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지가상승률은 1인당 지방세 수입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해석됨¹²⁾
- 결국 다른 요인이 통제되지 않은 경우 지가상승률은 1인당지방세 수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사회·경제·인구학적 요인이 통제된 경우 지가상승률로 인한 지방세 수입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1인당 세입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됨¹³⁾
- 징수율은 1인당 지방세 수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징수율 1% 증가 시 1인당 지방세 수입이 261만 원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 역시 긍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도시 규모가 클수록 1인당 지방세

12) 인구 50만 미만에서는 편상관분석의 경우에도 부호가 바뀌지 않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함.

13) 예를 들어 지가상승에 의한 지방세 수입증가보다 인구가 더 빨리 증가하는 경우 1인당 지방세 수입은 줄어들게 됨. 예를 들어 만약 타 지역에서 전입하는 인구의 자가 비율이 낮아질 경우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 수입은 증가하더라도 새롭게 증가하는 인구에 의해 1인당 지방세 수입은 적어질 수 있음.

수입 증대에 상대적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결론적으로 시 전체 수준에서는 지방세 수입 영향 요인의 계수 값은 이론적 예상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각 요인의 영향력이 중소 도시와 질적, 양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인구·사회학적 변인인 인구증가율과 고령인구비율 그리고 지가상승률 등에서 기존 이론적 예상과 다른 결과가 도출되고 있음
- 중소 도시의 경우 인구증가율은 1인당 지방세 수입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반면 대도시의 경우 인구증가율은 1인당 지방세 수입 증대에 오히려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또한 대도시의 경우 고령인구 비율 역시 중소도시와 달리 1인당 지방세 수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 규모에 따라 동 인구의 담세력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이를 통해 볼 때 일정 수준의 인구 규모를 넘어선 대도시의 경우 양적 인구의 수보다 인구의 질적 특성이 1인당 지방세 수입에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아울러 대도시의 경우 지가상승률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중소 도시와 다른 환경적 특징으로 인해 1인당 세입증가 정도는 더 낮게 나타날 수 있음
- 경제적 요인의 경우 지역의 업체 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1인당 지방세 수입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으나 지역의 GRDP와 실업률은 지방세 수입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대도시의 경우 지방세 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부가가치 혹은 고용파급효과가 큰 산업분야 기업유치에 전략적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제 4 장

고양시와 유사(類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 비교

제1절 지방세 수입 일반현황 비교

제2절 지방세 세목별 세부항목 수입현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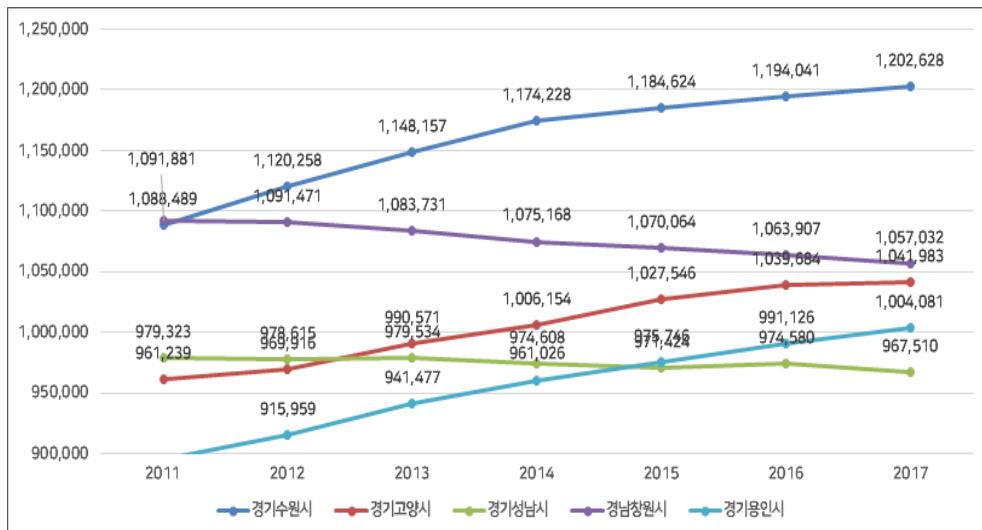
제절 지방세 수입 일반현황 비교

1. 5개 대도시 총세입과 지방세 수입현황

- 고양시 인구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 96만 수준에서 2017년 1백 4만 명 수준으로 증가함
-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경기 용인시가 1.92%로 가장 높았으며, 경남 창원시와 성남시의 경우 2011년 대비 2017년 인구는 감소하였음
- 2017년 기준 인구수는 경기 수원시가 1백 20만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남 창원시(1백 5만), 고양시(1백 4만), 용인시(1백), 성남시(96만)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4-1] 5개 대도시 인구변화(2011-2017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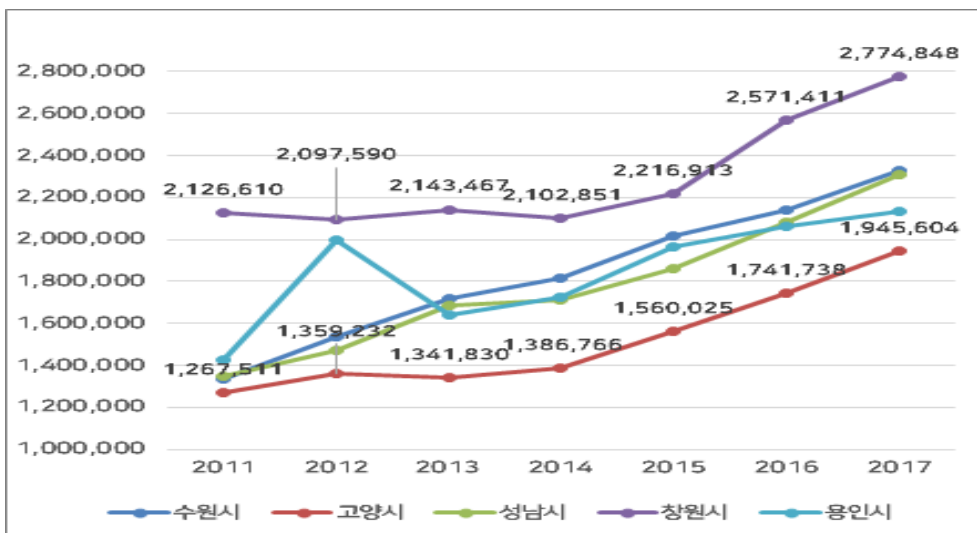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시도/시/군/구)”,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년도

1) 총세입 비교

- 2011년에서 2017년 동안 고양시 일반회계 기준 총세입은 2013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7년 2011년 대비 53.4% 증가한 1조 9천 456억 원 수준에 이름
- 고양시의 총세입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나 수원, 성남, 창원, 용인을 포함한 5개 대도시 중 가장 낮은 수준임
- 분석기간 동안 창원시의 총세입이 가장 높았으며, 2017년 기준 수원시와 성남시의 경우 2조 3천억 수준에서 유사하게 나타남

[그림4-2] 5개 대도시 총세입(2011-2017년)

(단위: 백만원)



자료 :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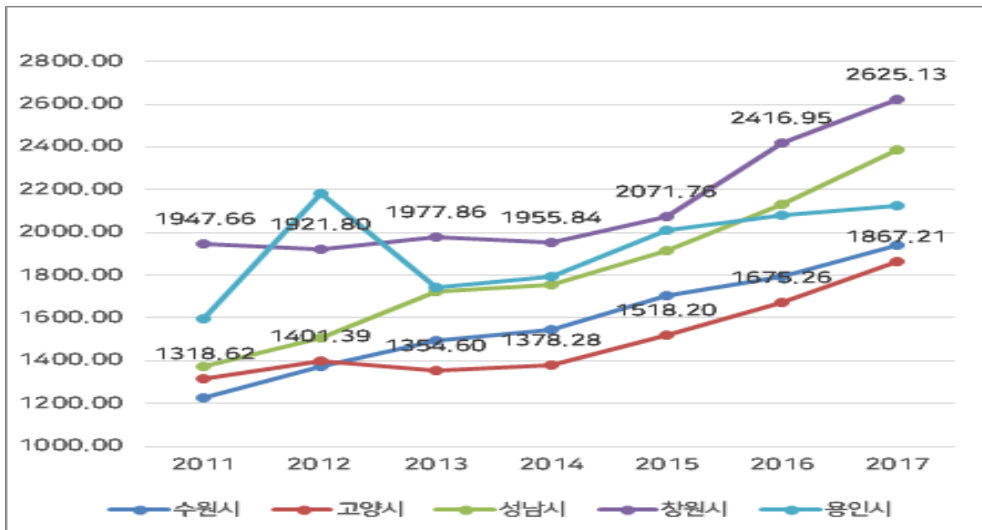
- 2011년에서 2017년의 기간 동안 고양시 일반회계 기준 1인당 총세입은 2013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고양시 1인당 총세입은 연평균 5.9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7년 1인당 총

세입은 2011년 대비 41.6% 증가한 1백 86만원 수준으로 나타남

- 2012년을 제외하고 창원시의 1인당 총세입이 가장 높았으며, 2017년 기준 1인당 총세입은 창원시(2백 62만), 성남시(2백 38만), 용인시(2백 12만), 수원시(1백 93만), 고양시(1백 86만)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분석기간 동안 경기 성남시의 연평균 증가율이 9.61%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수원시(7.93%), 고양시(5.97%), 경남 창원시(5.10%), 용인시(4.91%)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4-3] 5개 대도시 총세입(1인당, 2011-2017년)

(단위: 천원)



자료 :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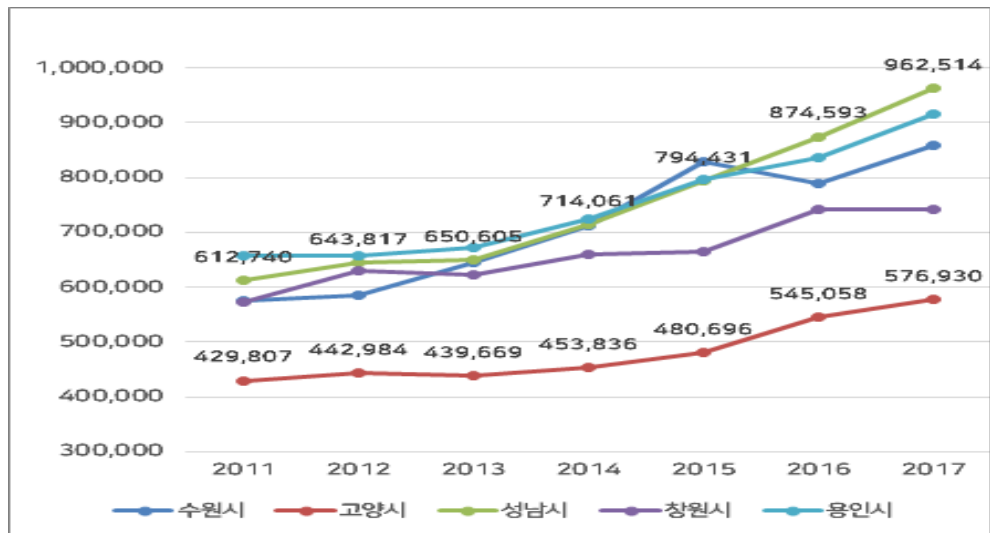
2) 지방세 수입비교

- 분석기간 동안 고양시 지방세 수입은 2013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7년 지방세 수입은 2011년 대비 34.23% 증가한 576억 원 수준임
- 고양시 지방세 수입은 증가추세에 있으나 수원, 성남, 창원, 용인을 포함한 5개 대도

- 시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17년 기준 성남시의(962억) 59.93% 수준에 불과함
- 2017년 기준 지방세 수입은 경기 성남시(962억), 용인시(914억), 수원시(859억), 창원시(740억)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4-4] 5개 대도시 지방세 수입(2011-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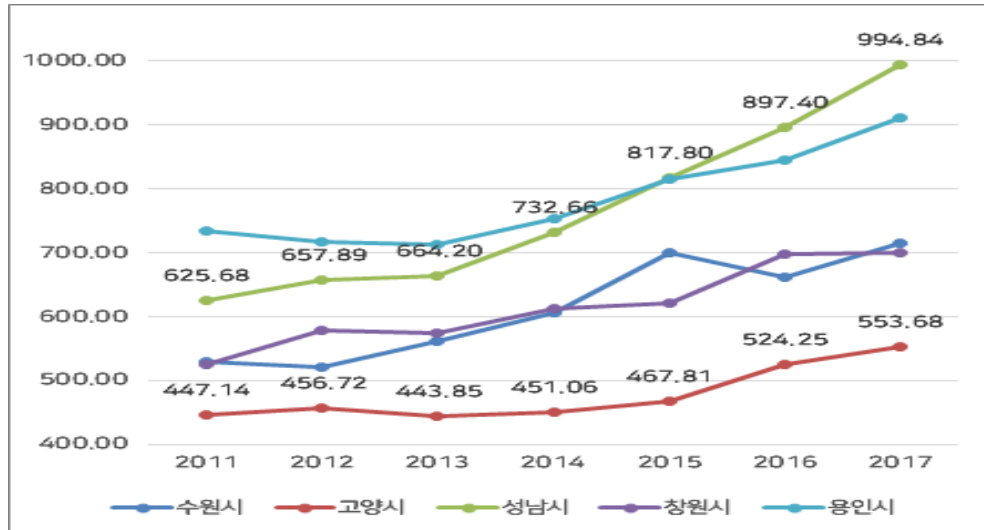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자료 :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

- 2011년에서 2017년의 기간 동안 고양시 1인당 지방세 수입은 2013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7년 1인당 지방세 수입은 2011년 대비 23.83% 증가한 55만 원 수준임
- 고양시의 1인당 지방세 수입은 증가 추세에 있으나 수원, 성남, 창원, 용인을 포함한 5개 대도시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17년 기준 성남시의(99만) 55.66% 수준에 불과함
- 2017년 기준 1인당 지방세 수입은 성남시(99만), 용인시(91만), 수원시(71만), 창원시(70만)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4-5] 5개 대도시 1인당 지방세 수입(2011-2017년)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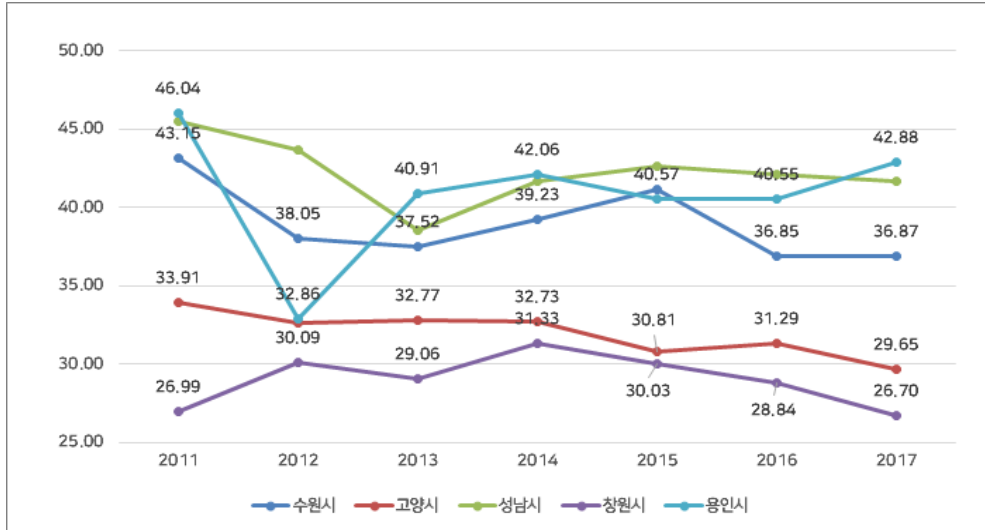


자료 :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

- 고양시의 총세입 대비 지방세 비중은 2017년 기준 약 3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울산시와 성남시의 지방세 비중이 4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고양시의 총세입 대비 지방세 비중은 감소 추세에 있음

[그림4-6] 5개 대도시 총세입 대비 지방세 수입 비중(2011-2017년)

(단위: %)

자료 :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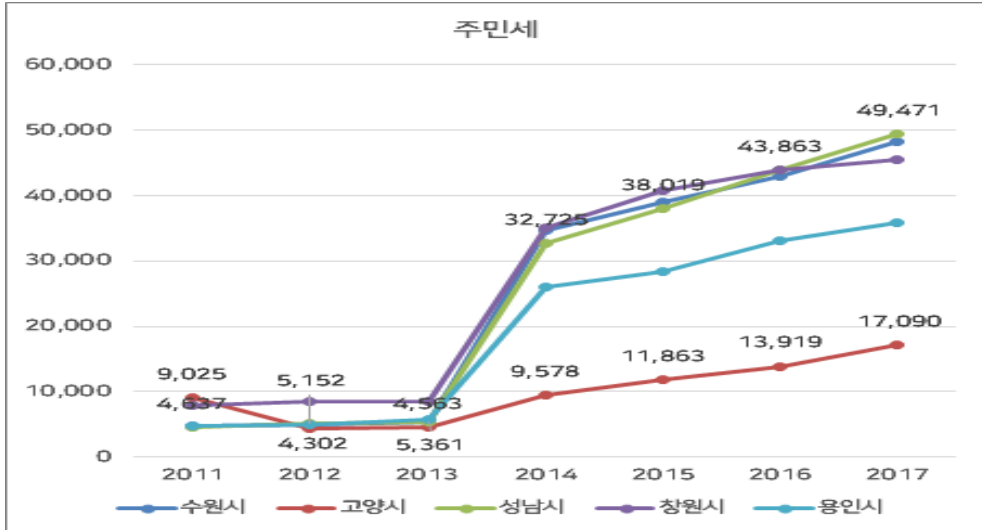
2. 5개 대도시 지방세 세목별 수입현황

1) 주민세

- 고양시의 주민세 수입은 2011년 90억 원 수준에서 2017년 1백 70억 원으로 2011년 대비 89.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고양시의 주민세 수입은 2012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나 수원, 성남, 창원, 용인을 포함한 5개 대도시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17년 기준 성남시의 1/3 수준에 불과함
- 2011년부터 2017년의 분석기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성남시가 48.37%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수원시(47.29), 용인시(39.78), 창원시(33.82), 고양시(11.23)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4-7] 5개 대도시 주민세 총액(2011-2017년)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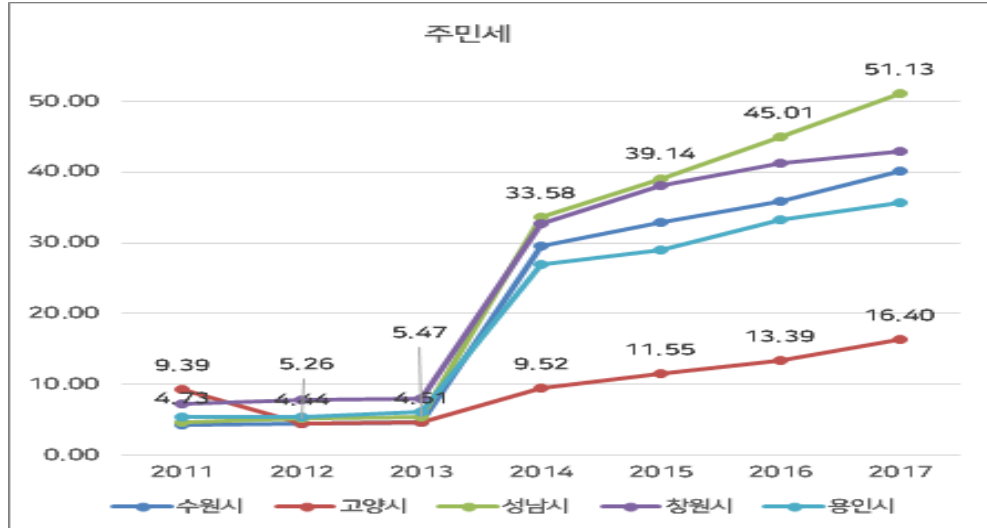


자료 :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

- 고양시 1인당 주민세 수입은 2011년 9.3천 원 수준에서 2017년 1만 6천 원으로 2011년 대비 74.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1인당 주민세 수입은 2017년 기준 성남시가 5만 1천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창원시(4만 3천), 수원시(4만), 용인시(3만 5천), 고양시(1만 6천)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고양시의 1인당 주민세 수입은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5개 대도시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17년 기준 성남시의 32.07%에 불과함

[그림4-8] 5개 대도시 1인당 주민세(2011-2017년)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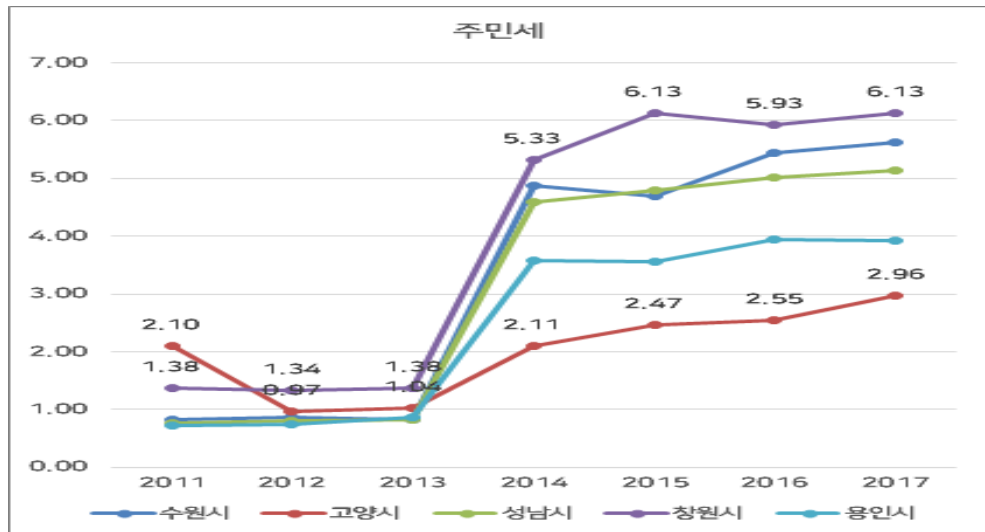


자료 :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

- 고양시 지방세 수입 대비 주민세 수입 비중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3% 미만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7년 기준 창원시가 지방세 수입 대비 주민세 수입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수원시(5.62), 성남시(5.14), 용인시(3.92), 고양시(2.96)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주민세 항목에 종업원분이 추가된 2014년 이후 5개 대도시의 주민세 수입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4-9] 5개 대도시 지방세 수입 대비 주민세 비중(2011-2017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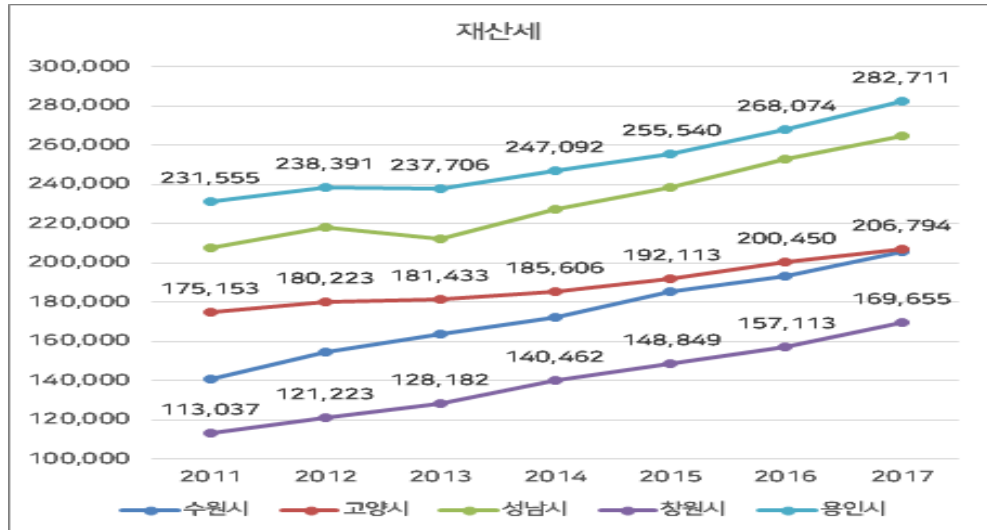
자료 :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

2) 재산세

- 고양시 재산세 수입은 2011년 1천 751억 원 수준에서 2017년 2천 68억 원으로 2011년 대비 1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고양시의 재산세 수입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나 2017년 기준 2천 68억 수준으로 용인시의 73%에 불과함
- 2017년 기준 5개 대도시의 재산세 수입은 용인시가 2천 827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남시(2천 650억) 고양시(2천 68억), 수원시(2천 60억), 창원시(1천 697억)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4-10] 5개 대도시 재산세 총액(2011-2017년)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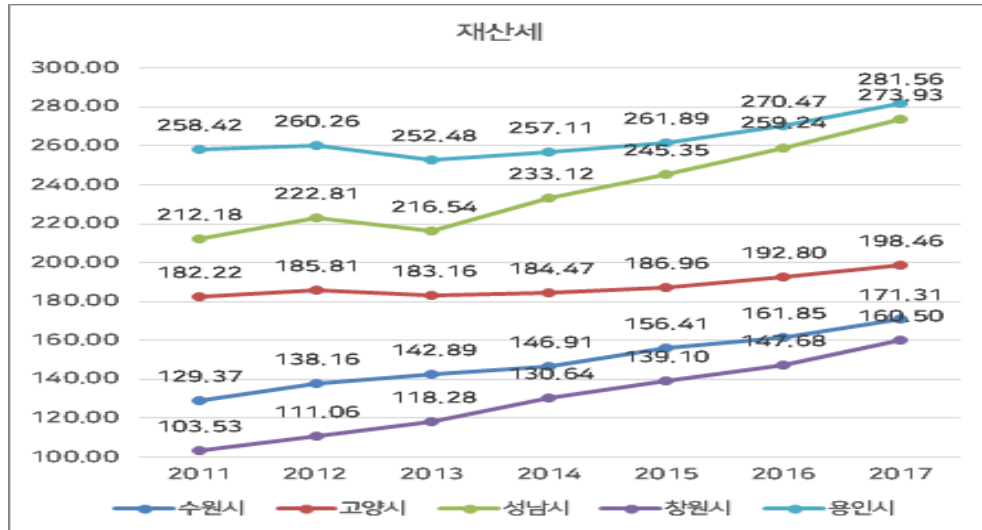


자료 :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

- 고양시의 1인당 재산세 수입은 2011년 1백 82만 원 수준에서 2017년 1백 98만 원으로 2011년 대비 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고양시의 1인당 재산세 수입은 2013년을 제외하고 증가 추세에 있으나 2017년 기준 용인시의 70.49% 수준에 불과함
- 2017년 기준 5개 대도시의 1인당 재산세 수입은 용인시가 2백 81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성남시(2백 73만), 고양시(1백 98만), 수원시(1백 71만), 경남 창원시(1백 60만)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4-11] 5개 대도시 1인당 재산세(2011-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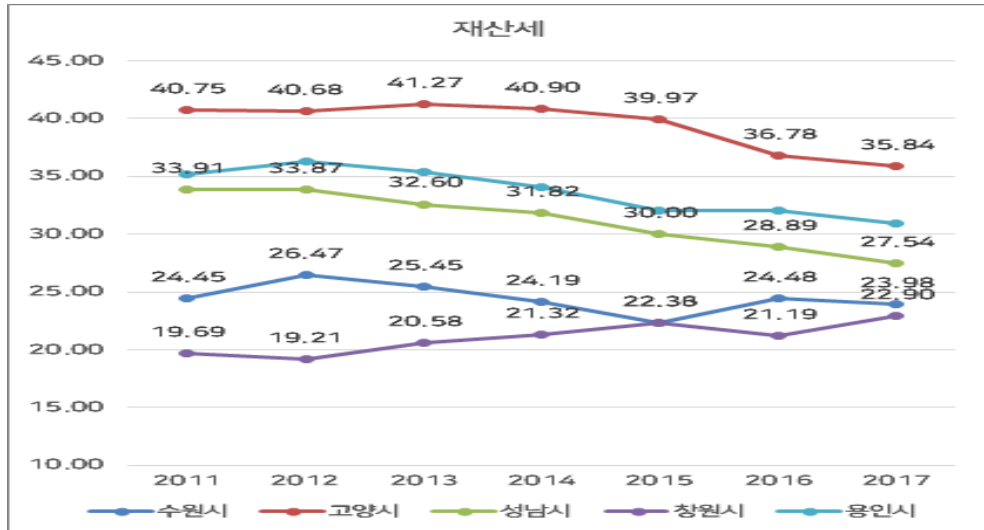
(단위: 천원)

자료 :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

- 고양시의 지방세 수입 대비 재산세 수입 비중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약 38%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고양시는 분석기간 동안 5개 대도시 가운데 지방세 수입 대비 재산세 수입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4-12] 5개 대도시 지방세 수입 대비 재산세 비중(2011-2017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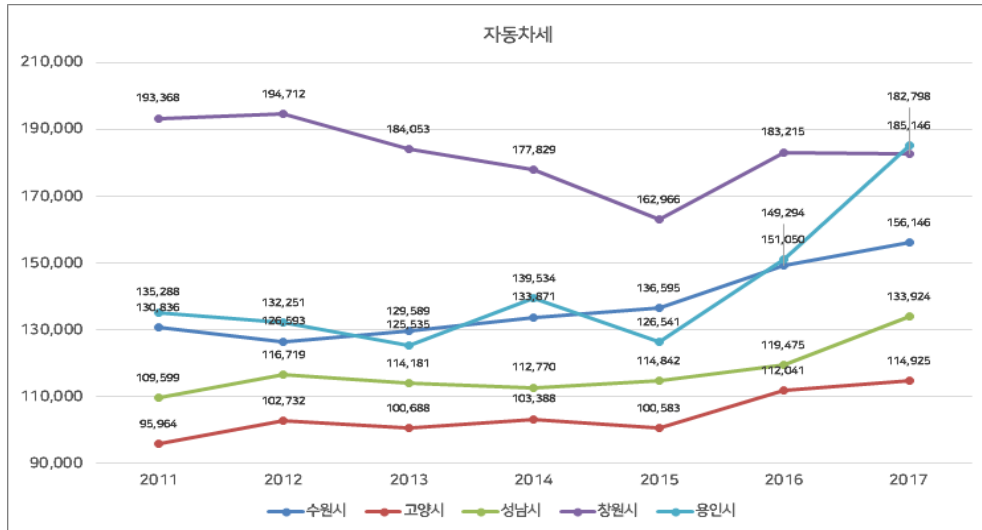
자료 :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

3) 자동차세

- 고양시의 자동차세는 2011년 95억 원 수준에서 2017년 1천 149억 원으로 2011년 대비 1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고양시의 자동차세 수입은 2017년 1천 149억 수준으로 용인시의 62.07%에 불과함
- 2017년 기준 5개 대도시의 자동차세 수입은 경기 용인시가 1천 851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창원시(1천 827억), 수원시(1천 561억), 성남시(1천 339억), 고양시(1천 149억)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4-13] 5개 대도시 자동차세 총액(2011-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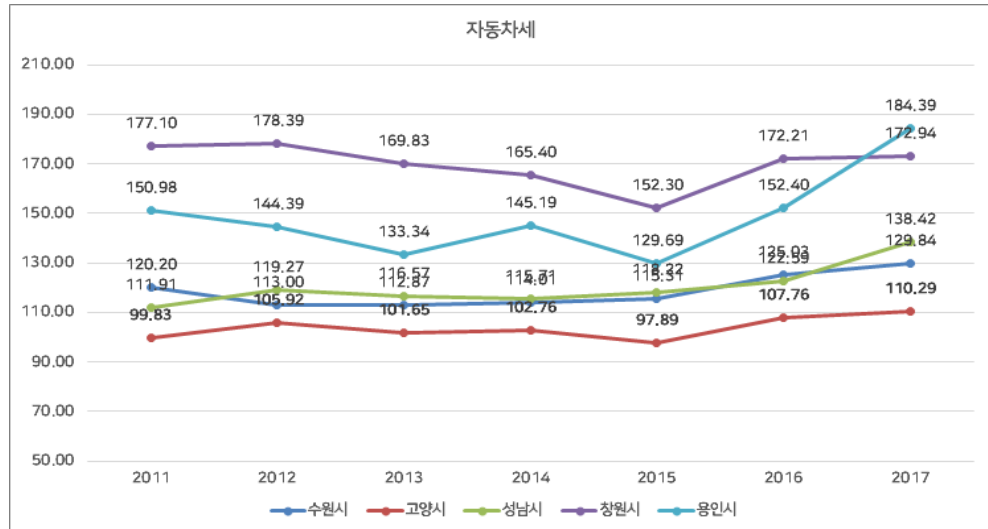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자료 :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

- 고양시의 1인당 자동차세 수입은 2011년 약 10만 원에서 2017년 11만 원 수준으로 2011년 대비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고양시 1인당 자동차세 수입은 비교적 완만한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
- 2017년 기준 5개 대도시 1인당 자동차세 수입은 울산시가 18만 4천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창원시(17만 2천) 성남시(13만 8천), 수원시(12만 9천), 고양시(11만) 순으로 나타남

[그림4-14] 5개 대도시 1인당 자동차세(2011-2017년)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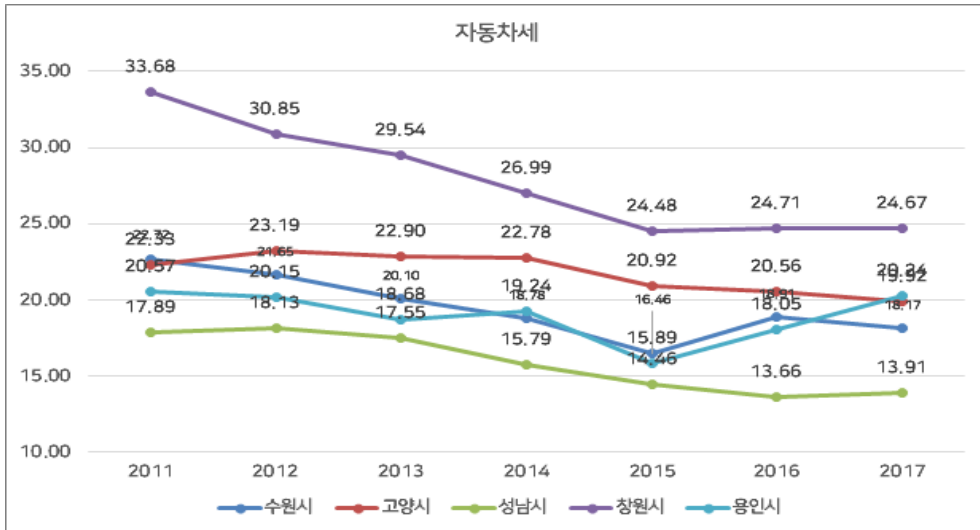


자료 :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

- 고양시의 지방세 수입 대비 자동차세 수입 비중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약 21.8%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2년 이후 고양시의 지방세 수입 대비 자동차세 비중은 창원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4-15] 5개 대도시 지방세 수입 대비 자동차세 비중(2011-2017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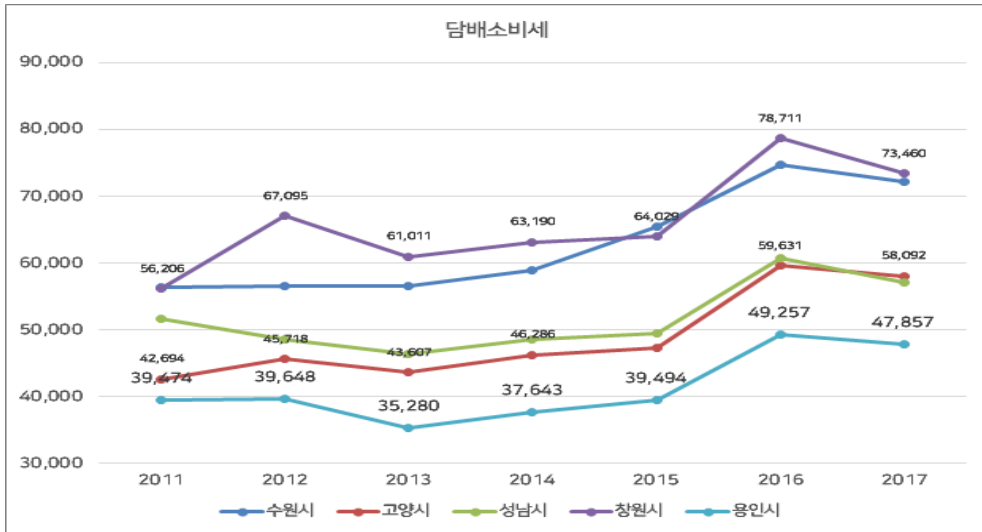
자료 :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

4) 담배소비세

- 고양시의 담배소비세 수입은 2011년 42억 원 수준에서 2017년 58억 원으로 2011년 대비 3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고양시의 담배소비세 수입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2016년 대비 2017년 약 1.53억 원 감소하였음
- 2017년 기준 5개 대도시의 담배소비세 수입은 경남 창원시가 73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수원시(72억) 고양시(58억), 성남시(57억), 용인시(47억)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4-16] 5개 대도시 담배소비세 총액(2011-2017년)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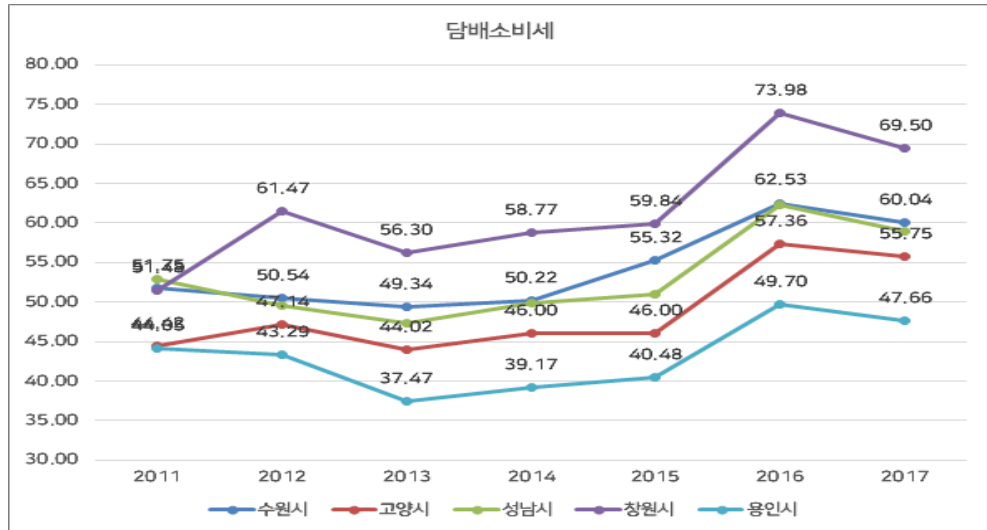


자료 :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

- 고양시의 1인당 담배소비세 수입은 2011년 4만 4천 원 수준에서 2017년 5만 5천 원 수준으로 2011년 대비 25.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 2017년 기준 5개 대도시의 1인당 담배소비세는 경남 창원시가 6만 9천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수원시(6만), 성남시(5만 9천), 고양시(5만 5천), 울산시(4만 7천)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4-17] 5개 대도시 1인당 담배소비세(2011-2017년)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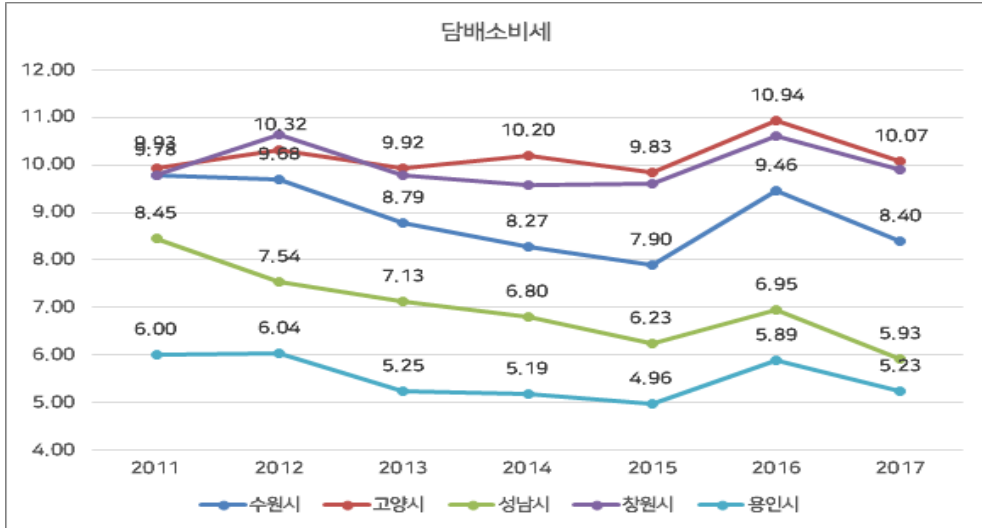


자료 :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

- 고양시의 지방세 수입 대비 담배소비세 비중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약 1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고양시는 분석기간 동안 2012년을 제외하고 5개 대도시 가운데 지방세 수입 대비 담배소비세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4-18] 5개 대도시 지방세 수입 대비 담배소비세 비중(2011-2017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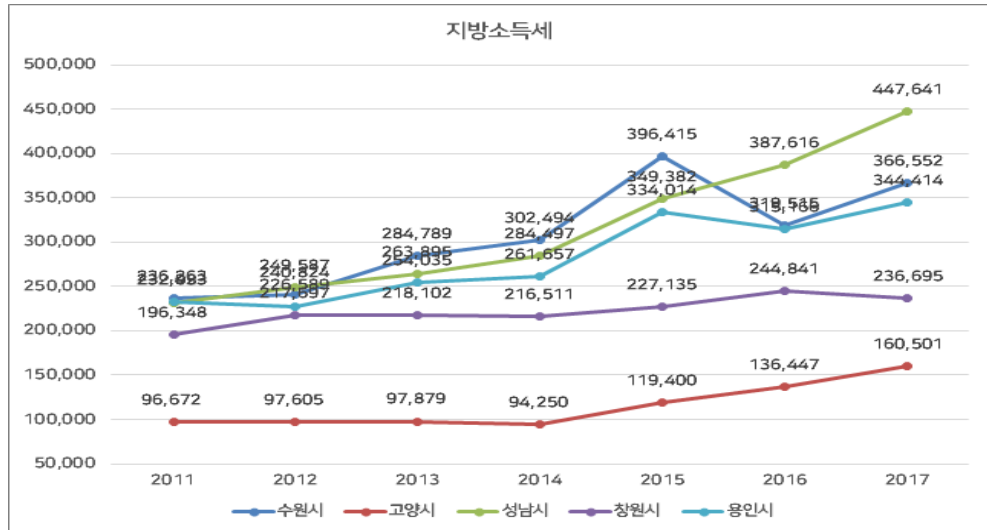
자료 :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

5) 지방소득세

- 고양시의 지방소득세는 2011년 960억 원 수준에서 2017년 1천 6백억 원으로 2011년 대비 66% 증가하였음
- 고양시 지방소득세 수입은 종업원분이 주민세에 편입된 2014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나 수원, 성남, 창원, 용인을 포함한 5개 대도시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17년 기준 성남시의 35.9% 수준에 불과함
- 2017년 기준 지방소득세는 성남시가 4천 4백 70억 원 수준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수원시(3천 6백 60억), 용인시(3천 4백 40억), 창원시(2천 3백 60억), 고양시(1천 6백억)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4-19] 5개 대도시 지방소득세 총액(2011-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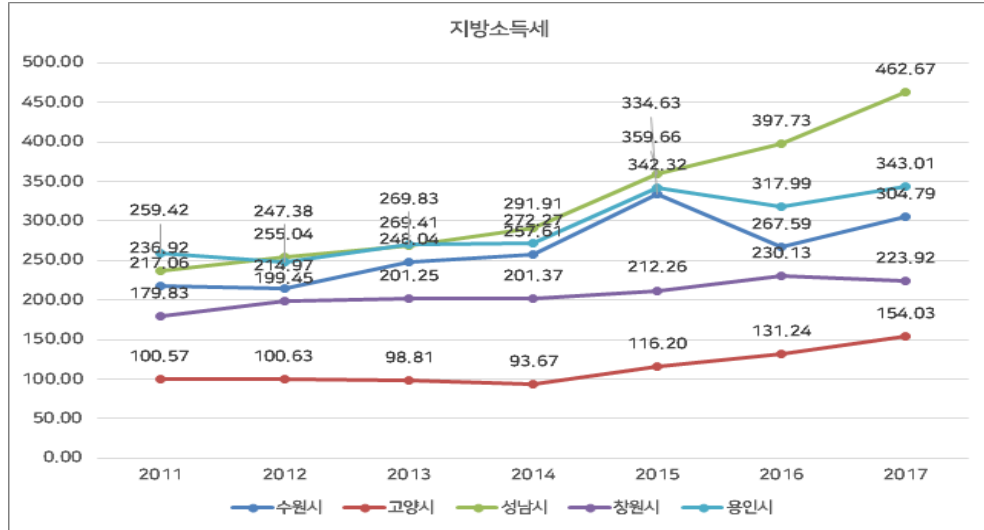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자료 :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

- 고양시의 1인당 지방소득세는 2011년 10만 원에서 2017년 15만 4천 원 수준으로 증가함
- 고양시의 1인당 지방소득세 수입은 2014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나 수입액은 성남시의 약 1/3 수준에 불과함
- 2017년 기준 5개 대도시의 1인당 지방소득세는 경기 성남시가 46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용인시(34만) 수원시(30만), 창원시(22만), 고양시(15만)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4-20] 5개 대도시 1인당 지방소득세(2011-2017년)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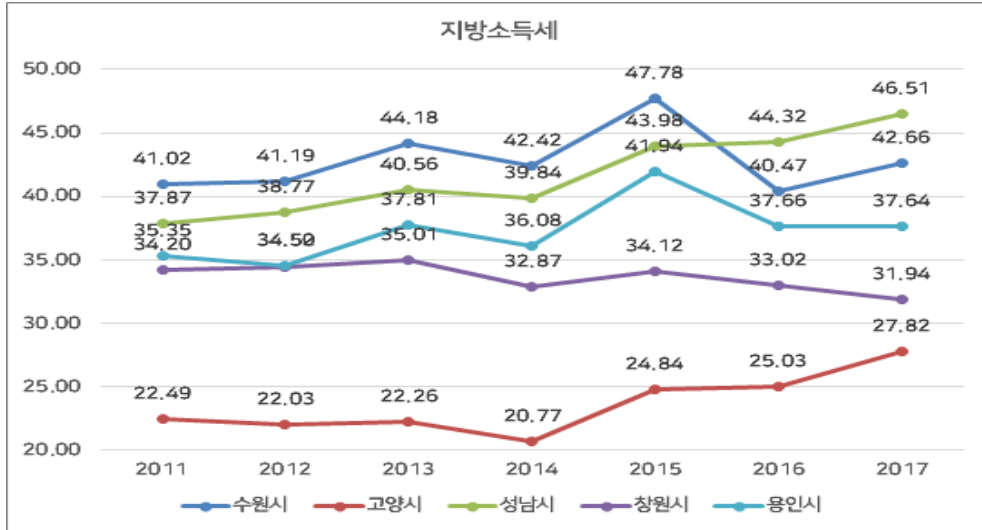


자료 :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

- 고양시의 지방세 수입 대비 지방소득세 비중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약 23.61% 수준으로 5개 대도시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4-21] 5개 대도시 지방세 수입 대비 지방소득세 비중(2011-2017년)

(단위: %)



자료 :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

제2절 지방세 세목별 세부항목 수입현황 비교

1. 주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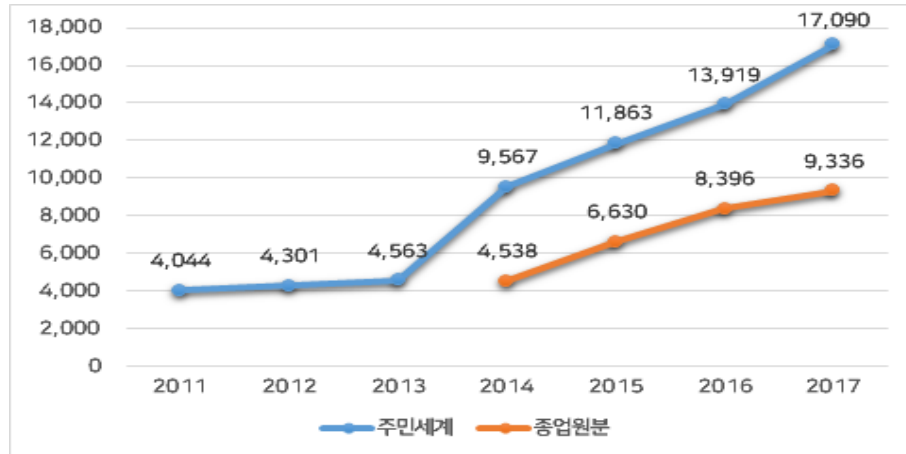
1) 고양시 현황

- 2011년 고양시 주민세 수입은 2011년 40여 억 수준¹⁴⁾에서 2017년 171억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에 편입되기 이전까지는 재산분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종업원분은 주민세의 평균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7년 소폭 감소하였음
- 종업원분이 주민세에 편입된 2014년 이후 종업원분을 제외한 다른 항목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이는 종업원분이 주민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임
- 이러한 항목의 비중감소에도 불구하고 절대 수입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개인 균등분 수입액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음
- 고양시 주민세 수입의 구성은 2017년 기준 종업원분(54.53%), 재산분(11.55%), 개인균등분(19.87%), 개인사업장분(8.74%), 법인균등분(5.21%) 순으로 나타남

¹⁴⁾ 2011년에만 주민세 자료에 포함되어 있던 주민세 종합소득세할, 양도소득세할, 법인세할, 특별징수 등을 제외한 금액임

[그림4-22]고양시 주민세 및 종업원분 추이(2011-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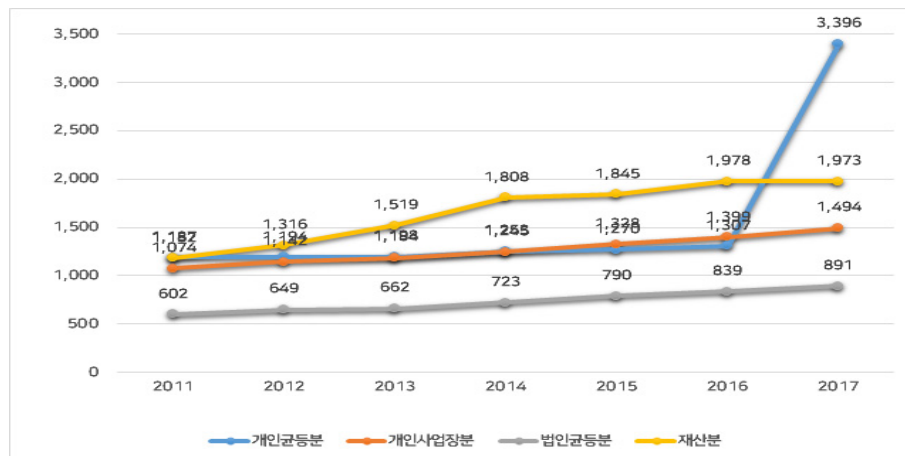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자료 : 고양시 내부자료

[그림4-23]고양시 주민세 세부항목 추이(2011-2017년)

(단위: 백만원)



자료 : 고양시 내부자료

주 1) 2017년 이후 고양시 개인 균등분의 비약적 증가는 주민세 인상에서 기인함

[표4-1]고양시 주민세 연도별 구성항목 금액 및 비율(2011-2017년)

(단위: 원, %)

구분	주민세계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장분	법인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2011	4,043,962,120 (100.0)	1,186,767,860 (29.35)	1,074,005,370 (26.56)	602,200,510 (14.89)	1,181,996,560 (29.23)	- -
2012	4,300,977,350 (100.0)	1,193,922,890 (27.76)	1,141,934,050 (26.55)	649,188,330 (15.09)	1,315,932,080 (30.60)	- -
2013	4,562,559,290 (100.0)	1,197,716,640 (26.25)	1,184,473,250 (25.96)	661,817,390 (14.51)	1,518,808,780 (33.29)	- -
2014	9,566,914,590 (100.0)	1,253,048,930 (13.10)	1,245,196,660 (13.02)	722,697,020 (7.55)	1,808,127,090 (18.90)	4,537,907,550 (47.43)
2015	11,863,417,920 (100.0)	1,270,231,850 (10.71)	1,328,363,040 (11.20)	790,174,260 (6.66)	1,845,037,500 (15.55)	6,629,742,270 (55.88)
2016	13,919,141,480 (100.0)	1,306,637,560 (9.39)	1,399,297,210 (10.05)	838,612,830 (6.02)	1,978,457,130 (14.21)	8,396,136,750 (60.32)
2017	17,089,620,530 (100.0)	3,395,882,750 (19.87)	1,493,751,050 (8.74)	890,905,490 (5.21)	1,973,479,090 (11.55)	9,335,602,150 (54.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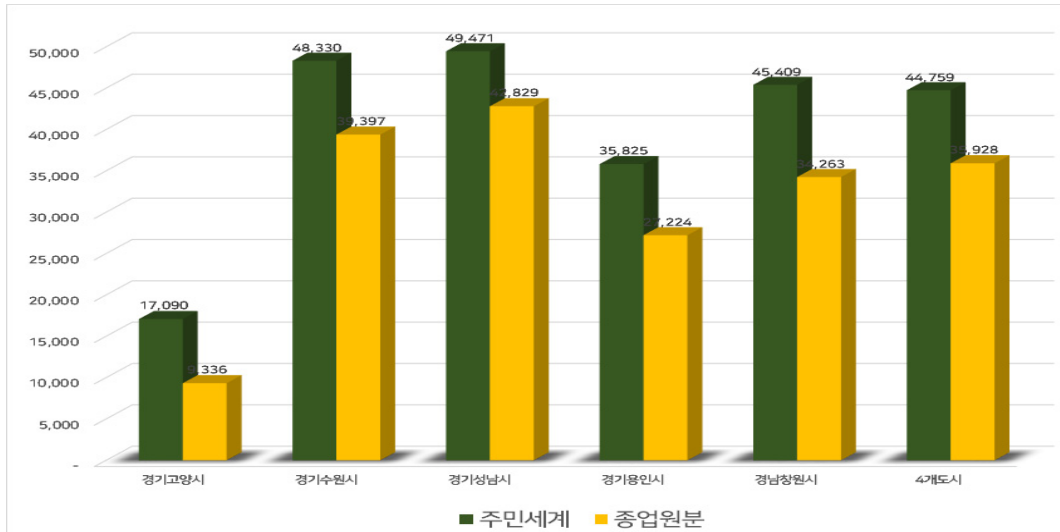
자료 : 고양시 내부자료

2) 5개 대도시 비교

- 2017년 기준 고양시 주민세 수입은 171억으로 수원시(483억)의 35%, 4개 대도시의 평균 주민세(447억)의 38%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인구대비 주민세 수입은 매우 낮은 특징을 보임

[그림4-24]5개 대도시 주민세 및 종업원분 수입(2017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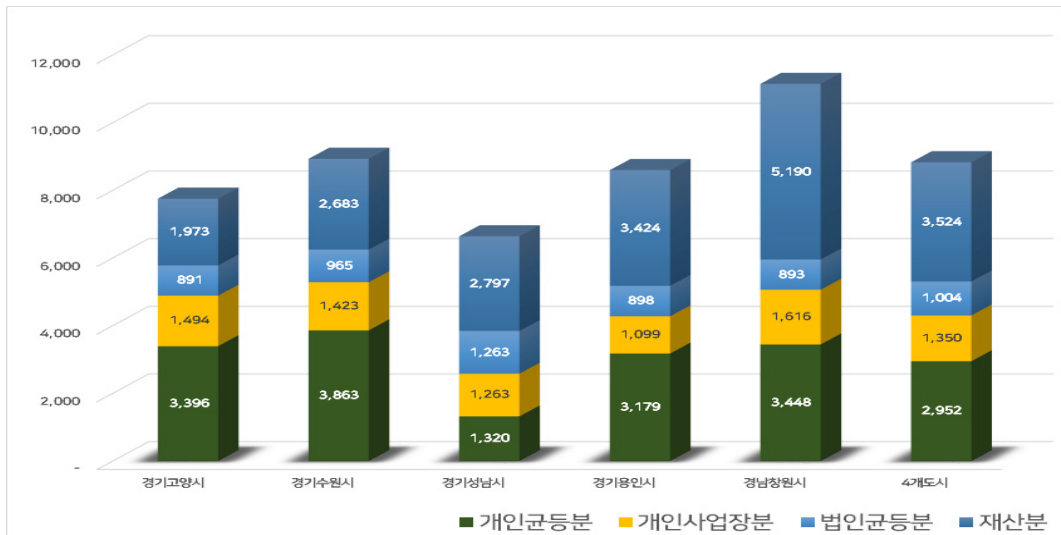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자료 : 고양시 내부자료

[그림4-25]5개 대도시 주민세 세부항목 수입(2017년 기준)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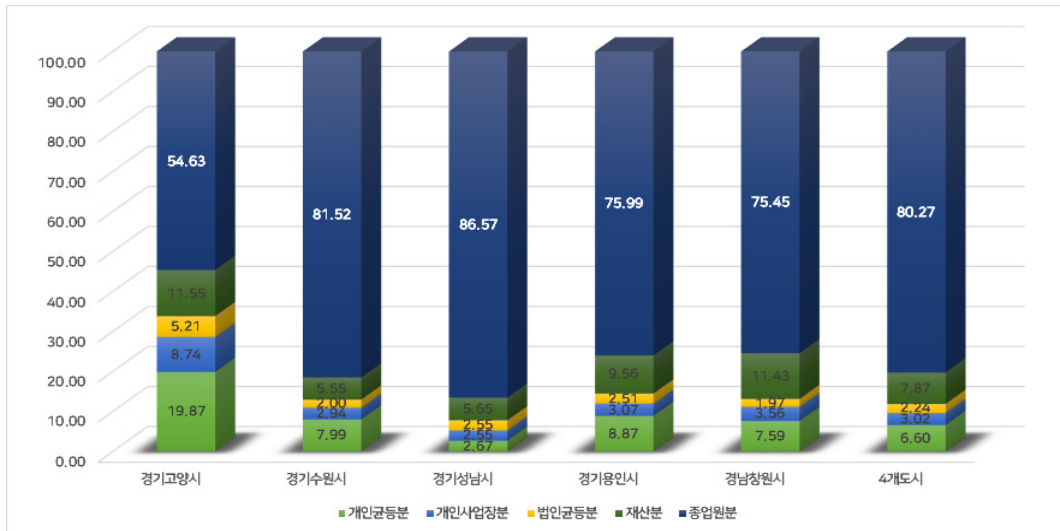


자료 : 고양시 내부자료

- 고양시 개인균등분은 수원 및 창원시에 이어 3번째로 높은 34억 수준이며 개인사업장분의 경우 15억 수준으로 고양시를 제외한 4개 대도시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
- 법인균등분은 성남시가 가장 높은 12.6억 수준이며 수원시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는 유사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 재산분의 경우 경남 창원시가 52억 수준으로 가장 높고 고양시는 가장 낮은 20억 수준으로 4개 대도시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종업원분은 주민세 수입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2017년 고양시의 종업원분 수입액은 100억 미만이나 4개 대도시 평균은 360억 수준으로, 고양시의 주민세 수입은 4개 대도시 중 가장 낮은 수입액을 보이고 있는 용인시의 1/3 수준에 불과함
- 2017년 4개 대도시 평균기준 주민세 구성항목 비율은 종업원분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재산분,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장(사업소)분, 법인균등분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4-26] 5개 대도시 주민세 구성 비율(2017년 기준)

(단위: %)



자료 : 고양시 내부자료

- 고양시의 주민세 구성항목 비율은 종업원분(54.63%), 개인균등분(19.87%), 재산분(11.55%), 개인사업장분(8.74%), 법인균등분(5.21%) 순으로, 개인균등분을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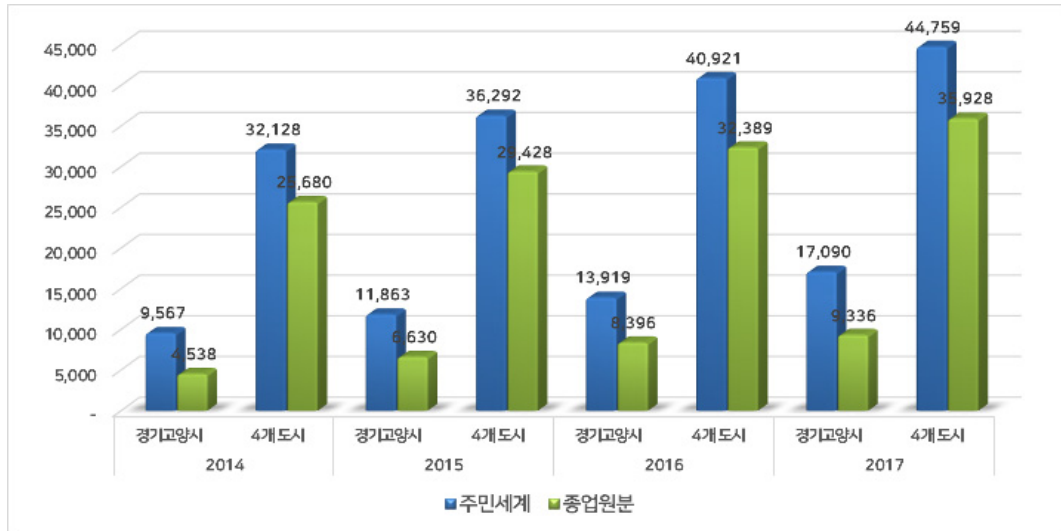
한 구성항목 비중 순서는 다른 대도시와 유사하나, 그 구성비율은 4개 대도시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고양시의 경우 다른 도시에 비해 개인 균등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종업원분의 비중이 매우 낮은 특징을 보임
- 개인균등분의 경우 4개 대도시 평균의 3배 이상의 비중을 보이는 반면 종업원분의 경우 4개 대도시 평균 비중의 68% 수준에 불과함
- 고양시 개인균등분의 경우 그 비중이 높다 하더라도 다른 대도시의 주민세 수입 절대액이 크기 때문에 수입액의 절대액 차이는 크지 않으며 개인균등분의 비중이 8%에 불과한 수원시에 비해 4.6억 이상 낮게 나타나고 있음
- 고양시 종업원분 비중은 54.63%로 4개 대도시 중 가장 비중이 낮은 창원시 대비 20% 이상 격차를 보임
- 이외에 다른 지역에 비해 재산분과 개인사업장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주민세 수입 절대액의 차이로 인해 고양시 재산분 수입액은 4개 대도시 평균의 56% 수준에 불과하며 개인사업장분 수입액은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임
- 2014년에서 2017년의 기간 동안 고양시와 고양시를 제외한 4개 대도시 평균 주민세 수입과 종업원분의 변화 추이는 다음과 같음
- 고양시와 4개 도시 평균 주민세 수입과 종업원분 수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4년 고양시 주민세 총액은 95억 원 수준이었으나 2017년 총액은 171억 원으로 2014년 대비 78.6% 증가하였음
- 종업원분의 경우 2014년 총액은 45억 원 수준이었으나 2017년에는 2014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한 93억에 이르고 있음
- 4개 도시 평균의 경우 2014년 주민세 총액은 320억 원 수준에서 2017년 447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4개 도시 평균 기준 종업원분은 2014년 256억 원에서 2017년 360억 원으로 40% 증가하였음
- 고양시의 주민세 및 종업원분 증가율은 4개 도시 평균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2017년 기준 주민세 총액은 4개 대도시의 38% 수준에 불과하며 종업원분은 26%에 불과함

[그림4-27] 주민세 및 종업원분 수입 추이(경기 고양시와 4개 도시 평균, 2014-2017년)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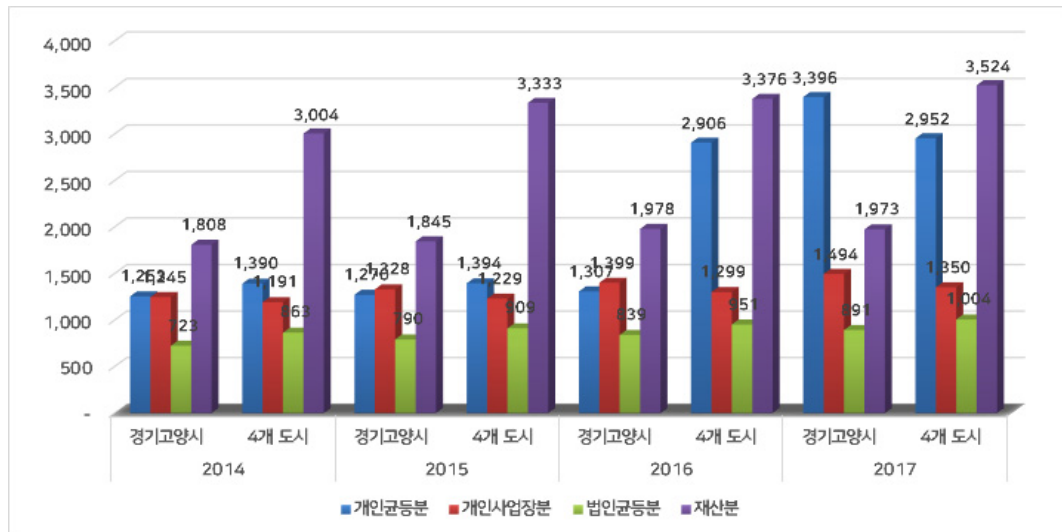


자료 : 고양시 내부자료

- 고양시 개인균등분은 2014년 125억에서 2017년 340억으로, 4개 대도시 개인균등분은 2014년 139억에서 2017년 295억으로 증가하여 2017년 기준 4개 도시 평균에 비해 고양시가 약 4억여 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개인균등분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 역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 도시 평균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7년 고양시의 재산분은 2016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음

[그림4-28] 주민세 세부항목 수입 추이(경기 고양시와 4개 도시 평균, 2014-2017년)

(단위: 백만원)



자료 : 고양시 내부자료

- 아래 [표4-2]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5개 대도시 주민세 구성항목 수입 금액과 비율을 나타낸 것임

[표4-2]5개 대도시 주민세 구성항목 금액 및 비율(2011-2017년)

(단위: 원, %)

연도	구분	주민세계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장분	법인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2011	경기 고양시	4,043,962,120 (100.0)	1,186,767,860 (29.35)	1,074,005,370 (26.56)	602,200,510 (14.89)	1,181,996,560 (29.23)	-
	경기 수원시	4,732,758,460 (100.0)	1,292,449,370 (27.31)	1,103,505,600 (23.32)	667,981,600 (14.11)	1,669,191,650 (35.27)	-
	경기 성남시	4,636,289,630 (100.0)	1,182,864,550 (25.51)	914,132,890 (19.72)	875,848,800 (18.89)	1,663,490,790 (35.88)	-
	경기 용인시	4,795,398,530 (100.0)	1,107,624,280 (23.10)	722,360,450 (15.06)	606,707,560 (12.65)	2,359,670,180 (49.21)	-
	경남 창원시	7,901,534,120 (100.0)	1,621,193,130 (20.52)	1,372,700,600 (17.37)	705,298,290 (8.93)	4,202,374,300 (53.18)	-
	4개 도시	5,516,495,185 (100.0)	1,301,032,833 (23.58)	1,028,174,885 (18.64)	713,959,063 (12.94)	2,473,681,730 (44.84)	-
2012	경기 고양시	4,300,977,350 (100.0)	1,193,922,890 (27.76)	1,141,934,050 (26.55)	649,188,330 (15.09)	1,315,932,080 (30.60)	-
	경기 수원시	5,016,787,130 (100.0)	1,352,219,500 (26.95)	1,185,806,840 (23.64)	735,117,350 (14.65)	1,743,767,720 (34.76)	-
	경기 성남시	5,152,107,020 (100.0)	1,185,472,780 (22.82)	981,999,300 (19.06)	916,521,920 (17.78)	2,068,113,180 (40.27)	-
	경기 용인시	4,896,263,120 (100.0)	1,130,194,020 (23.08)	796,911,500 (16.28)	631,984,890 (12.91)	2,337,139,330 (47.73)	-
	경남 창원시	8,455,186,060 (100.0)	1,654,934,320 (19.57)	1,458,433,250 (17.25)	752,944,880 (8.91)	4,569,439,990 (54.04)	-
	4개 도시	5,880,085,833 (100.0)	1,330,705,155 (22.63)	1,105,787,723 (18.81)	759,142,260 (12.91)	2,679,615,055 (45.57)	-

2013	경기 고양시	4,562,559,290 (100.0)	1,197,716,640 (26.25)	1,184,473,250 (25.96)	661,817,390 (14.51)	1,518,808,780 (33.29)	- -
	경기 수원시	5,307,743,220 (100.0)	1,384,754,300 (26.09)	1,218,149,560 (22.95)	777,291,150 (14.64)	1,927,550,720 (36.32)	- -
	경기 성남시	5,360,374,060 (100.0)	1,204,859,500 (22.48)	1,021,783,300 (19.06)	969,460,320 (18.09)	2,164,270,940 (40.38)	- -
	경기 용인시	5,798,409,600 (100.0)	1,165,267,590 (20.10)	852,346,620 (14.70)	663,495,420 (11.44)	3,117,299,970 (53.76)	- -
	경남 창원시	8,602,799,080 (100.0)	1,669,879,550 (19.41)	1,516,912,610 (17.63)	798,591,880 (9.28)	4,617,415,040 (53.67)	- -
	4개 도시	6,267,331,490 (100.0)	1,356,190,235 (21.64)	1,152,298,023 (18.39)	802,209,693 (12.80)	2,956,634,168 (47.18)	- -
2014	경기 고양시	9,566,914,590 (100.0)	1,253,048,930 (13.10)	1,245,196,660 (13.02)	722,697,020 (7.55)	1,808,127,090 (18.90)	4,537,907,550 (47.43)
	경기 수원시	34,732,131,660 (100.0)	1,449,248,220 (4.17)	1,248,186,800 (3.59)	824,776,460 (2.37)	2,137,794,320 (6.16)	29,072,125,860 (83.70)
	경기 성남시	32,696,750,900 (100.0)	1,239,070,580 (3.79)	1,086,258,630 (3.32)	1,081,361,550 (3.31)	2,329,514,970 (7.12)	26,960,545,170 (82.46)
	경기 용인시	25,989,764,910 (100.0)	1,207,588,030 (4.65)	903,327,940 (3.48)	738,001,710 (2.84)	2,698,370,310 (10.38)	20,442,476,920 (78.66)
	경남 창원시	35,091,788,370 (100.0)	1,663,142,970 (4.74)	1,526,542,540 (4.35)	809,052,300 (2.31)	4,849,092,490 (13.82)	26,243,958,070 (74.79)
	4개 도시	32,127,608,960 (100.0)	1,389,762,450 (4.33)	1,191,078,978 (3.71)	863,298,005 (2.69)	3,003,693,023 (9.35)	25,679,776,505 (79.93)
2015	경기 고양시	11,863,417,920 (100.0)	1,270,231,850 (10.71)	1,328,363,040 (11.20)	790,174,260 (6.66)	1,845,037,500 (15.55)	6,629,742,270 (55.88)
	경기 수원시	38,958,371,290 (100.0)	1,433,267,270 (3.68)	1,271,097,210 (3.26)	852,851,960 (2.19)	2,442,621,170 (6.27)	32,958,533,680 (84.60)

	경기 성남시	38,018,749,210 (100.0)	1,258,667,820 (2.89)	1,125,564,330 (2.71)	1,122,859,630 (2.76)	2,611,898,610 (6.04)	31,899,758,820 (85.60)
	경기 용인시	28,296,984,710 (100.0)	1,216,362,330 (4.30)	945,260,640 (3.34)	818,036,960 (2.89)	3,159,377,800 (11.17)	22,157,946,980 (78.30)
	경남 창원시	39,895,797,760 (100.0)	1,666,706,240 (4.18)	1,573,392,290 (3.94)	843,193,080 (2.11)	5,116,521,600 (12.82)	30,695,984,550 (76.94)
	4개 도시	36,292,475,743 (100.0)	1,393,750,915 (3.84)	1,228,828,618 (3.39)	909,235,408 (2.51)	3,332,604,795 (9.18)	29,428,056,008 (81.09)
2016	경기 고양시	13,919,141,480 (100.0)	1,306,637,560 (9.39)	1,399,297,210 (10.05)	838,612,830 (6.02)	1,978,457,130 (14.21)	8,396,136,750 (60.32)
	경기 수원시	42,848,879,460 (100.0)	3,762,210,190 (8.78)	1,352,593,230 (3.16)	906,934,540 (2.12)	2,555,297,230 (5.96)	34,271,844,270 (79.98)
	경기 성남시	43,845,448,340 (100.0)	1,266,578,650 (2.89)	1,187,024,870 (2.71)	1,212,242,200 (2.76)	2,647,284,700 (6.04)	37,532,317,920 (85.60)
	경기 용인시	33,069,063,620 (100.0)	3,118,629,750 (9.43)	1,050,146,730 (3.18)	832,047,360 (2.52)	3,207,963,670 (9.70)	24,860,276,110 (75.18)
	경남 창원시	43,921,985,370 (100.0)	3,476,363,610 (7.91)	1,608,000,610 (3.66)	851,591,530 (1.94)	5,094,427,080 (11.60)	32,891,674,640 (74.89)
	4개 도시	40,921,344,198 (100.0)	2,905,945,550 (7.10)	1,299,441,360 (3.18)	950,703,908 (2.32)	3,376,243,170 (8.25)	32,389,028,235 (79.15)
2017	경기 고양시	17,089,620,530 (100.0)	3,395,882,750 (19.87)	1,493,751,050 (8.74)	890,905,490 (5.21)	1,973,479,090 (11.55)	9,335,602,150 (54.63)
	경기 수원시	48,329,622,450 (100.0)	3,862,699,580 (7.99)	1,422,760,100 (2.94)	964,759,120 (2.00)	2,682,844,370 (5.55)	39,396,559,280 (81.52)
	경기 성남시	49,471,118,120 (100.0)	1,319,890,190 (2.67)	1,262,821,890 (2.55)	1,262,513,140 (2.55)	2,797,323,910 (5.65)	42,828,568,990 (86.57)
	경기 용인시	35,824,822,450 (100.0)	3,178,952,630 (8.87)	1,099,233,960 (3.07)	898,206,730 (2.51)	3,424,146,620 (9.56)	27,224,289,950 (75.99)

	경남 창원시	45,408,824,070 (100.0)	3,447,871,410 (7.59)	1,615,938,570 (3.56)	892,508,350 (1.97)	5,190,206,310 (11.43)	34,263,047,680 (75.45)
	4개 도시	44,758,596,773 (100.0)	2,952,353,453 (6.60)	1,350,188,630 (3.02)	1,004,496,835 (2.24)	3,523,630,303 (7.87)	35,928,116,475 (80.27)

자료 : 고양시 내부자료

3) 고양시의 특징

- 주민세 수입은 균등분(개인, 법인)과 재산분 그리고 종업원분으로 구성되므로 지역의 인구 및 사업소 개수와 규모, 실업률 등의 인구·경제적 요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경우 당해 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인구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됨
 - 5개 대도시 비교 분석결과 개인균등분 수입은 인구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고양시는 2018년 기준 수원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진 도시로서, 향후 제3기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인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주민세 개인균등분 수입은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개인사업소분의 경우 4개 도시 평균을 약간 상회하고 있음
 - 개인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소를 둔 개인에게 동일하게 부과되므로(50,000원) 동 규모 이상의 사업소가 다른 도시와 유사하거나 다소 많음을 알 수 있음
- 법인 균등분의 경우 지역 내에 사무소 내지 사업소를 둔 법인의 사업소별로 과세하되 자본금 내지 출자금 수준과 종업원 수에 따라 표준세율로 부과되므로 법인의 수 및 규모의 함수라 할 수 있음
- 재산분 역시 사업소 연면적에 비례하여 과세되므로 사업소의 규모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고양시의 경우 수원, 창원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사업체 수를 보유하고 있으나 법인 균등분과 재산분은 4개 도시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규모가 작은 법인이 많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음
- 주민세 수입의 가장 중요한 구성항목은 종업원분으로 4개 도시 평균 주민세 수입액의 80% 이상을 차지함
 - 그러나 고양시의 경우 그 구성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종업원분의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급여총액의 일정비율(5/1000)를 납부하게 되며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3,500만 원 이하일 경우 면세되므로 사업체의 규모에 큰 영향을 받게 됨
- 결론적으로 고양시 주민세 수입 증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종업원분 수입 증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규모 있는 법인의 유치를 위한 대책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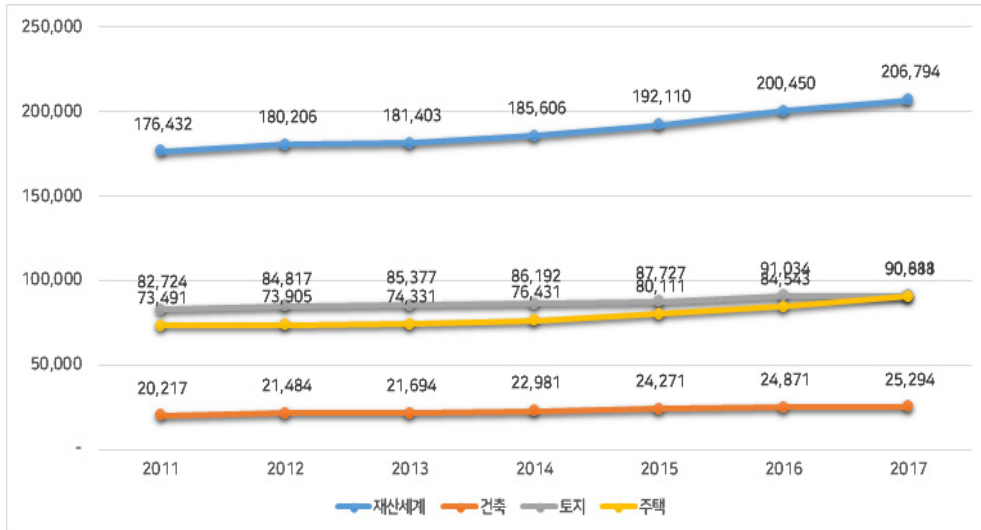
2. 재산세

1) 고양시 현황

- 2011년 고양시 재산세 수입은 1천 760억 수준에서 2017년 약 2천 68억으로 분석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재산세 토지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토지분은 2011년 827억 원 수준에서 2017년 909억 원으로 2011년 대비 2017년 약 9.86% 증가하였음
- 재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약 46.07%로 2012년까지 그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2013년 이후 약한 감소 추이를 보임
- 건축분은 2011년 202억 원 수준에서 2017년 약 253억으로 2011년 대비 2017년 25.11% 증가하였고, 주택분은 2011년 735억 수준에서 2017년 약 906억 원으로 23.1% 증가하였음
- 고양시 재산세 구성항목 비율은 토지분과 주택분이 분석기간 동안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연도별 추이를 보면 모든 항목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으나 토지분 항목은 소폭 감소하였으며 주택분은 소폭 증가하였음
- 2017년 기준 고양시 재산세 수입의 구성은 토지분(44%), 주택분(44%), 건축분(12%)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4-29]고양시 재산세 추이(2011-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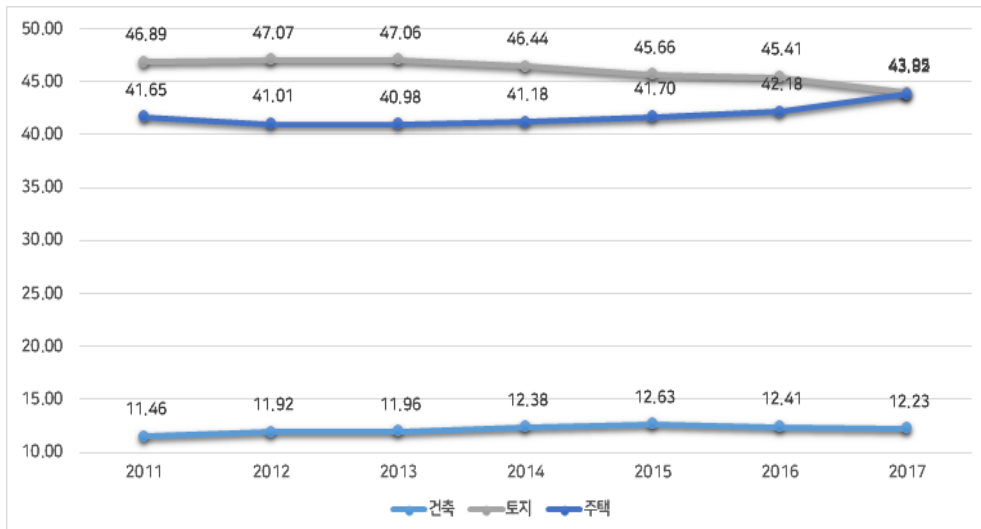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자료 : 고양시 내부자료

[그림4-30]고양시 재산세 구성항목 비율 추이(2011-2017년)

(단위: %)



자료 : 고양시 내부자료

[표4-3]고양시 재산세 연도별 구성항목 금액 및 비율(2011-2017년)

(단위: 원, %)

구분	재산세계	건축	선박	토지	주택
2011	176,431,932,350 (100.0)	20,217,014,730 (11.46)	231,820 (0.00)	82,723,887,820 (46.89)	73,490,791,030 (41.65)
2012	180,205,665,490 (100.0)	21,483,847,680 (11.92)	410,440 (0.00)	84,816,870,020 (47.07)	73,904,534,590 (41.01)
2013	181,402,925,150 (100.0)	21,694,176,810 (11.96)	340,260 (0.00)	85,376,980,410 (47.06)	74,331,424,970 (40.98)
2014	185,605,541,600 (100.0)	22,981,355,770 (12.38)	1,028,310 (0.00)	86,192,337,440 (46.44)	76,430,817,380 (41.18)
2015	192,109,850,320 (100.0)	24,270,672,200 (12.63)	1,599,050 (0.00)	87,726,893,160 (45.66)	80,110,683,210 (41.70)
2016	200,449,509,480 (100.0)	24,871,318,260 (12.41)	1,348,150 (0.00)	91,034,086,940 (45.41)	84,542,753,430 (42.18)
2017	206,794,174,170 (100.0)	25,293,710,620 (12.23)	1,416,360 (0.00)	90,880,818,790 (43.95)	90,618,225,700 (43.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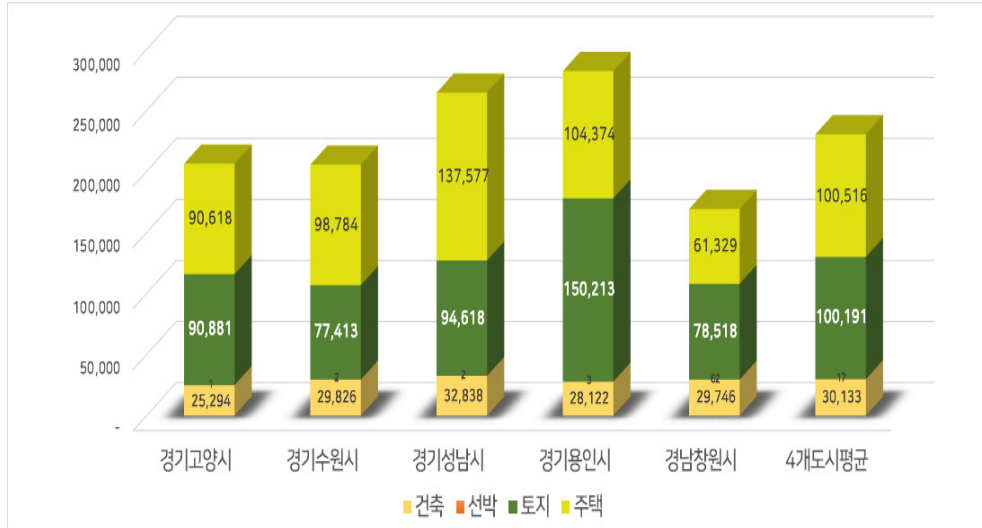
자료 : 고양시 내부자료

2) 5개 대도시 비교

- 2017년 기준 고양시 재산세 수입은 2천 67억 수준으로 용인시(2천 827억), 성남시(2천 650억) 다음으로 높음
- 고양시 토지분은 용인 및 성남시에 이어 3번째로 높은 909억 수준이나, 고양시를 제외한 4개 도시 평균(약 1천 2억)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고양시 건축분의 경우 경기 성남시(328억), 경기 수원시(298억), 경남 창원시(297억), 경기 용인시(281억) 중 가장 낮은 253억 수준으로 4개 도시 평균의 83% 수준임
- 주택분의 경우 성남이 약 1천 376억으로 가장 높고 경남 창원이 가장 낮은 613억 수준이며, 고양시는 약 906억 수준으로 4개 도시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그림4-31] 5개 대도시 재산세 수입(2017년 기준)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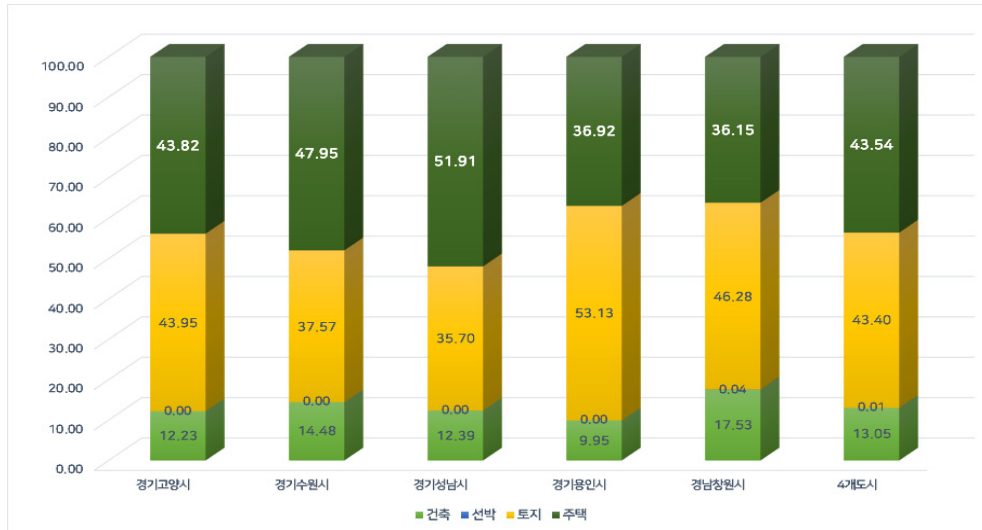


자료 : 고양시 내부자료

- 2017년 재산세 구성 비율은 4개 대도시 평균 기준 주택분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토지분, 건축분, 선박분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고양시 재산세 구성항목 비율은 토지분(43.95%), 주택분(43.82%), 건축분(12.23%)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주택분 비중은 성남시가 51.1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수원시(47.95%), 고양시(43.82%), 용인시(36.92%), 창원시(36.1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건축분 비중은 창원시(17.53%), 수원시(14.48%), 성남시(12.39%), 고양시(12.23%), 용인시(9.9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4개 대도시 평균과 고양시의 재산세 구성 비율은 유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음

[그림4-32] 5개 대도시 재산세 구성 비율(2017년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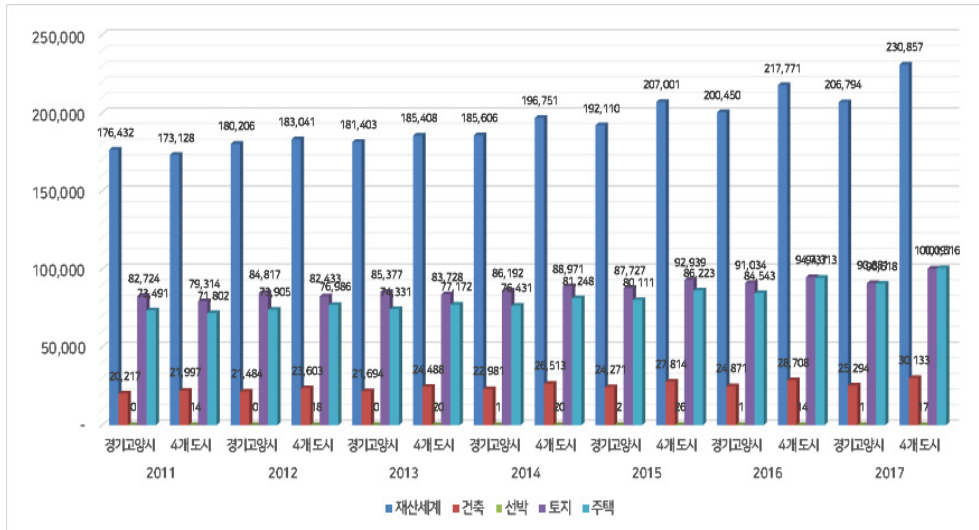


자료 : 고양시 내부자료

- 2014년에서 2017년 기간 동안 고양시와 4개 도시 평균 재산세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2011년 고양시의 재산세 총액은 1천 763억 원 수준이었으나 2017년에는 2011년 대비 17.21% 증가한 2천 60억 수준으로 나타남
- 2011년 4개 대도시 평균 재산세 총액은 1천 731억 원 수준이었으나 2017년에는 2011년 대비 33.34% 증가한 2천 308억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4-33] 재산세 세부항목 수입 추이(경기 고양시와 4개 도시 평균, 2011-2017년)

(단위: 백만원)



자료 : 고양시 내부자료

- 2011년의 경우 고양시 재산세 수입은 4개 도시 평균보다 약 33억 원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2년 이후 4개 도시 평균보다 낮은 신장률을 보임
- 2017년 고양시 재산세 수입은 4개 도시 평균의 89.58% 수준에 머물고 있음
- 2011년 고양시 건축분 수입은 202억 수준에서 2017년 대비 25.11% 증가한 253억으로 증가하였으며 토지분은 2011년 827억 수준에서 2017년 약 908억으로 2011년 대비 9.86% 증가 하였음
- 주택분의 경우 2011년 734억 수준에서 2017년 약 906억으로 2011년 대비 23.31% 증가하였음
- 4개 도시 평균 건축분 수입은 2011년 220억 수준에서 2017년 약 301억으로 2011년 대비 36.98% 증가하였음
- 토지분의 경우 2011년 793억 수준에서 2017년 약 1천억으로 2011년 대비 26.32% 증가하였음
- 주택분은 2011년 718억 수준에서 2017년 1천억에 이르고 있음

- 아래 [표4-4]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5개 대도시 재산세 구성항목에 따른 금액과 비율을 나타낸 것임

[표4-4]5개 대도시 재산세 구성항목 금액 및 비율(2011-2017년)

(단위: 원 %)

연도	구분	재산세계	건축	선박	토지	주택
2011	경기 고양시	176,431,932,350 (100.0)	20,217,014,730 (11.46)	231,820 (0.00)	82,723,887,820 (46.89)	73,490,791,030 (41.65)
	경기 수원시	140,599,400,170 (100.0)	20,576,764,750 (14.64)	247,420 (0.00)	61,115,998,330 (43.47)	58,906,389,670 (41.90)
	경기 성남시	207,742,250,700 (100.0)	23,865,470,350 (11.49)	154,220 (0.00)	77,350,275,850 (37.23)	106,526,350,280 (51.28)
	경기 용인시	231,131,430,260 (100.0)	20,591,692,020 (8.91)	270,980 (0.00)	127,113,155,710 (55.00)	83,426,311,550 (36.09)
	경남 창원시	113,037,156,900 (100.0)	22,955,836,530 (20.31)	55,205,490 (0.05)	51,678,054,730 (45.72)	38,348,060,150 (33.93)
	4개 도시	173,127,559,508 (100.0)	21,997,440,913 (12.71)	13,969,528 (0.01)	79,314,371,155 (45.81)	71,801,777,913 (41.47)
	2012	경기 고양시	180,205,665,490 (100.0)	21,483,847,680 (11.92)	410,440 (0.00)	84,816,870,020 (47.07)
경기 수원시		154,778,270,560 (100.0)	21,663,443,620 (14.00)	378,470 (0.00)	63,958,278,960 (41.32)	69,156,169,510 (44.68)
경기 성남시		218,024,349,100 (100.0)	26,704,365,970 (12.25)	205,630 (0.00)	80,753,483,610 (37.04)	110,566,293,890 (50.71)
경기 용인시		238,237,143,490 (100.0)	21,963,909,270 (9.22)	255,510 (0.00)	129,331,327,170 (54.29)	86,941,651,540 (36.49)
경남 창원시		121,123,267,270 (100.0)	24,081,858,120 (19.88)	71,372,390 (0.06)	55,689,075,630 (45.98)	41,280,961,130 (34.08)
4개 도시		183,040,757,605 (100.0)	23,603,394,245 (12.90)	18,053,000 (0.01)	82,433,041,343 (45.04)	76,986,269,018 (42.06)

2013	경기 고양시	181,402,925,150 (100.0)	21,694,176,810 (11.96)	340,260 (0.00)	85,376,980,410 (47.06)	74,331,424,970 (40.98)
	경기 수원시	163,817,145,280 (100.0)	22,954,897,460 (14.01)	408,080 (0.00)	65,798,278,290 (40.17)	75,063,561,450 (45.82)
	경기 성남시	212,097,929,060 (100.0)	27,384,400,710 (12.91)	376,030 (0.00)	78,290,834,060 (36.91)	106,422,318,260 (50.18)
	경기 용인시	237,561,132,960 (100.0)	22,776,967,380 (9.59)	506,120 (0.00)	131,309,634,950 (55.27)	83,474,024,510 (35.14)
	경남 창원시	128,156,588,760 (100.0)	24,836,984,770 (19.38)	78,410,920 (0.06)	59,513,948,540 (46.44)	43,727,244,530 (34.12)
	4개 도시	185,408,199,015 (100.0)	24,488,312,580 (13.21)	19,925,288 (0.01)	83,728,173,960 (45.16)	77,171,787,188 (41.62)
2014	경기 고양시	185,605,541,600 (100.0)	22,981,355,770 (12.38)	1,028,310 (0.00)	86,192,337,440 (46.44)	76,430,817,380 (41.18)
	경기 수원시	172,507,414,980 (100.0)	24,870,351,710 (14.42)	503,650 (0.00)	68,109,960,290 (39.48)	79,526,599,330 (46.10)
	경기 성남시	227,135,271,920 (100.0)	30,354,075,440 (13.36)	507,230 (0.00)	87,431,533,050 (38.49)	109,349,156,200 (48.14)
	경기 용인시	247,039,828,410 (100.0)	24,549,717,440 (9.94)	532,700 (0.00)	133,219,664,610 (53.93)	89,269,913,660 (36.14)
	경남 창원시	140,321,691,170 (100.0)	26,276,158,240 (18.73)	79,136,650 (0.06)	67,121,795,840 (47.83)	46,844,600,440 (33.38)
	4개 도시	196,751,051,620 (100.0)	26,512,575,708 (13.48)	20,170,058 (0.01)	88,970,738,448 (45.22)	81,247,567,408 (41.29)
2015	경기 고양시	192,109,850,320 (100.0)	24,270,672,200 (12.63)	1,599,050 (0.00)	87,726,893,160 (45.66)	80,110,683,210 (41.70)
	경기 수원시	185,282,668,030 (100.0)	27,092,693,450 (14.62)	1,964,150 (0.00)	73,426,210,700 (39.63)	84,761,799,730 (45.75)

	경기 성남시	238,335,136,680 (100.0)	31,281,244,390 (13.12)	865,230 (0.00)	91,678,180,490 (38.47)	115,374,846,570 (48.41)
	경기 용인시	255,539,516,700 (100.0)	25,905,643,350 (10.14)	711,190 (0.00)	136,646,805,780 (53.47)	92,986,356,380 (36.39)
	경남 창원시	148,847,432,070 (100.0)	26,976,263,930 (18.12)	98,629,690 (0.07)	70,003,679,520 (47.03)	51,768,858,930 (34.78)
	4개 도시	207,001,188,370 (100.0)	27,813,961,280 (13.44)	25,542,565 (0.01)	92,938,719,123 (44.90)	86,222,965,403 (41.65)
2016	경기 고양시	200,449,509,480 (100.0)	24,871,318,260 (12.41)	1,348,150 (0.00)	91,034,086,940 (45.41)	84,542,753,430 (42.18)
	경기 수원시	193,251,945,920 (100.0)	28,029,598,180 (14.50)	2,036,840 (0.00)	73,661,102,050 (38.12)	91,559,208,850 (47.38)
	경기 성남시	252,645,707,920 (100.0)	32,062,344,300 (12.69)	1,134,100 (0.00)	90,910,398,630 (35.98)	129,671,830,890 (51.33)
	경기 용인시	268,074,295,560 (100.0)	26,544,329,590 (9.90)	1,533,340 (0.00)	142,232,879,850 (53.06)	99,295,552,780 (37.04)
	경남 창원시	157,112,550,850 (100.0)	28,194,232,690 (17.95)	52,824,550 (0.03)	72,141,898,380 (45.92)	56,723,595,230 (36.10)
	4개 도시	217,771,125,063 (100.0)	28,707,626,190 (13.18)	14,382,208 (0.01)	94,736,569,728 (43.50)	94,312,546,938 (43.31)
2017	경기 고양시	206,794,174,170 (100.0)	25,293,710,620 (12.23)	1,416,360 (0.00)	90,880,818,790 (43.95)	90,618,225,700 (43.82)
	경기 수원시	206,026,027,650 (100.0)	29,826,363,440 (14.48)	2,312,270 (0.00)	77,413,235,010 (37.57)	98,784,116,930 (47.95)
	경기 성남시	265,034,721,280 (100.0)	32,837,989,480 (12.39)	2,049,900 (0.00)	94,618,003,200 (35.70)	137,576,678,700 (51.91)
	경기 용인시	282,711,194,930 (100.0)	28,121,649,860 (9.95)	2,705,240 (0.00)	150,213,322,050 (53.13)	104,373,517,780 (36.92)

	경남 창원시	169,655,254,420 (100.0)	29,746,195,950 (17.53)	61,960,930 (0.04)	78,517,725,270 (46.28)	61,329,372,270 (36.15)
	4개 도시	230,856,799,570 (100.0)	30,133,049,683 (13.05)	17,257,085 (0.01)	100,190,571,383 (43.40)	100,515,921,420 (43.54)

자료 : 고양시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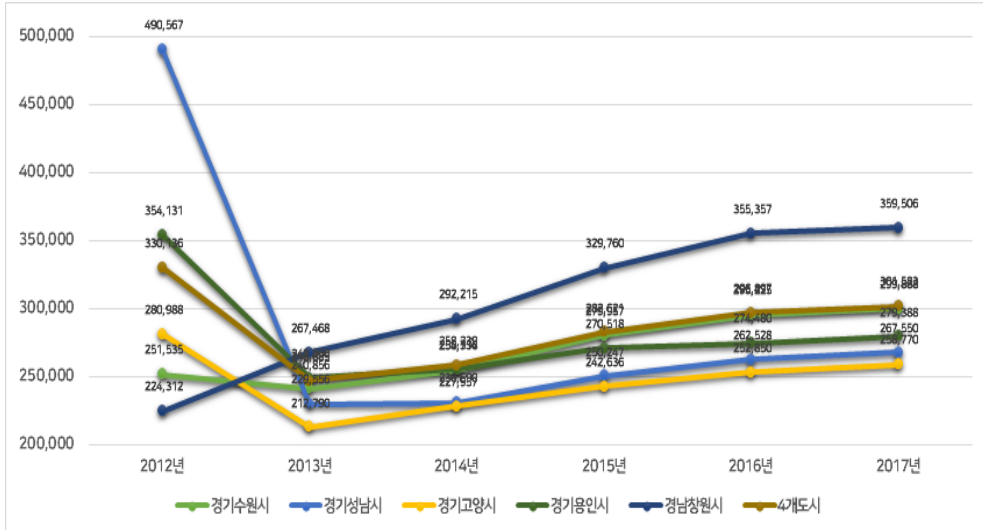
3) 고양시의 특징

- 2017년 기준 고양시 재산세 구성항목별 수입액은 4개 도시 평균에 다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용인, 성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분 및 토지분 수입이 크게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관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되고 있음
- 시가표준액의 경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 [개별공시지가, 개별(단독)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¹⁵⁾으로 설정되므로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단독)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에 따라 변동하게 됨
- 시가표준액은 지역의 투자가치 및 정주환경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재산세액은 사실상 과표에 의해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과표설정 상의 문제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만약 비교표준지가 지역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할 경우 재산세 수입 역시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음

¹⁵⁾ 토지의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되며 정부는 매년 1월 1일 국가의 전체 필지 중 대표성이 인정되는 50만 필지의 표준지를 선정하고 그 가격을 표준지공시지가로 공시함. '개별공시지가'는 국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사군구별로 산정하여 공시한 가격임. 개별공시지가는 조사대상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동 토지와 비교 가능한 비교표준지를 선택하여 토지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함. 단독주택의 체계도 이와 유사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표준 호를 기준으로, 표준 호의 가격에 층 위치별 효용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음. 토지의 시가표준액인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단독주택의 시가표준액인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과 '주택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그러나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통계학적 평가모형인 '비준표'를 사용하여 일시에 산정하므로 개별 물건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임재만, 2015).

[그림4-34] 5개 대도시 아파트 가격 추이(2012-2017년)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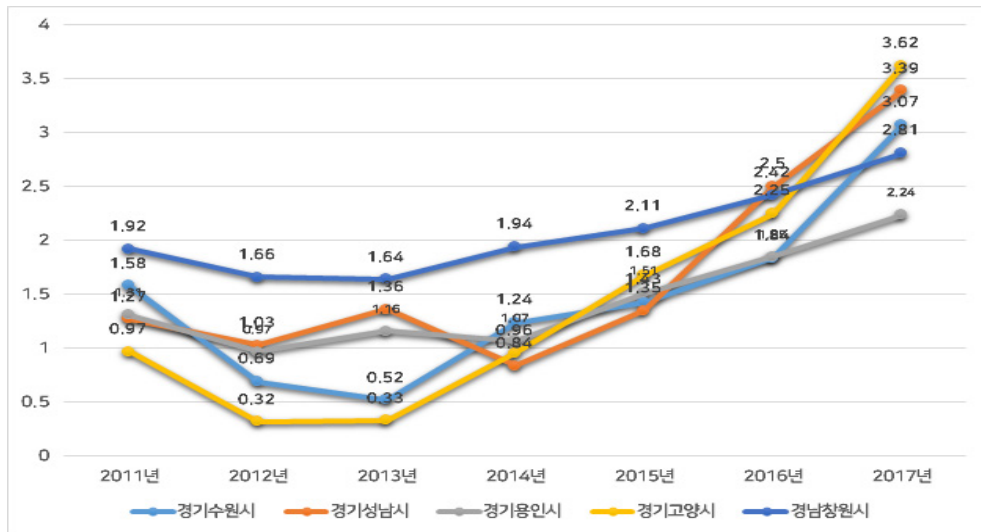


자료 : 한국감정원,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시도/시/군/구)”,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각 년도

- 개별 및 표준 공시지가는 지역별로 다기하게 산재되어 있어 평균 지가 도출이 용이하지 않으며 국가통계 역시 자치단체별로 지가상승률 데이터만 제시하고 있음
- 이에 지역의 토지 가치 추정을 위한 대리변수로 평균 아파트 가격을 살펴보기로 함
- [그림4-34]는 5개 대도시 평균 아파트 가격을 나타내며 5개 대도시 모두 2013년 이후 아파트 가격은 상승하는 추세임
- 2013년 이후 고양시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5개 대도시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나 2013년 대비 2017년 22% 상승하여 성남(17%), 용인(1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음

[그림4-35] 5개 대도시 지가변동률 추이(2011-2017년)

(단위: %)



자료 : 한국감정원 “지가변동률(시도/시/군/구)”, 『전국지가변동률조사』, 각 년도

- 고양시 지가 상승률 역시 2015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여 2017년 기준 5개 대도시에서 가장 높은 3.62%의 상승률을 기록하였음
- 기존 고양시의 저평가된 지가 및 향후 신도시 개발 수요 등을 고려할 때 고양시의 투자 가치 및 지가 상승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이를 통해 볼 때 고양시의 낮은 재산세 수입이 비교표준지 설정의 비적절성에 있을 경우 이를 교정함으로써 재산세 수입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고양시 비교표준지가 지역의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정부의 과표 결정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 역시 필요할 것임¹⁶⁾

16)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그리고 공동주택가격의 사실상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며, 공정시장가액비율 결정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는 아무런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과표 결정권 및 조정 권한은 매우 제한적임(박상수·유보람,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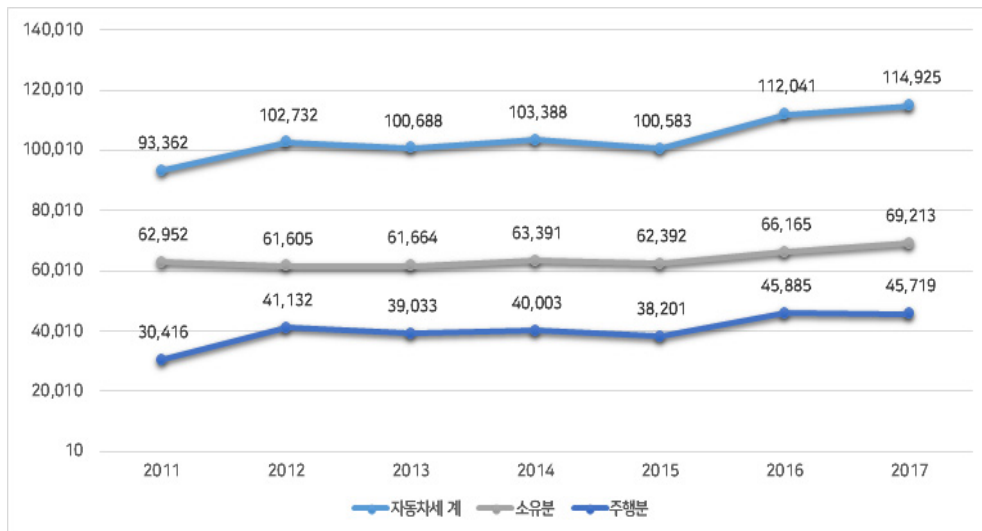
3. 자동차세

1) 고양시 현황

- 2011년 고양시 자동차세 수입은 933억 수준에서 2017년 1천 149억으로 2011년 대비 23.1% 증가함
- 소유분은 자동차세 수입의 평균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유사한 추세를 보임
- 주행분은 자동차세의 평균 38.4%를 차지하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유사한 추이를 보임

[그림4-36]고양시 자동차세 세부항목 추이(2011-2017년)

(단위: 백만원)



출처 : 고양시 내부자료

- 고양시 자동차세 수입에서 소유분과 주행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소유분 평균 61.61%, 주행분 평균 38.40%로 약 6:4의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4-5]고양시 자동차세 연도별 구성항목 금액 및 비율(2011-2017년)

(단위: 원, %)

구분	자동차세계	소유분	주행분
2011	93,362,178,550 (100.0)	62,952,452,860 (67.43)	30,415,784,450 (32.58)
2012	102,731,941,540 (100.0)	61,605,172,680 (59.97)	41,132,032,460 (40.04)
2013	100,687,582,480 (100.0)	61,663,999,250 (61.24)	39,032,567,090 (38.77)
2014	103,387,552,550 (100.0)	63,390,574,750 (61.31)	40,003,359,590 (38.69)
2015	100,583,489,380 (100.0)	62,391,542,050 (62.03)	38,201,327,850 (37.98)
2016	112,041,196,690 (100.0)	66,164,686,520 (59.05)	45,884,699,190 (40.95)
2017	114,925,422,890 (100.0)	69,213,343,210 (60.22)	45,718,721,700 (39.78)

출처 : 고양시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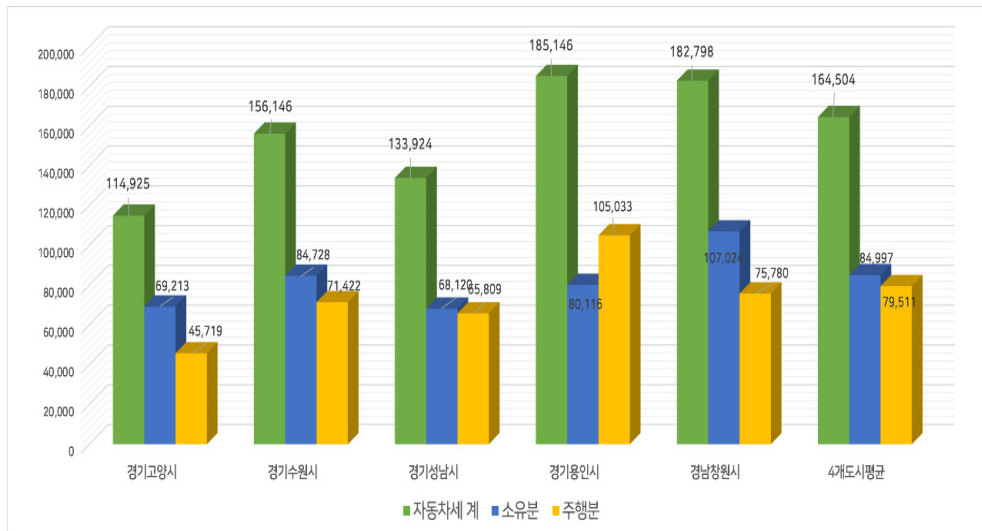
2) 5개 대도시 비교

- 2017년 기준 자동차세 수입은 용인시(1천 851억), 창원시(1천 827억), 수원시(1천 561억), 성남시(1천 339억) 고양시(1천 149억)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고양시 자동차세 수입은 용인시의 62.07%, 4개 도시 평균의 69.86% 수준임
- 소유분의 경우 창원시가 1천 70억으로 가장 높고, 이어 수원시 847억, 용인시 801억, 고양시 692억, 성남시 681억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주행분은 용인시 1천 50억, 창원시 757억, 수원시 714억, 성남시 658억 등이며 고양

시 주행분 수입은 이 중 가장 낮은 457억 수준으로 4개 대도시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4-37] 5개 대도시 자동차세 수입(2017년 기준)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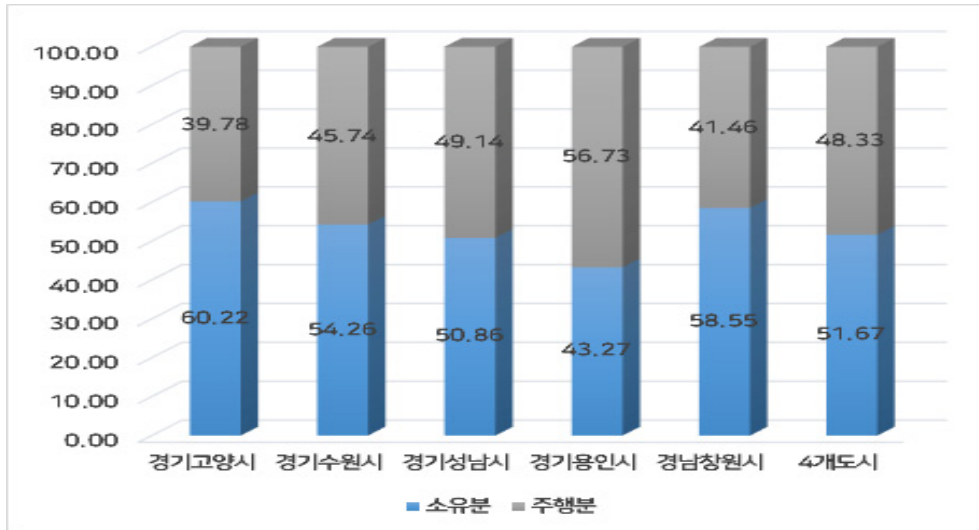


출처 : 고양시 내부자료

- 2017년 자동차세 구성항목 비중은 모든 대도시에서 주행분이 소유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전체 자동차세 수입 중 소유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경기 고양시가 60.22%로 가장 높고, 이후 창원시(58.55%), 수원시(54.26%), 성남시(50.86%), 용인시(43.27%)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주행분의 비중은 용인시(56.73%), 성남시(49.14%), 수원시(45.74%), 창원시(41.46%), 고양시(39.78%)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4-38] 5개 대도시 자동차세 구성 비율(2017년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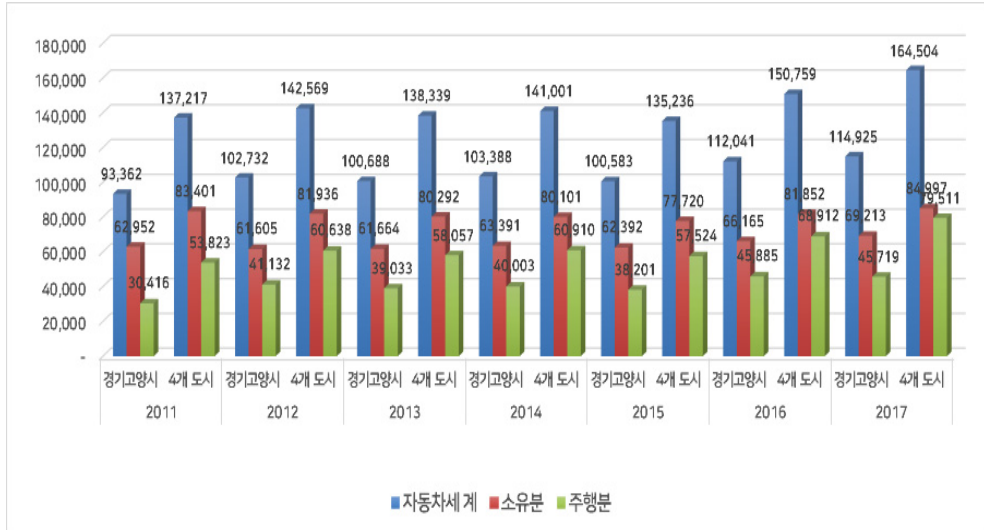


출처 : 고양시 내부자료

- 2014년에서 2017년의 기간 동안 고양시와 4개 대도시 평균 자동차세 수입은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2011년 대비 2017년 자동차세 수입은 증가하였음
- 2011년 고양시 자동차세 수입은 933억에서 2017년 1천 114억으로 2011년 대비 2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4개 대도시 평균 기준 2011년 자동차세 수입은 1천 372억 수준에서 2017년 1천 645억으로 2011년 대비 19.89% 증가함
- 소유분 수입은 고양시의 경우 2011년 629억에서 2017년 692억으로 2011년 대비 9.95% 증가하였고, 4개 대도시 평균 소유분 수입액은 2011년 834억에서 2017년 849억으로 2011년 대비 1.91% 소폭 증가함
- 주행분은 2011년 대비 2017년 큰 폭의 증가율을 보임
- 고양시의 주행분은 2011년 304억에서 2017년 457억으로 2011년 대비 50.31% 증가하였고 4개 대도시 평균 주행분은 2011년 538억에서 2017년 795억으로 2011년 대비 47.73% 증가하였음

[그림4-39]자동차세 세부항목 수입 추이(경기 고양시와 4개 도시 평균, 2011-2017년)

(단위: 원)



출처 : 고양시 내부자료

- 아래 [표4-6]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5개 대도시 자동차세 구성항목에 따른 금액과 비율을 나타낸 것임

[표4-6]5개 대도시 자동차세 구성항목 금액 및 비율(2011-2017년)

(단위: 천원, %)

연도	구분	자동차세계	소유분	주행분
2011	경기 고양시	93,362,178,550 (100.0)	62,952,452,860 (67.43)	30,415,784,450 (32.58)
	경기 수원시	126,055,891,020 (100.0)	69,647,406,380 (55.25)	56,415,542,220 (44.75)
	경기 성남시	105,493,816,970 (100.0)	65,470,117,550 (62.06)	40,032,209,230 (37.95)
	경기 용인시	129,481,037,500 (100.0)	71,325,836,390 (55.09)	58,162,906,080 (44.92)
	경남 창원시	187,837,514,960 (100.0)	127,160,357,960 (67.70)	60,681,651,710 (32.31)
	4개 도시	137,217,065,113 (100.0)	83,400,929,570 (60.78)	53,823,077,310 (39.22)

2012	경기 고양시	102,731,941,540 (100.0)	61,605,172,680 (59.97)	41,132,032,460 (40.04)
	경기 수원시	126,592,528,340 (100.0)	70,147,052,560 (55.41)	56,450,414,100 (44.59)
	경기 성남시	116,719,082,270 (100.0)	63,559,729,300 (54.46)	53,167,185,190 (45.55)
	경기 용인시	132,251,301,150 (100.0)	70,932,172,570 (53.63)	61,324,409,420 (46.37)
	경남 창원시	194,712,388,110 (100.0)	123,105,062,630 (63.22)	71,610,115,770 (36.78)
	4개 도시	142,568,824,968 (100.0)	81,936,004,265 (57.47)	60,638,031,120 (42.53)
	2013	경기 고양시	100,687,582,480 (100.0)	61,663,999,250 (61.24)
경기 수원시		129,588,734,360 (100.0)	72,575,723,500 (56.00)	57,023,877,190 (44.00)
경기 성남시		114,181,168,040 (100.0)	63,554,217,100 (55.66)	50,639,392,800 (44.35)
경기 용인시		125,534,926,930 (100.0)	71,780,045,230 (57.18)	53,766,161,940 (42.83)
경남 창원시		184,052,927,180 (100.0)	113,258,204,810 (61.54)	70,799,754,110 (38.47)
4개 도시		138,339,439,128 (100.0)	80,292,047,660 (58.04)	58,057,296,510 (41.97)
2014		경기 고양시	103,387,552,550 (100.0)	63,390,574,750 (61.31)
	경기 수원시	133,870,932,640 (100.0)	76,112,916,600 (56.86)	57,770,281,730 (43.15)
	경기 성남시	112,770,173,370 (100.0)	64,796,729,100 (57.46)	47,985,595,330 (42.55)
	경기 용인시	139,533,967,820 (100.0)	74,244,574,370 (53.21)	65,298,320,100 (46.80)
	경남 창원시	177,829,402,800 (100.0)	105,248,208,680 (59.18)	72,586,378,600 (40.82)
	4개 도시	141,001,119,158 (100.0)	80,100,607,188 (56.81)	60,910,143,940 (43.20)
	2015	경기 고양시	100,583,489,380 (100.0)	62,391,542,050 (62.03)
경기 수원시		136,594,614,780 (100.0)	75,175,578,730 (55.04)	61,427,110,920 (44.97)

	경기 성남시	114,841,993,140 (100.0)	63,228,988,800 (55.06)	51,620,616,640 (44.95)
	경기 용인시	126,540,855,420 (100.0)	73,180,526,220 (57.83)	53,368,576,820 (42.17)
	경남 창원시	162,965,918,470 (100.0)	99,293,036,740 (60.93)	63,678,975,150 (39.08)
	4개 도시	135,235,845,453 (100.0)	77,719,532,623 (57.47)	57,523,819,883 (42.54)
2016	경기 고양시	112,041,196,690 (100.0)	66,164,686,520 (59.05)	45,884,699,190 (40.95)
	경기 수원시	149,293,504,170 (100.0)	80,068,399,780 (53.63)	69,233,393,400 (46.37)
	경기 성남시	119,475,257,830 (100.0)	65,707,857,310 (55.00)	53,772,836,090 (45.01)
	경기 용인시	151,050,061,300 (100.0)	76,709,440,960 (50.78)	74,345,624,720 (49.22)
	경남 창원시	183,215,330,840 (100.0)	104,923,913,470 (57.27)	78,295,923,020 (42.73)
	4개 도시	150,758,538,535 (100.0)	81,852,402,880 (54.29)	68,911,944,308 (45.71)
2017	경기 고양시	114,925,422,890 (100.0)	69,213,343,210 (60.22)	45,718,721,700 (39.78)
	경기 수원시	156,146,256,680 (100.0)	84,728,307,570 (54.26)	71,421,838,810 (45.74)
	경기 성남시	133,923,657,100 (100.0)	68,119,947,020 (50.86)	65,808,653,320 (49.14)
	경기 용인시	185,145,648,530 (100.0)	80,116,100,550 (43.27)	105,033,280,010 (56.73)
	경남 창원시	182,798,482,150 (100.0)	107,024,078,020 (58.55)	75,780,450,390 (41.46)
	4개 도시	164,503,511,115 (100.0)	84,997,108,290 (51.67)	79,511,055,633 (48.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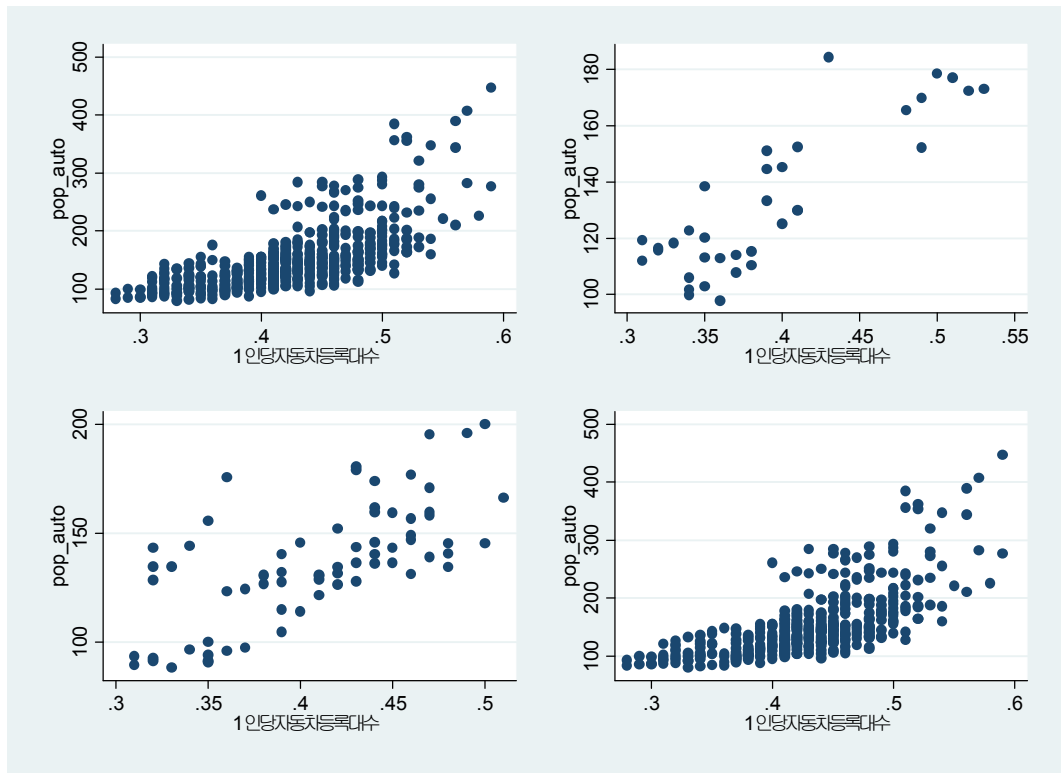
출처 : 고양시 내부자료

3) 고양시의 특징

- 고양시의 자동차세 수입은 4개 대도시에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자동차세 소유분은 4개 대도시 평균의 약 81%, 주행분은 57%로 나타나고 있음

- 자동차세 소유분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에 부과되며 자동차세 주행분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소유분 자동차세 징수액과 유류세 보조금을 기준으로 안분됨
- 따라서 자동차세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라 할 수 있으며 등록 자동차의 유형[승용(배기량), 승합, 화물, 영업, 비영업용 등] 역시 자동차세 수입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아래의 [그림4-40]은 도시규모에 따른 1인당 자동차세 수입과 지역의 1인당 등록 자동차 대수와의 산포를 나타낸 것이며 [표4-7]은 양자 간 상관관계를 나타냄

[그림4-40]자동차세 수입과 1인당 자동차 대수의 상관관계



주) 1. 시전체(좌상단), 2. 100만이상(우상단) 3. 50만~ 100만(좌하단) 4. 50만 이하(우하단)

[표4-7]도시규모별 1인당 자동차세 수입과 1인당 등록 자동차 대수의 상관관계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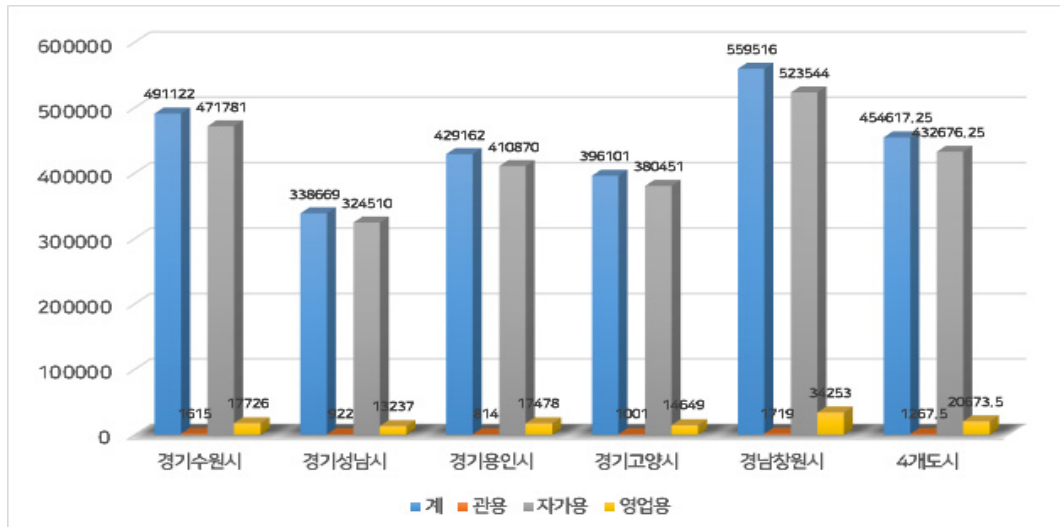
구분	인구 100만 이상	인구 50만~ 100만	인구 50만 이하
상관계수	0.8546	0.6834	0.6746

주1.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상관분석 결과 1인당 자동차세 수입은 1인당 등록 자동차 대수와 비례관계가 있으며 특히 100만 이상 대도시에서 매우 큰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
- 2017년 기준 고양시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5개 대도시 중 4번째 수준으로 상관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자동차 소유분 수입 역시 4번째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고양시의 주행분 수입은 고양시보다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적은 성남시보다 190억 가량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주행분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소유분 자동차세 징수액과 유류세 보조금을 기준으로 안분되므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대수 및 동 자동차의 배기량 차이 그리고 지역의 유류세 보조금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그림4-41]5개 대도시 자동차 등록대수(2017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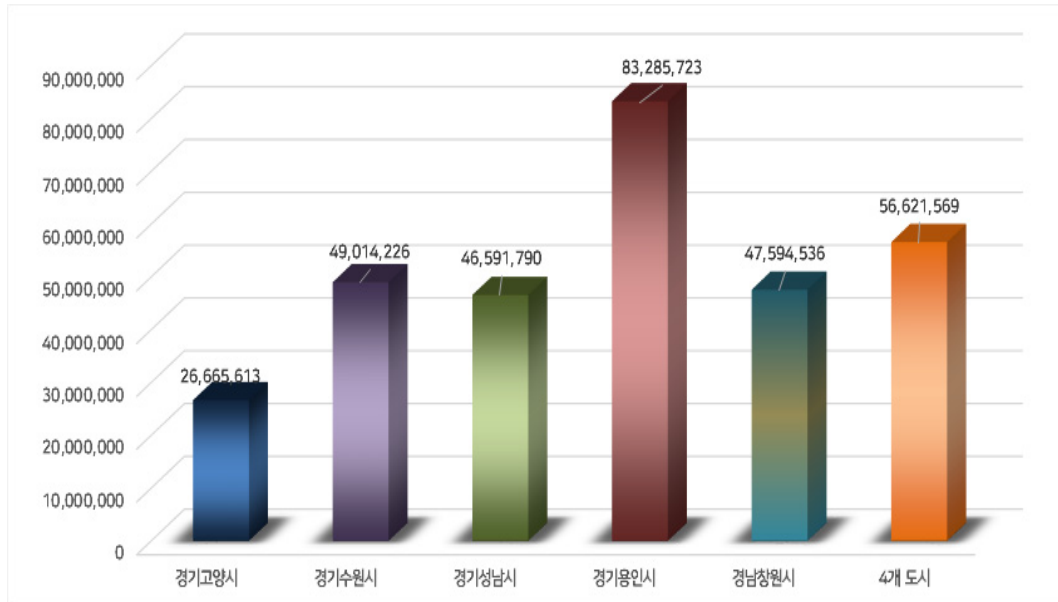
(단위: 대)



출처: 경기도. "통계연보", 2017

[그림4-42] 5개 대도시 유류보조금(2017년 기준)

(단위: 천원)



출처 : 고양시 내부자료

- 2017년 기준 고양시 등록 자동차 대수는 성남시에 비해 약 5만 7000여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성남시 유류보조금은 고양시에 비해 약 200억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를 통해 볼 때 성남시와 고양시의 주행분 수입 차이의 대부분은 유류보조금액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등록 자동차 대수 차이를 감안할 때 고양시 대비 성남시에 배기량이 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비율이 높고 유류 보조금 대상 차량(운송 및 교통체계 등에 따른)이 상대적으로 많을 가능성이 있음

4. 담배소비세

1) 고양시 현황

- 고양시 담배소비세 수입은 2011년 426억 수준에서 2017년 580억으로 증가하였으며 2013년과 2017년의 경우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음

[표4-8]고양시 담배소비세 연도별 구성항목 금액 및 증가율(2011-2017년)

(단위: 원, %)

구분	담배소비세계	증가율
2011	42,693,551,350	-
2012	45,718,365,820	7.08
2013	43,607,096,480	-4.62
2014	46,286,047,400	6.14
2015	47,263,110,710	2.11
2016	59,631,345,400	26.17
2017	58,092,499,420	-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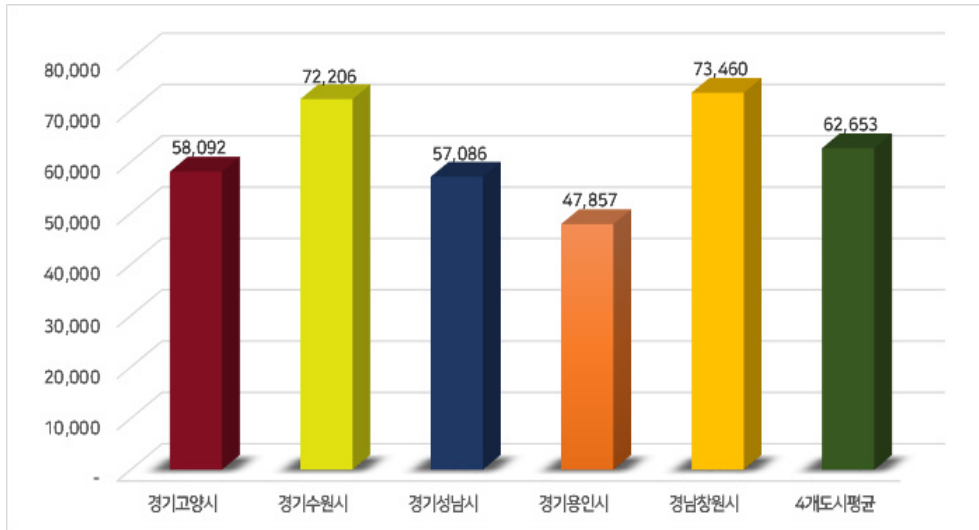
출처 : 고양시 내부자료

2) 5개 대도시 비교

- 2017년 기준 고양시 담배소비세 수입은 580억 원 수준으로 창원시(734억), 수원시(722억)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
- 그러나 담배소비세가 지방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창원(창원 9.91%)과 수원(8.4%)이 고양시보다 낮음
- 이러한 세입 비중과 수입액의 차이는 고양시 지방세 수입이 다른 대도시에 비해 낮기 때문임

[그림4-43] 5개 대도시 담배소비세 수입(2017년 기준)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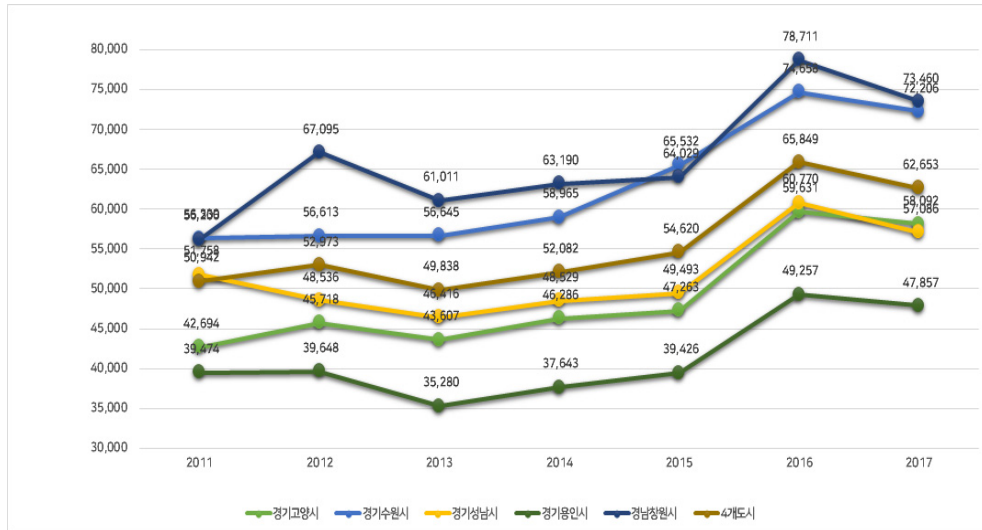


출처 : 고양시 내부자료

- 고양시 담배소비세 수입은 2011년 426억에서 2017년 580억으로 2011년 대비 약 27.07% 증가하였으며 4개 도시 평균의 경우 2011년 509억에서 2017년 626억으로 2011년 대비 약 18.27% 증가하였음
- 2016년에는 고양시를 포함한 5개 대도시의 담배소비세 수입은 전년 대비 평균 21.88% 증가하였고, 2017년에는 모든 대도시에서 소폭 감소하였음

[그림4-44] 5개 대도시 담배소비세 추이(2011-2017년)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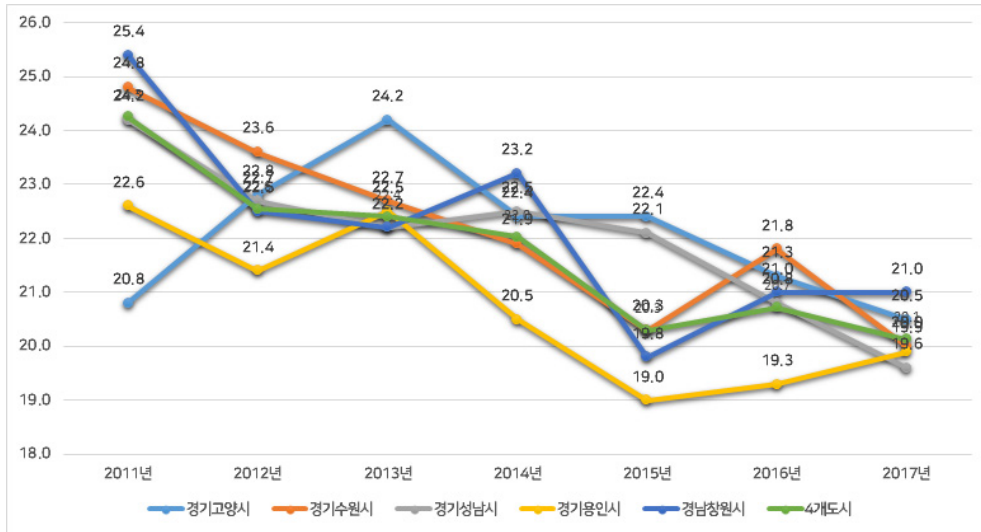


출처 : 고양시 내부자료

- 고양시 담배소비세 수입은 2011년 426억에서 2017년 580억으로 2011년 대비 약 27.07% 증가하였으며 4개 도시 평균의 경우 2011년 509억에서 2017년 626억으로 2011년 대비 약 18.27% 증가하였음
- 2016년에는 고양시를 포함한 5개 대도시의 담배소비세 수입은 전년 대비 평균 21.88% 증가하였고, 2017년에는 모든 대도시에서 소폭 감소하였음

[그림4-45] 5개 대도시 흡연율(2011-2017년)

(단위: %)



출처 : 보건복지부. “흡연율(시도/시/군/구)”, 『지역사회건강조사』, 각 년도

- 그러나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흡연율과 담배소비세는 특별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특징이 있음
- 이를 통해 볼 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담배소비세 수입은 흡연율 외에 다른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표4-9] 도시규모별 담배소비세 수입과 흡연율과의 상관관계

도시규모	인구 100만 이상	인구 50만~ 100만	인구 50만 이하
상관계수	-0.1047	-0.0859	0.1114***

주) 인구 50만 이하의 도시의 경우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나머지 지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담배제조 및 국내반입의 경우가 아닌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지는 담배가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이므로 담배소비세 수입은 흡연자들의 개인적 특징(흡연량 등), 대도시 지역 유동인구의 크기 등 흡연율 이외의 요인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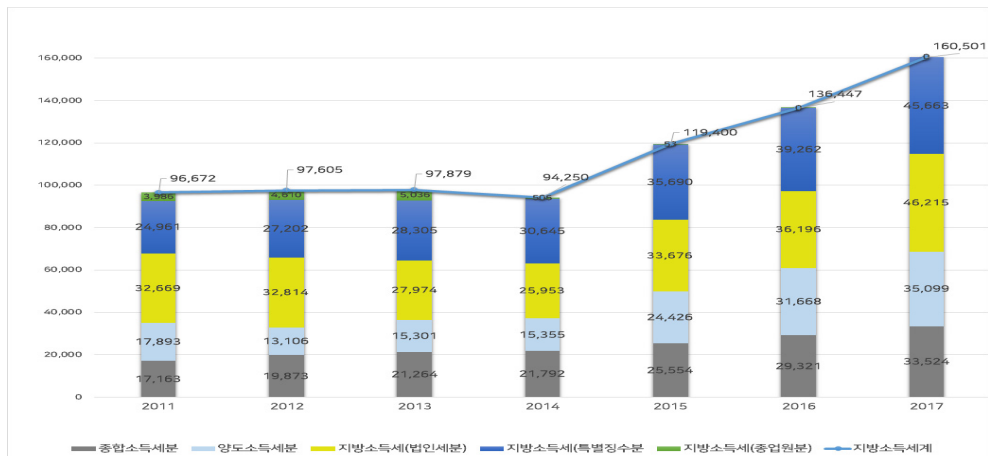
5. 지방소득세

1) 고양시 현황

- 고양시 지방소득세는 2011년 966억 수준에서 2017년 1천 605억으로 증가하였으며 구성항목 중 법인세분과 특별징수분의 비중이 50% 이상으로 나타남
- 법인세분은 2011년 326억 수준에서 2017년 462억으로 2011년 대비 42% 증가하였으며 특별징수분은 2017년 456억으로 2011년 대비 83% 증가하였음
- 종합소득세분은 2011년 171억 수준에서 2017년 335억으로 증가하였으며 양도소득세분은 178억 수준에서 350억으로 증가하였음
- 종업원분은 2011년 40억에서 2013년 50억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2014년 주민세에 편입되었음
- 지방소득세 수입은 종업원분이 주민세에 편입된 2014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

[그림4-46]고양시 지방소득세계 및 세부항목 추이(2011-2017년)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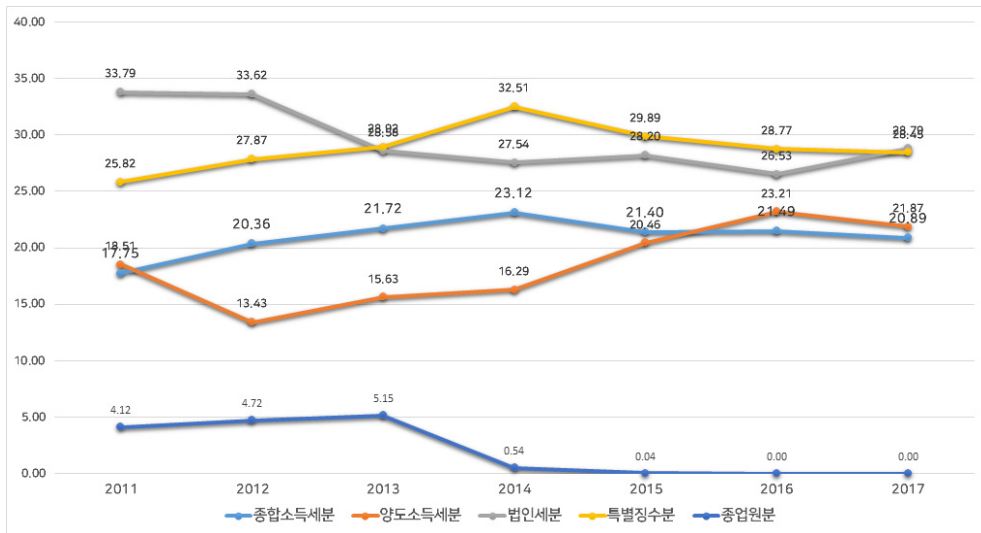


출처 : 고양시 내부자료

- 고양시 지방소득세 수입 구성은 평균적으로 법인세분(29.58%), 특별징수분 (28.89%), 종합소득세분(20.96%), 양도소득세분(18.49%) 순으로 나타남
- 종합소득세분과 특별징수분 비중은 2014년까지 증가한 이후 소폭 감소 추세로 전환 되었으며, 법인세분의 비중은 2016년까지 감소 추이를 보였으나 2017년 소폭 상승 하였음
- 양도소득세의 비중은 2016년 이후 종합소득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4-47]고양시 지방소득세 구성항목 비율(2011-2017년)

(단위: %)



출처 : 고양시 내부자료

[표4-10]고양시 지방소득세 연도별 구성항목 금액 및 비율(2011-2017년)

(단위: 천원, %)

구분	지방소득세계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법인세분	특별징수분	종업원분
2011	96,672,096,990 (100.0)	17,162,714,530 (17.75)	17,893,168,850 (18.51)	32,669,451,670 (33.79)	24,960,997,380 (25.82)	3,985,764,560 (4.12)
2012	97,605,187,180 (100.0)	19,872,975,730 (20.36)	13,106,224,230 (13.43)	32,813,535,880 (33.62)	27,202,428,030 (27.87)	4,610,023,310 (4.72)
2013	97,879,432,040 (100.0)	21,264,176,590 (21.72)	15,300,740,240 (15.63)	27,973,801,620 (28.58)	28,304,666,480 (28.92)	5,036,047,110 (5.15)
2014	94,249,775,810 (100.0)	21,791,502,520 (23.12)	15,355,035,120 (16.29)	25,953,403,250 (27.54)	30,644,519,540 (32.51)	505,315,380 (0.54)
2015	119,400,319,020 (100.0)	25,553,921,890 (21.40)	24,426,493,140 (20.46)	33,675,953,610 (28.20)	35,690,485,010 (29.89)	53,465,370 (0.04)
2016	136,447,253,340 (100.0)	29,320,748,200 (21.49)	31,668,285,970 (23.21)	36,195,906,370 (26.53)	39,261,988,680 (28.77)	324,120 (0.00)
2017	160,500,576,730 (100.0)	33,523,718,400 (20.89)	35,098,849,220 (21.87)	46,215,197,510 (28.79)	45,662,811,600 (28.45)	- (0.00)

출처 : 고양시 내부자료

2) 5개 대도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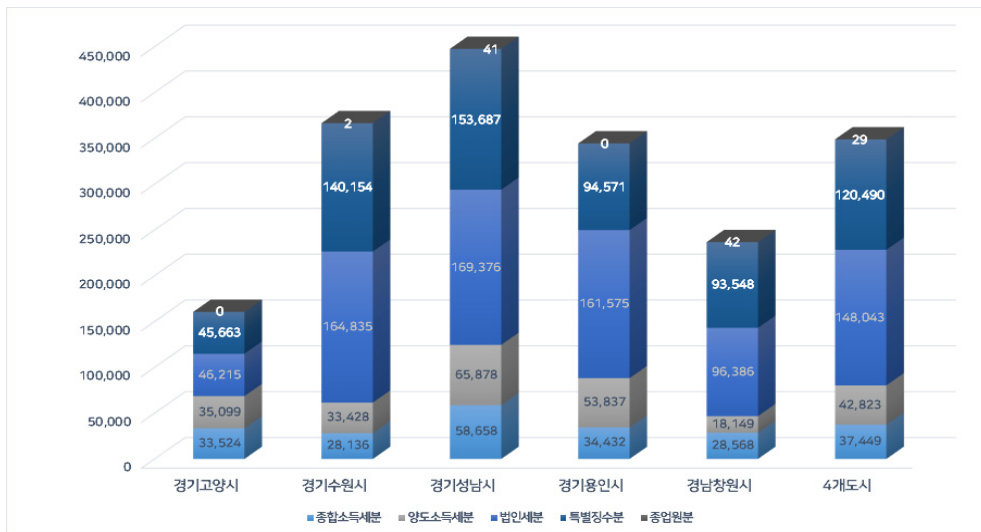
- 2017년 기준 고양시 지방소득세 수입은 1천 605억 원 수준으로 5개 대도시 중 가장 낮음
- 5개 대도시 지방소득세 수입은 성남시(4천 476억), 수원시(3천 665억), 용인시(3천 444억), 창원시(2천 366억), 고양시(1천 605억) 순으로 나타남
- 고양시 지방소득세 수입은 성남시의 35.85% 수준으로 4개 대도시 평균의 46%에 불과함
- 종합소득세분은 고양시가 성남시(586억), 용인시(344억) 다음으로 높은 335억 수준이며 양도소득세분 역시 성남시(658억), 용인시(538억) 다음으로 높은 351억으로 집계됨
- 법인세분은 성남시(1천 693억), 수원시(1천 648억), 용인시(1천 615억), 창원시

(963억)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양시는 462억으로 성남시(1천 693억)의 27.29% 수준임

- 특별징수분 수입 역시 성남시(1천 536억), 수원시(1천 401억), 용인시(945억), 창원시(935억)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고양시는 성남시(1천 536억)의 29.71%에 불과한 456억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4-48] 5개 대도시 지방소득세 수입(2017년 기준)

(단위: 백만원)



출처 : 고양시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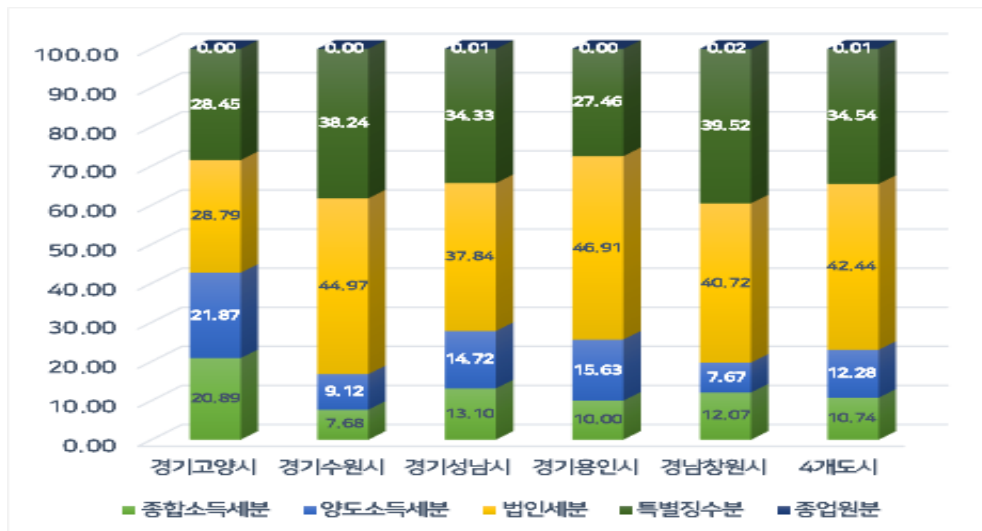
- 4개 대도시 평균기준 지방소득세 구성항목의 비중은 법인세분, 특별징수분, 양도소득세분, 종합소득세분 순으로 나타남
- 고양시 지방소득세 구성항목은 법인세분이 28.7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후 특별징수분(28.45%), 양도소득세분(21.87%), 종합소득세분(20.89%) 순으로 나타남
- 종합소득세분의 비중은 고양시가 20.8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성남시(13.10%),

창원시(12.07%), 용인시(10%), 수원시(7.68%) 순으로 나타남.

- 법인세분의 비중은 용인시가 46.91%로 가장 높고, 이후 수원시(44.97%), 창원시(40.72%), 성남시(37.84%), 고양시(28.79%) 순으로 나타남
- 특별징수분의 비중은 창원시가 39.52%가 가장 높고 이어 수원시(38.24%), 성남시(34.33%), 고양시(28.45%), 용인시(27.46%) 순으로 나타남
- 지방소득세 구성항목 중 양도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양시가 21.87%로 가장 높고 이어 용인시(15.63%), 성남시(14.72%), 수원시(9.12%), 창원시(7.67%) 순으로 나타남

[그림4-49] 5개 대도시 지방소득세 구성 비율(2017년 기준)

(단위: %)



출처 : 고양시 내부자료

- 2011년에서 2017년 사이 고양시와 4개 대도시 평균 지방소득세 추이는 다음과 같음
- 2011년 고양시의 지방소득세 총액은 966억 수준이었으나 2017년 1천 605억으로 2011년 대비 1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4개 대도시 평균의 지방소득세 총액은 2천 242억 수준이었으나 2017년 3천 488억으로 2011년 대비 55.6% 증가하였음

- 종합소득세분의 경우 고양시는 2011년 172억 수준에서 2017년 약 335억 원으로 약 94.8% 증가하였고, 4개 대도시 평균은 2011년 193억 수준에서 2017년 약 374억으로 2011년 대비 약 94.29% 증가하였음
- 양도소득세분의 경우 고양시는 2011년 179억 수준에서 2017년 약 350억으로 2011년 대비 96.16% 증가하였고 4개 대도시 평균은 2011년 206억 수준에서 2017년 약 428억 원으로 2011년 대비 108% 증가하였음

[그림4-50]지방소득세 세부항목 수입 추이(경기 고양시와 4개 도시 평균, 2011-2017년)

(단위: 백만원)



출처 : 고양시 내부자료

- 고양시 법인세분은 2011년 327억 수준에서 2017년 약 462억으로 2011년 대비 41.46% 증가하였고 4개 대도시 평균 법인세분은 2011년 898억 수준에서 2017년 약 1천 480억으로 2011년 대비 64.93% 증가하였음
- 고양시 특별징수분은 2011년 250억 수준에서 2017년 약 457억으로 2011년 대비 82.94% 증가하였고, 4개 대도시 특별징수분은 2011년 730억 수준에서 2017년 약

1천 205억으로 2011년 대비 65.11% 증가하였음

- 고양시 법인세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나 2015년부터 증가하여 2017년 462억 수준으로 집계되었음(2011년 대비 3.5배 증가)
- 4개 대도시 평균 법인세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6년 전년 대비 약 12% 감소하였으며 2017년에는 소폭 상승한 1천 480억 수준으로 집계됨
- 아래 [표4-11]은 5개 대도시의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지방소득세 구성항목 금액과 그 비율을 나타낸 것임

[표4-11]5개 대도시 지방소득세 구성항목 금액 및 비율(2011-2017년)

(단위 원 %)

연도	구분	지방소득세계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법인세분	특별징수분	종업원분
2011	경기 고양시	96,672,096,990 (100.0)	17,162,714,530 (17.75)	17,893,168,850 (18.51)	32,669,451,670 (33.79)	24,960,997,380 (25.82)	3,985,764,560 (4.12)
	경기 수원시	236,263,550,450 (100.0)	12,527,895,380 (5.30)	14,581,522,460 (6.17)	90,351,489,850 (38.24)	94,650,828,070 (40.06)	24,151,814,690 (10.22)
	경기 성남시	232,022,914,360 (100.0)	30,619,609,530 (13.20)	31,864,691,950 (13.73)	82,771,494,880 (35.67)	68,254,230,920 (29.42)	18,512,887,080 (7.98)
	경기 용인시	232,450,765,680 (100.0)	18,007,369,770 (7.75)	25,478,561,640 (10.96)	102,421,975,050 (44.06)	68,240,100,980 (29.36)	18,302,758,240 (7.87)
	경남 창원시	196,341,701,220 (100.0)	15,943,479,880 (8.12)	10,426,542,030 (5.31)	83,505,621,340 (42.53)	60,754,845,820 (30.94)	25,711,212,150 (13.10)
	4개 도시	224,269,732,928 (100.0)	19,274,588,640 (8.59)	20,587,829,520 (9.18)	89,762,645,280 (40.02)	72,975,001,448 (32.54)	21,669,668,040 (9.66)
2012	경기 고양시	97,605,187,180 (100.0)	19,872,975,730 (20.36)	13,106,224,230 (13.43)	32,813,535,880 (33.62)	27,202,428,030 (27.87)	4,610,023,310 (4.72)
	경기 수원시	240,823,738,220 (100.0)	14,743,001,590 (6.12)	11,502,969,290 (4.78)	85,679,100,950 (35.58)	103,408,246,920 (42.94)	25,490,419,470 (10.58)
	경기 성남시	249,587,020,530 (100.0)	35,566,376,050 (14.25)	25,637,779,900 (10.27)	85,467,436,060 (34.24)	80,260,659,770 (32.16)	22,654,768,750 (9.08)
	경기 용인시	226,589,169,860 (100.0)	20,169,422,260 (8.90)	21,412,363,590 (9.45)	98,732,123,380 (43.57)	66,392,729,880 (29.30)	19,882,530,750 (8.77)
	경남 창원시	217,652,344,890 (100.0)	20,934,930,520 (9.62)	10,962,954,470 (5.04)	93,432,645,830 (42.93)	64,369,509,440 (29.57)	27,952,304,630 (12.84)
	4개 도시	233,663,068,375 (100.0)	22,853,432,605 (9.78)	17,379,016,813 (7.44)	90,827,826,555 (38.87)	78,607,786,503 (33.64)	23,995,005,900 (10.27)

2013	경기 고양시	97,879,432,040 (100.0)	21,264,176,590 (21.72)	15,300,740,240 (15.63)	27,973,801,620 (28.58)	28,304,666,480 (28.92)	5,036,047,110 (5.15)
	경기 수원시	284,789,171,150 (100.0)	16,370,248,990 (5.75)	11,277,849,040 (3.96)	131,721,731,250 (46.25)	97,417,032,760 (34.21)	28,002,309,110 (9.83)
	경기 성남시	263,895,130,030 (100.0)	40,152,233,620 (15.22)	24,753,290,810 (9.38)	85,118,358,280 (32.25)	88,314,790,930 (33.47)	25,556,456,390 (9.68)
	경기 용인시	254,035,021,880 (100.0)	22,216,924,740 (8.75)	17,887,194,700 (7.04)	124,059,648,860 (48.84)	69,051,675,340 (27.18)	20,819,578,240 (8.20)
	경남 창원시	218,102,029,340 (100.0)	24,502,824,140 (11.23)	10,819,073,300 (4.96)	84,535,103,560 (38.76)	69,593,170,170 (31.91)	28,651,858,170 (13.14)
	4개 도시	255,205,338,100 (100.0)	25,810,557,873 (10.11)	16,184,351,963 (6.34)	106,358,710,488 (41.68)	81,094,167,300 (31.78)	25,757,550,478 (10.09)
2014	경기 고양시	94,249,775,810 (100.0)	21,791,502,520 (23.12)	15,355,035,120 (16.29)	25,953,403,250 (27.54)	30,644,519,540 (32.51)	505,315,380 (0.54)
	경기 수원시	302,494,259,330 (100.0)	17,785,676,880 (5.88)	15,043,168,450 (4.97)	146,994,564,500 (48.59)	118,487,326,890 (39.17)	4,183,522,610 (1.38)
	경기 성남시	284,497,351,970 (100.0)	41,660,533,170 (14.64)	34,175,492,790 (12.01)	90,898,281,470 (31.95)	114,734,909,520 (40.33)	3,028,135,020 (1.06)
	경기 용인시	261,656,519,901 (100.0)	24,076,056,850 (9.20)	24,748,830,200 (9.46)	133,536,763,840 (51.04)	77,581,032,691 (29.65)	1,713,836,320 (0.65)
	경남 창원시	216,510,997,568 (100.0)	23,959,221,140 (11.07)	14,954,534,820 (6.91)	97,621,025,320 (45.09)	76,653,353,578 (35.40)	3,322,862,710 (1.53)
	4개 도시	266,289,782,192 (100.0)	26,870,372,010 (10.09)	22,230,506,565 (8.35)	117,262,658,783 (44.04)	96,864,155,670 (36.38)	3,062,089,165 (1.15)
2015	경기 고양시	119,400,319,020 (100.0)	25,553,921,890 (21.40)	24,426,493,140 20.46	33,675,953,610 28.20	35,690,485,010 29.89	53,465,370 0.04
	경기 수원시	396,415,116,440 (100.0)	20,740,851,030 (5.23)	20,260,384,280 (5.11)	233,653,265,500 (58.94)	121,684,027,090 (30.70)	76,588,540 (0.02)

	경기 성남시	349,382,292,563 (100.0)	47,224,746,960 (13.52)	47,747,479,600 (13.67)	122,977,962,653 (35.20)	131,419,979,420 (37.61)	12,123,930 (0.00)
	경기 용인시	334,081,549,210 (100.0)	28,985,795,370 (8.68)	41,075,436,200 (12.30)	182,056,842,930 (54.49)	81,895,792,260 (24.51)	67,682,450 (0.02)
	경남 창원시	228,077,979,077 (100.0)	25,525,737,160 (11.19)	18,394,713,030 (8.07)	98,407,430,601 (43.15)	84,807,415,406 (37.18)	942,682,880 (0.41)
	4개 도시	326,989,234,323 (100.0)	30,619,282,630 (9.36)	31,869,503,278 (9.75)	159,273,875,421 (48.71)	104,951,803,544 (32.10)	274,769,450 (0.08)
2016	경기 고양시	136,447,253,340 (100.0)	29,320,748,200 (21.49)	31,668,285,970 (23.21)	36,195,906,370 (26.53)	39,261,988,680 (28.77)	324,120 (0.00)
	경기 수원시	319,593,218,300 (100.0)	24,373,270,520 (7.63)	26,675,440,620 (8.35)	157,024,109,080 (49.13)	111,442,477,390 (34.87)	77,920,690 (0.02)
	경기 성남시	387,632,887,280 (100.0)	54,763,130,100 (14.13)	54,083,688,200 (13.95)	152,500,137,390 (39.34)	126,268,709,420 (32.57)	17,222,170 (0.00)
	경기 용인시	315,169,954,640 (100.0)	31,433,749,480 (9.97)	46,323,663,200 (14.70)	148,885,790,410 (47.24)	88,522,464,630 (28.09)	4,286,920 (0.00)
	경남 창원시	244,884,590,038 (100.0)	29,426,119,330 (12.02)	19,207,439,380 (7.84)	104,209,584,548 (42.55)	91,998,116,470 (37.57)	43,330,310 (0.02)
	4개 도시	316,820,162,565 (100.0)	34,999,067,358 (11.05)	36,572,557,850 (11.54)	140,654,905,357 (44.40)	104,557,941,978 (33.00)	35,690,023 (0.01)
2017	경기 고양시	160,500,576,730 (100.0)	33,523,718,400 (20.89)	35,098,849,220 (21.87)	46,215,197,510 (28.79)	45,662,811,600 (28.45)	- (0.00)
	경기 수원시	366,554,233,060 (100.0)	28,136,113,700 (7.68)	33,427,733,530 (9.12)	164,834,623,470 (44.97)	140,154,022,480 (38.24)	1,739,880 (0.00)
	경기 성남시	447,641,266,260 (100.0)	58,657,983,520 (13.10)	65,878,444,280 (14.72)	169,376,402,960 (37.84)	153,686,967,590 (34.33)	41,467,910 (0.01)
	경기 용인시	344,414,439,970 (100.0)	34,431,989,740 (10.00)	53,837,212,530 (15.63)	161,574,719,620 (46.91)	94,570,518,080 (27.46)	- (0.00)

	경남 창원시	236,694,534,066 (100.0)	28,568,035,090 (12.07)	18,149,192,300 (7.67)	96,386,383,786 (40.72)	93,548,479,270 (39.52)	42,443,620 (0.02)
	4개 도시	348,826,118,339 (100.0)	37,448,530,513 (10.74)	42,823,145,660 (12.28)	148,043,032,459 (42.44)	120,489,996,855 (34.54)	28,550,470 (0.01)

출처 : 고양시 내부자료

3) 고양시의 특징

- 지방소득세는 4개 대도시 지방세 수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임(2017년 기준 성남 47%, 수원 43%, 용인 38%, 창원 32%)
- 그러나 고양시의 지방소득세 비중(28%)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지방세 수입 중 재산세의 비중(36%)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 2017년 기준 고양시 종합소득세 수입과 양도소득세 수입은 수원시와 창원시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성남시와 용인시의 동 구성항목의 수입이 높기 때문에 4개 대도시 평균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음
- 4개 대도시와 고양시의 지방소득세 수입 격차의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대도시에 비해 크게 적은 고양시 법인세분과 특별징수분 수입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두 항목 모두 4개 도시 평균 수입의 1/3 수준에 머물고 있음
-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登記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되며,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됨
- 이 경우 사업장별 신고 납부는 법인의 총 종업원 수와 총 건축물 연면적에서 해당 시·군 안의 종업원 수 및 법인의 차지하는 연면적 비율에 비례하여 이루어지므로 법인지방소득세는 해당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법인의 수와 규모에 비례하게 됨
- [표4-12]는 2017년 기준 5개 대도시 산업중분류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를 나타내며 [표4-13]은 2017년 기준 5개 대도시의 기업 규모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를 정리한 것임

[표4-12]5개 대도시 산업중분류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2017년 기준)

(단위: 개, 명)

지역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농업, 임업 및 어업	6	205	8	93	16	151	25	175	19	245
광업	0	0	0	0	0	0	11	201	12	81
제조업	2,603	40,880	3,252	38,166	4,259	30,570	3,251	55,040	6,372	126,898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8	652	25	970	9	523	13	212	14	726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62	823	70	1,551	90	1,471	87	1,498	120	1,602
건설업	2,014	23,468	1,811	33,576	1,802	18,816	1,334	15,461	2,337	25,939
도매 및 소매업	9,055	46,590	10,034	59,888	10,735	54,712	6,780	36,801	8,104	39,945
운수 및 창고업	437	11,731	546	10,137	661	12,152	622	14,475	817	13,931
숙박 및 음식점업	8,003	38,293	7,137	35,328	6,115	29,723	5,226	23,916	8,274	32,724
정보통신업	454	5,517	1,330	53,687	629	5,645	298	4,060	298	3,051
금융 및 보험업	787	14,752	654	11,263	538	8,067	321	4,755	928	15,265
부동산업	1,569	9,342	1,854	12,443	1,598	8,683	1,643	7,173	1,591	8,98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818	44,178	1,977	39,005	1,255	8,612	1,112	27,996	1,322	11,385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070	32,618	816	23,899	883	13,275	576	11,923	942	20,952
교육 서비스업	2,513	23,920	2,447	23,918	2,363	16,164	2,347	21,665	2,026	15,33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231	38,302	2,743	34,493	2,549	34,292	2,378	25,710	2,758	34,65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75	6,201	1,059	5,892	1,118	7,422	884	10,432	927	4,96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099	13,222	2,527	13,031	3,011	13,077	2,215	9,462	2,924	11,174

자료 : 고용노동부.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사업체노동실태현황』, 2017

[표4-13] 5개 대도시 기업 규모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2017년 기준)

(단위: 개, 명)

지역 구분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소기업 (50인이하)	37043	208708	37323	222825	37184	204332	28511	167446	38858	221195
중기업 (50~ 300인)	701	66675	860	89249	422	41263	564	58560	840	79864
중견기업 (300~ 1000인)	47	22893	88	41594	20	10812	39	16906	70	33382
대기업 (1000인 이상)	13	52418	19	43672	5	6948	9	28043	17	33414
합계	37804	350694	38290	397340	37631	263355	29123	270955	39785	367855

자료 : 고용노동부.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사업체노동실태현황』, 2017

- 2017년 기준 고양시의 전체 사업체 수는 37,631개로 성남시와 수원시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체가 종사자 규모 50인 이하(99.8%)의 소규모 업체임
 - 전체 종사자 수 역시 26만 3천여 명으로 고양시보다 8,500개 이상 기업체 수가 적은 용인시보다 7,600명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고용 규모 1000명 이상 대기업 및 종사자 수의 경우 고양시는 5개 6900여 명에 불과하여 1000명 이상의 대기업이 19개인 성남시와 동 규모 기업에서 5만 2천명 이상이 고용되어 있는 수원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종사자 규모에 따른 산업별 특징을 살펴보면 고양시의 경우 도·소매, 제조,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도·소매업 비중이 전체 산업별 종사자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음
- 다른 대도시 역시 도·소매업 비중은 1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창원시를 제외하면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수원, 성남, 용인), 정보통신업(성남) 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고양시는 다른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조업 및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 비중이 낮고 산업의 다변화가 부족한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이를 통해 볼 때 다른 대도시에 비해 고양시의 법인세분 수입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원인은 고양시 소재 기업 규모의 영세성 및 서비스업에 특화된 산업특징에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하며 특별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¹⁷⁾로서 이자, 배당,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자가 됨
- 근로 및 퇴직소득의 납세지는 납세의무자의 근무지가 되며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 처리하는 경우 납세지는 그 소득의 지급지가 됨
- 소득세법 제7조¹⁸⁾에 의하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원천징수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되며 원천징수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본점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됨
 - 그러나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 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獨立採算制)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될 수 있으나(소득세법 제7조 1항 4호), 대통령령¹⁹⁾으로 정하는 경우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해당 법인의 지점·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음

17)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로서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소득세법 127조).

18) 1.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함. 2. 원천징수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그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다만, 주된 국내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주지(居留地) 또는 체류지로 함.

19) 소득세법 제7조 제4항 4호 단서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3항 1호에 의해 국세청장으로부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해당 법인의 지점·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승인을 받은 경우 국세청장은 각 소득별로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승인할 수 있음.

제 5 장

시사점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의 시사점

제2절 정책제언

제절 연구의 시사점

1. 지방세 수입 영향요인 분석결과의 시사점

1) 시와 군의 지방세 수입 영향요인 분석결과의 시사점

- 지역의 GRDP는 시와 군 모두에서 지방세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분야의 활동이 많을수록 지역세수 증대 효과가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함
- 법인 수는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 다양한 지방세 세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음
 - 패널분석결과 법인 수는 시와 군 지역에서 지방세 수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영향력 정도는 군 지역에 비해 시 지역에서 약 1.4배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5-1]시와 군의 사업체 수 및 종사자 규모(2017년 기준)

(단위: 개, 명)

지역 구분	시		군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소기업(50인이하)	11921.53	69547.33	1665.22	9436.45
중기업(50~300인)	225.65	21952.24	26.99	2495.49
중견기업(300~1000인)	13.52	6490.85	1.06	477.30
대기업(1000인이상)	2.48	7202.99	0.19	398.43
합계	12163.19	105193.4	1693.468	12807.68

자료 : 고용노동부.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사업체노동실태현황』, 2017

- [표5-1]은 시와 군의 기업규모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규모의 평균을 나타냄
- 합계 기준 시의 평균 사업체 수는 군의 약 7.2배, 평균 종사자 수 규모는 약 8.2배 높게 나타남
- 시와 군의 사업체 수 및 종사자수 격차는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심해지고 있음
- 중견기업(300~1000명)의 경우 사업체 수는 12.7배 종사자 수는 13.6배 그리고 1000명 이상의 대기업에서는 각각 12.7배, 18.1배의 차이를 보임

[표5-2]시와 군의 산업중분류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2017년 기준)

(단위: 개, 명)

지역 구분	시		군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농업, 임업 및 어업	20.88	212.72	21.21	180.19
광업	6.55	108.65	5.32	54.35
제조업	2154.89	32026.85	301.96	4217.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9.08	382.17	4.99	148.6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52.59	645.37	14.18	125.40
건설업	696.33	7566.40	159.86	1304.44
도매 및 소매업	2688.15	13282.27	296.22	1235.97
운수 및 창고업	238.68	4097.68	38.70	424.06
숙박 및 음식점업	2237.37	9484.12	309.56	1219.39
정보통신업	109.07	1699.75	13.00	69.38
금융 및 보험업	207.97	3209.88	37.90	396.21
부동산업	410.77	2153.33	26.73	108.1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68.89	4581.24	37.55	278.3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69.36	4891.15	33.12	314.08
교육 서비스업	604.60	5202.60	47.08	407.4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49.72	10376.28	119.13	1530.8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96.12	1827.12	35.61	323.3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2.16	3445.83	191.36	470.05

자료 : 고용노동부.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사업체노동실태현황』, 2017

- [표5-2]는 시와 군의 산업중분류 기준 평균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를 정리한 것임
- 종사자 규모 기준 시 지역과 군 지역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산업 분야는 정보통신업(24.5배), 부동산업(20배),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6.5배), 사업시설 관리,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5.6배), 교육서비스업(12.8배) 등임
- 이를 통해 볼 때 시와 군의 '인구 1000명당 법인 수' 변수의 영향력 차이는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 시·군세의 주요항목이 법인의 규모 및 산업부문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
- 한편 인구증가율은 군과 달리 시 지방세 수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고령자 비율은 시·군 모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지가상승률과 징수율 그리고 수도권 여부 등은 시와 군의 지방세 수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2)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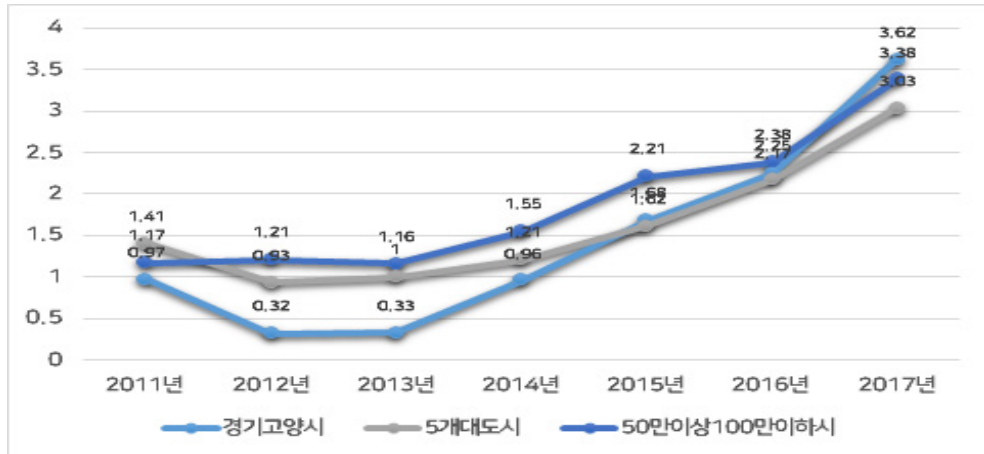
- 동 분석결과를 통해 볼 때 시의 지방세 수입 증가를 위해 다음의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첫째, 고용창출 효과가 큰 규모 있는 양질의 기업유치 및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부문 육성 등이 필요함
 - 둘째, 중·소 도시의 경우 인구의 지속적 유입을 위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 셋째,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안 마련 및 지역 가치 상승을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이 필요함

3) 인구 규모에 따른 시 지방세 수입 영향요인 분석결과의 시사점

- 시 지방세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요인의 영향력은 도시 규모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100만 대도시의 경우 지역의 부가가치 영향력이 중·소 도시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산업 특화 시 전략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부문을 유치,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유사한 맥락에서 다른 중·소 도시의 경우 기업체의 수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으나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단순한 기업체 수 보다는 기업의 유형 및 규모가 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대도시의 경우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부문의 고용파급 효과가 큰 양질의 기업유치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음
- 중·소도시와 달리 대도시의 경우 단순한 인구증가가 아닌 담세력을 지닌 인구의 유입이 필요하며 특히 고령 인구는 소도시와 달리 시 지방세 수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동 결과는 다른 중·소 도시 고령인구에 비해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인구의 지방세 수입증대 기여도가 높은 것을 나타냄
- 고양시의 경우 도시환경과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담세력을 지닌 노인 인구 정주에 유리한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그림5-1]지가변동률 추이(도시규모별, 2011-2017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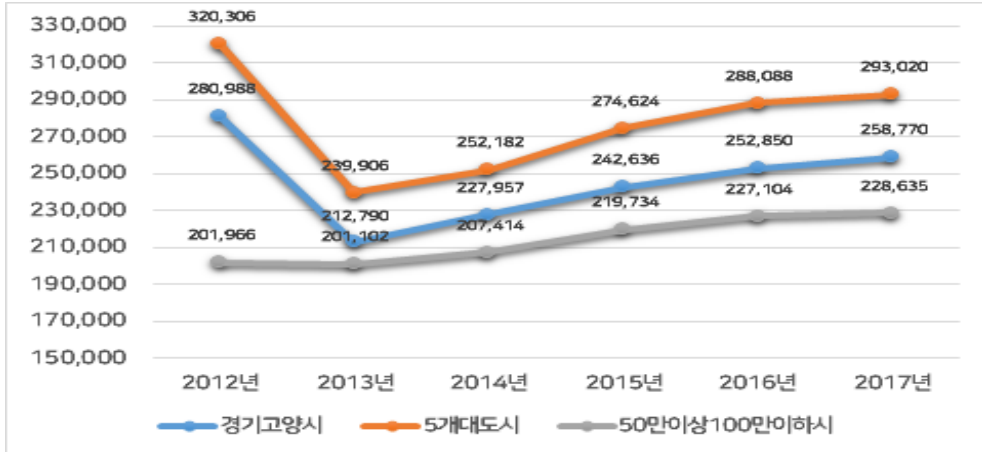
자료 : 한국감정원 “지가변동률(시도/시/군/구)”, 『전국지가변동률조사』, 각 년도

- 지가상승률은 시 전체 수준과 50만 이하 도시에서 1인당 지방세 수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지가상승률과 1인당 지방세 수입은 오히려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음
 - 이는 지가상승으로 인한 세입증가 효과가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의해 희석된 결과라 할 수 있음
 - 한편 대리변수인 아파트 가격에 비추어 볼 때 고양시의 지가는 다른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양시의 경우 지가 상승은 지방세 수입증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고양시는 2012년 이후 5개 대도시 중 가장 높은 지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른 4개 대도시에 비해 자가 비율이 높기 때문에²⁰⁾ 고양시의 투자 및 재산가치 증가 측면에서 고양시의 지가상승은 지방세 수입증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²⁰⁾ 본 보고서 63페이지 참조

[그림5-2]아파트 가격 추이(도시규모별, 2012-2017년)

(단위: 천원)



자료 : 한국감정원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시도/시/군/구)”,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각 년도

- 패널분석결과에 의하면 지방세징수율은 지방세 수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인구 50만 이하 소도시에 비해 대도시에서 그 영향력이 2배 이상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이는 대도시의 경우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방세 수입 증대를 위한 가장 우선 순위의 대안임을 의미한다고 할 것임
- 아래의 [표5-3]은 2011년에서 2017년 사이의 5개 대도시 지방세징수율을 정리한 것임. 고양시 이외의 4개 대도시의 평균 지방세 징수율은 96.3% 수준으로 고양시의 평균 지방세 징수율 93.7%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양시는 5개 대도시 중 가장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음

[표5-3] 5개 대도시 지방세 징수율(2011-2017년)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
경기고양시	93.6	92.4	92.9	94.4	93.6	94.4	94.5	93.69
경기수원시	96.6	96.3	96.4	96.9	96.8	96.1	99.7	96.97
경기성남시	95.5	95.0	95.7	96.1	97.0	97.1	97.4	96.26
경기용인시	94.6	94.2	95.0	95.0	94.7	95.4	95.5	94.91
경남창원시	97.6	97.7	97.5	97.3	97.0	96.9	99.4	97.63
시전체 평균	95.6	95.4	95.7	95.9	95.5	95.9	96	95.71

출처 : 고양시 내부자료

- 2011에서 2017년 사이의 5개 대도시 세목별 징수율은 다음과 같음
- 먼저 주민세의 징수율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분석기간 동안 고양시의 평균 주민세 징수율은 91.9%로 5개 대도시 중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
 - 2017년 기준 경기 성남시의 주민세 징수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창원시(98%), 용인시(97.9%), 수원시(97.9%), 고양시(94.6%)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5-4] 5개 대도시 주민세 징수율(2011-2017년)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
경기고양시	88.5	89	87.4	93.9	94.5	95.3	94.6	91.89
경기수원시	90.3	90.7	90.7	98.3	98.3	97.5	97.9	94.81
경기성남시	89.4	89.6	89.4	98.2	98.4	98.7	98.7	94.63
경기용인시	92.4	92.5	92.3	98.4	98.1	97.6	97.9	95.60
경남창원시	94.3	95	94.9	98.6	98.6	97.9	98	96.76

출처 : 고양시 내부자료

- 재산세 징수율 역시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분석기간 고양시의 평균 재산세 징수율은 96.5%로 5개 대도시 중 4번째 수준이며 용인시의 평균 재산세 징수율(95%)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
- 2017년 기준 성남시의 재산세 징수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수원시(97.9), 창원시(97.8), 고양시(97.4), 용인시(96) 순으로 재산세 징수율이 높게 나타남

[표5-5] 5개 대도시 재산세 징수율(2011-2017년)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
경기고양시	96.4	96.1	95.3	96.7	96.7	97.2	97.4	96.54
경기수원시	96.7	96.8	97.2	97.8	97.5	97.7	97.9	97.37
경기성남시	96.3	96.5	96.6	97.6	97.8	98.2	98.4	97.34
경기용인시	94.7	93.9	94.5	94.9	95.2	95.2	96	94.91
경남창원시	97.1	97.6	97.9	98.1	98.2	96.9	97.8	97.66

출처 : 고양시 내부자료

- 고양시 자동차세 징수율의 경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증가하다가 2015년 감소 후 2016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음
 - 분석 기간 평균 고양시의 자동차세 징수율은 91.6%로 가장 낮은 수준임
 - 2017년 기준 용인시와 창원시의 자동차세 징수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기 수원시(93.4%), 성남시(94.2%), 고양시(91.4%)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5-6] 5개 대도시 자동차세 징수율(2011-2017년)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
경기도양시	91.4	92.5	92.4	92.7	89.7	90.9	91.4	91.57
경기수원시	94.6	94.5	94.4	94.5	91.8	92.4	93.4	93.66
경기성남시	93.3	94.4	94.3	94.7	92.8	93	94.2	93.81
경기용인시	94.4	95	94.6	95.1	91.8	93	94.4	94.04
경남창원시	97	97.3	97.1	96.8	94	94.4	94.4	95.86

출처: 고양시 내부자료

- 고양시 지방소득세 징수율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11년 83.7%에서, 2017년에는 2011년 대비 7.6% 포인트 증가한 91.3%로 집계됨
 - 분석 기간 고양시의 평균 지방소득세 징수율은 88.7%이며 5개 대도시 중 수원시가 가장 높은 평균 징수율(96.7%)을 보이고 있음
 - 2017년 기준 성남시의 지방소득세 징수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경기 수원시(97.2%), 창원시(96.5%), 용인시(94.9%), 고양시(91.3%)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5-7]5개 대도시 지방소득세 징수율(2011-2017년)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
경기도양시	83.7	88.5	86.7	89.5	90	91.1	91.3	88.69
경기수원시	96.3	96.9	96.4	96.7	97.7	96	97.2	96.74
경기성남시	93.2	95	95	95.1	97.3	97.1	97.4	95.73
경기용인시	93.3	93.8	95	94.1	94.6	95.9	94.9	94.51
경남창원시	97.5	97.8	97.2	96.3	97.3	97.5	96.5	97.16

출처: 고양시 내부자료

- 담배소비세의 경우 2017년 기준 모든 자치단체에서 10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음

[표5-8]5개 대도시 담배소비세 징수율(2011-2017년)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
경기도양시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00
경기수원시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00
경기성남시	100	100	100	96.4	100	100	100	99.49
경기용인시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00
경남창원시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00

출처: 고양시 내부자료

- 징수율은 대도시에서 지방세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고양시의 징수율은 유사 대도시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2017년 기준 유사 자치단체에 비해 지방소득세 징수율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개인지방소득세 징수율에서 기인함²¹⁾

²¹⁾ 지방세법 제95조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규정에 의하면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표5-9]5개 대도시 종합소득세 징수율(2011-2017년)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
경기도양시	79.9	77	78	82.8	81.4	79.1	81.1	79.90
경기수원시	83.6	78.4	80.1	78.1	82	73.3	82.3	79.69
경기성남시	90.2	82	90.4	90.1	91.2	90.7	90.3	89.27
경기용인시	80.5	78.8	85.2	86.1	80.5	84.3	80.2	82.23
경남창원시	89.8	87	89.8	84.5	87.7	90	87.3	88.01

출처 : 고양시 내부자료

[표5-10]5개 대도시 양도소득세 징수율(2011-2017년)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
경기도양시	75.7	65	73.4	75.6	80.6	90.3	88.2	78.40
경기수원시	79.5	76.1	76.8	83	88.1	90.6	93.7	83.97
경기성남시	84.3	83.7	82.5	86.7	94.4	94.6	95.4	88.80
경기용인시	82.6	73.5	76.4	81.9	85.8	90.5	89.8	82.93
경남창원시	89.7	88.5	82.4	89.3	94.2	95.2	92.6	90.27

출처 : 고양시 내부자료

확정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3조의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및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세법 부칙에서 개인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여 신고와 납부를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0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자진신고 유도, 신고절차 불편 최소화 방안 등이 선제적으로 고안될 필요가 있음(서희열 외, 2018).

[표5-11] 5개 대도시 법인세 징수율(2011-2017년)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
경기도양시	93.7	85.2	91.6	95.8	96.7	96.5	95.6	93.59
경기수원시	98.8	98.5	97.9	98.7	99.4	99.2	98.8	98.76
경기성남시	96.9	94.8	95.6	95.2	98.5	98.4	99	96.91
경기용인시	95.1	97.1	97.2	95.3	98.6	98.4	98.1	97.11
경남창원시	98.5	99	98.8	98.1	98.6	98.5	97.4	98.41

출처 : 고양시 내부자료

- 현재 고양시의 지방세 징수율은 다른 4개 대도시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므로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2. 5개 대도시 지방세 세목별 세부항목 수입현황 비교결과의 시사점

-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당해 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지역 인구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날 수 있으며 분석 결과 역시 동 수입은 인구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고양시의 인구는 2019년 9월 현재 1,059,340명으로 향후 제3기 신도시 건설 등 인구증가 유인이 있으므로 개인균등분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고양시와 다른 4개 대도시 주민세 수입의 차이는 법인균등분과 종업원분 수입 격차에서 기인함
 - 고양시의 경우 수원, 창원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사업체 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균등분과 종업원분 수입 모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법인균등분은 지역 내에 사무소 내지 사업소를 둔 법인의 사업소별로 과세되며 자본금 내지 출자금 수준과 종업원 수에 따라 표준세율로 부과되므로 법인의 수와 동시에 법인의 규모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종업원분은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급여총액의 일정비율(5/1000)를 납부하게 되며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3,500만 원 이하일 경우 면세되므로 사업체의 규모에 큰 영향을 받게 됨
- 패널분석 결과에 의하면 대도시 지방세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제적 변수는 지역의 GRDP와 실업률임
 - 따라서 부가가치 및 고용과급효과가 높은 규모 있는 기업체의 유치 및 육성이 매우 중요한 고양시의 과제라 할 수 있음
- 고양시의 지방소득세 수입은 다른 대도시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러한 격차의 원인은 법인세분과 특별징수분 수입 차이에서 기인함
- 법인세분 납세지는 그 법인의登記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되며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됨
 - 한편 사업장별 신고 납부는 법인의 총 종업원 수와 총 건축물 연면적에 해당 시·군 내 종업원 수와 법인의 건물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례하여 납부하게 됨
 - 따라서 법인지방소득세 수입은 해당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법인의 수와 규모에 비례하게 됨
 - 고양시 소재 사업체의 대부분은 50인 이하의 소규모이며 산업부문도 다른 지역에 비해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 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이 부족한 특징을 보임
 - 따라서 고양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낮은 수입 원인은 이러한 고양시 소재 기업의 규모 및 산업특징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고양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증대를 위해서는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부문의 전략적 육성과 규모 있는 기업유치를 위한 정책적 대안 모색이 필요함
- 특별징수의무자는 결국 소득의 지급자이므로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는 지역에 위치한 사업체 수 및 사업체에 종사하는 인원 규모와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됨
 - 또한 본점일괄납부는 지역에 본사 혹은 주사무소가 위치할수록 세수증대에 유리

한 제도이므로 지사나 영업소가 많이 있는 지역에서 본사 혹은 주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으로 지방세 수입이 이전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 재산세는 고양시의 지방세 수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세목임
 - 2017년 기준 고양시 재산세는 4개 도시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용인, 성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분 및 토지분의 세입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
 - 고양시의 지역가치는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재산세액은 과표에 의해 결정되므로 과표설정의 적절성에 관한 점검이 필요하며, 특히 비교표준지가 지역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제2절 정책제언

1.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

- 패널분석 및 자치단체 현황 비교분석 결과 고양시 지방세 수입증대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부가가치 및 고용과급 효과가 높은 규모 있는 기업의 유치라 할 수 있음

1)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근거로 한 규제 완화 방안 모색

- 고양시는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²²⁾에 속해 있어 인구집중유발 시설의 신설(증설) 행위 제한, 부담금, 과밀억제구역 내의 취득세 중과 등의 규제로 인해 기업의 이전 및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세 중과는 지방세법 13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신축, 증축) 취득, 법인설립 및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를 위한 부동산 취득 그리고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중과하고 있음
- 한편 고양시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2조 1호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²³⁾으로 동 조항에 의한 경기도 접경지역에는 양주, 동두천, 포천 등이 있음
- 동 법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은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

²²⁾ 현재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등 다양한 규제의 중복 적용 대상 지역임.

²³⁾ 민간인통제선 이남(以南)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군을 의미함.

립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시·군의 의견을 듣고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소속하에 접경지역정책심의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접경지역발전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시 고양시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중복규제에 따른 고양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규 기업 진입이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동법 2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축·증축하는 자 또는 접경지역으로 회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에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2조 1호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 중 고양시만 유일하게 과밀억제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동법 20조 및 지역 간 형평성 논리에 근거하여 고양시의 취득세 중과적용 배제를 위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접경지역특별법 제3조에서 동법은 접경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나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동법 제3조 단서조항 개정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2) 탄력세를 활용한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므로, 기업 유치를 위한 유인책의 일환으로 탄력세율을 활용한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세율을 낮출 경우 고양시의 법인지방소득세가 감소할 것이므로 세율감소의 인센티브

- 로 인해 고양시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규모와 그로 인한 세수증대 효과, 그리고 감소되는 법인소득세 수입 정도에 관한 비교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비교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탄력세율의 활용 여부 혹은 적정 세율 등이 판단되어야 할 것임

2. 본점일괄납부제도 활용 및 지점, 영업소 등의 납세지 변경(유지) 유도

- 고양시에 소재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사, 영업소 등의 납세지 현황 파악을 통해 고양시 내에 본점 내지 주사무소가 위치한 경우 원천징수 본점일괄납부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아닌 지점이나 영업소 그리고 사업장의 경우 그 사업장 소재지인 고양시를 납세지로 변경(유지)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고양시 특별징수분 증대를 모색할 수 있을 것임

3. 재산세 과세표준의 적정성 검토

- 토지·건축물 주택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곱으로 산출됨. 고양시의 아파트 가격은 2013년 대비 22% 상승하였으며, 2017년 기준 지가 변동률은 고양시가 3.62%로 5개 대도시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과 연동되어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표준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고양시의 지역 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징수촉탁제 및 세입징수포상금 제도의 적극적 활용

- 징수촉탁제도란 지방세 체납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경우 세무공무원이 해당 주소지 또는 재산소재지의 세무공무원에게 체납세금 징수를 위탁하는 제도임
- 징수포상금은 세금징수에 특별한 기여를 한 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을 의미함
 - 이는 시민 또는 세무 공무원들로 하여금 과세관청의 탈루세액 포착에 도움을 주거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등 세금징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제적 유인(incentive)을 제공하는 제도로 지방세징수법 제18조²⁴⁾와 지방자치법 제22조²⁵⁾를 근거로 하고 있음
- 고양시 역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징수촉탁에 의해 세입증대에 기여하거나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 등과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거나 탈루세액 혹은 부당한 환급 감면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등에게 세입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징수촉탁의 대상에는 건설기계, 현금, 채권, 대여금 등 다수의 재산이 이에 포함되나 이동성이 존재하는 자동차의 특성상 징수촉탁의 주요 활용 대상은 자동차세임 (최원구·김진아, 2017)
- 자동차세의 경우 2009년부터 전국에 걸쳐 징수촉탁제도가 도입·운영되고 있으며, 징수액의 촉탁수수료는 30% 수준임
- 한편 징수촉탁실적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은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으로 규정되어 있음²⁶⁾
- 2017년 기준 고양시의 자동차세 징수촉탁 수수료 지급금액은 약 664만원으로 4개

²⁴⁾ 지방세기본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세무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음(지방세징수법 제18조 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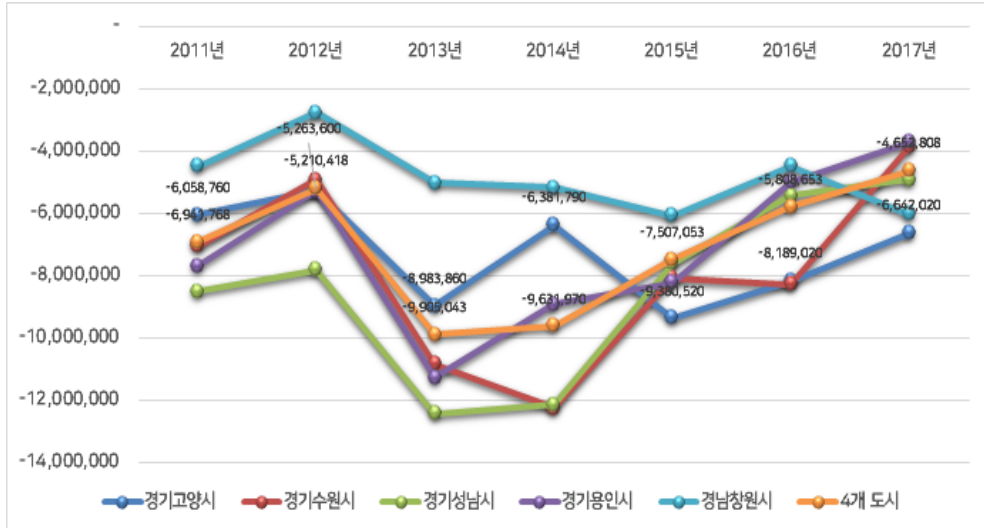
²⁵⁾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지방자치법 제22조).

²⁶⁾ 고양시의 경우 체납세 징수 시 수탁기관 교부금의 10%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여 자동차세 징수촉탁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고양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도시 평균에 비해 다소 높은 수치임

[그림5-3]5개 대도시 징수축탁 수수료(2011~2017년)

(단위: 원)



출처 : 고양시 내부자료

[표5-12]5개 대도시 징수축탁 수수료(2011년~2017년)

(단위: 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경기 고양시	6,058,760	5,263,600	8,983,860	6,381,790	9,380,520	8,189,020	6,642,020
경기 수원시	7,057,580	4,938,320	10,866,330	12,265,690	8,074,870	8,289,010	3,889,700
경기 성남시	8,509,810	7,832,220	12,441,860	12,151,060	7,612,300	5,435,570	4,943,240
경기 용인시	7,704,970	5,280,840	11,280,240	8,926,650	8,247,620	5,004,380	3,732,030
경남 창원시	4,494,710	2,790,290	5,031,740	5,184,480	6,093,420	4,505,650	6,046,260
4개도시 평균	6,941,768	5,210,418	9,905,043	9,631,970	7,507,053	5,808,653	4,652,808

출처 : 고양시 내부자료

- 징수율은 대도시 지역 지방세 수입에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세무공무원 뿐 아니라 고양시 일반 시민들 역시 고양시 징수율 제고를 위한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징수포상금 제도운영에 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의 신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징수촉탁 실적을 늘리기 위한 노력 역시 강구될 필요가 있음

5. 대도시 재정권한 확보를 위한 노력의 지속

- 우리나라의 경우 과세부인(tax denial) 및 과세제한(tax restriction)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으며, 시·군의 탄력세율 활용을 통한 세수확충은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지방자치법」 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대도시에 대한 재정 및 사무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2019년 3월 발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인구 100만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고 있으며 고양시를 포함한 4개 대도시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더불어 100만 대도시 위상에 부합하는 재정권한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
- 100만 대도시 재정 특례와 관련하여 현재 지방소비세 인상분의 대도시 직접교부,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지방소득세 세율조정, 도와의 취득세 공동과세 등 다양한 대안이 논의되고 있음
- 대도시 재정수요에 부합하는 재정 권한의 확보를 위해 4개 대도시의 지속적 공조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고양시 재정 권한 확대의 성과는 고양시 지방세 수입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6. 신장성 높은 세외수입 발굴 및 증대방안 모색

-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수입을 의미함
- 이러한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운영, 서비스제공, 재산관련 수입 등 그 수입원이 다양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충실한 특징이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수입증대가 가능하며 수입원 개발의 잠재력 또한 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권한이 제약된 상황에서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신장성 높은 세외수입 항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활용할 필요가 있음
- 2014년 대비 2017년 5개 대도시와 고양시의 세외수입 중 평균 20% 이상 증가한 항목은 다음의 [표5-13]과 같음

[표5-13] 지방세외 수입 20% 이상 증가 항목(2014년 대비 2017년)

지역	항목
5개 대도시	국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 입장료 수입, 기타수수료, 징수교부금 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일반부담금, 불용품매각대, 과태료, 보상금수납금, 기부금, 지난해도수입
고양시	도로사용료,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기타수수료, 징수교부금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불용품매각대금, 변상금및위약금, 과태료, 그 외 수입
5대 대도시와 고양시 차이	국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 입장료 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일반부담금, 불용품매각금, 보상금수납금, 기부금, 지난해도수입

자료 :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

- 5개 대도시 지역에서 신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고양시의 경우 활용이 미진한 세외수입 항목은 국·공유 재산임대료, 입장료 수입, 일반부담금 수입 등임
- 향후 동 항목 수입증대방안의 적극적 모색을 통해 고양시 세외수입 기반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고양시의 경우 대규모 투자사업(킨텍스 제3전시장, 한류월드, 일산테크노벨리, 방송영상문화콘텐츠벨리 등)이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우수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동 자원의 상호 연계를 통해 입장료, 사용료, 임대료 등의 세외수입 확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곽채기(2005).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1-31.
- 국회예산정책처(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
- 김민정·김필현(2018). 『중소기업 고용지원을 위한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제도의 고용창출 효과 분석』,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2017(31) : 1-75.
- 김성준(2002). “수요모형의 계량적 추정을 통한 효과적인 담배소비억제 정책 연구”, 『한국행정학보』, 36(3) : 154-167.
- 김양희(2017). “한미 FTA 계기 국내 자동차세 개정에 대한 연구”, 『한일경상논집』, 75(0) : 167-188.
- 김용익, 이규식, 황성현, & 강광하(2003). 『담배가격 인상과 재원활용방안』,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 38-51.
- 김원년·서정하(2005). “담배가격인상이 보건의료지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 28(1) : 133-147.
- 김태호(2015). “지방세 결손처분 및 체납처분중지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32(4) : 199-218.
- 김혜련(2007). “우리나라에서 흡연율의 사회계층별 불평등과 변화추이”, 『보건사회연구』, 27(2) : 25-43.
- 민희철(2012). “가구의 담배 구매 여부 및 수요량 결정에 대한 분석”, 『2012년 한국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 민희철(2013). “소득이 담배수요에 미치는 효과 분석”, 『보건사회연구』, 33(3) : 31-58.
- 박상수·유보람(2016). 『재산세 과표결정의 문제점 및 개편방향』,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5(3) : 1-141.
- 배인명·양기용(1995). “지역경제의 지방재정수입에 대한 효과분석: 시정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9(3) : 771-783.
- 복문수(2013).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비세의 비교분석: 신 세제 도입과 증분성, 형평성 및 책임성의 비교”,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3) : 167-199.
- 서희열·손창용·박금서·김태호(2018).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의 합리적인 도입방안』, 위탁연구보고서, 2018(7) : 1-115.
- 성명재·박노옥(2003). 『지방세 세목별 세수추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손희준(2014). “주민세 제도의 개선방안”, 『지방계약연구』, 5(2) : 33-59.
- 오문성(2016).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조정에 관한 소고(小考)-대법원 2015.6. 23. 선고 2012 두 2986 판결을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33(1), 167-199.
- 오병기(2009). “글로벌 경제 위축 하의 지방세수 감소와 정책과제”, 『지방재정과 지방세』, 17 : 7-21.
- 유태현(2015). 신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세입 확충방안 연구. 재정정책논집, 17(2), 97-125.
- 유태현·임상수·김태호(2018). 『재정분권강화를 위한 지방세수 기반확충 실행방안』, 위탁연구보고서, 2018(12).

- 유호람·윤성만(2017). “담배소비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34(2) : 147-175.
- 유훈·신희권·이재원(2015). 『지방재정론』, 서울: 법문사.
- 윤영진(2018). 『새지방재정론』, 대영문화사.
- 이달근·하혜수·정정화, 전주상·김철희(2012). 『지방자치론』, 서울: 박영사.
- 이상훈·김홍환·마정화·이정훈·이유진(2017).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지방세외수입 운영체계 개선』,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6).
- 이승종(2014). 『지방자치론』, 박영사.
- 이영·나성린(2007). “한국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 추정”. 『한국경제연구』, 19 : 151-171.
- 이영희·주만수·최병호·홍서빈(2012).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세원조정 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 이영희(2012). “재정책임성 제고를 위한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 재조명”, 『한국정책학회보』, 21(3) : 361-386.
- 이창규·서희열·박상수·하등용(2018). 『전자담배에 대한 합리적인 지방세 과세 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차보고서.
- 임성일(1991). “지방세 수입탄력성의 추정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6(3) : 69-76.
- 임재만(2015). 『서울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학술연구용역 보고서.
- 장상록(2013). “지자체칼럼: 자동차세 체납액 시주관 [구, 군간 징수촉탁제] 전국 최초 도입, 시행”, 지방세포럼, 11, 76-84.
- 장상록(2016). “지방소득세 납세지 문제점에 관한 고찰”, 『자치발전』, 7 : 120-123.
- 전병욱(2019).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부동산 분석』, 5(1) : 35-43.
- 전승훈(2013). “담배소비세 및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 및 세부담 변화: 소득분위별 분석”, 『재정정책논집』, 15(4) : 89-121.
- 정재연, 기은선(2017).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 정현우·유태현(2019).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 있어 이중과세 문제 개선방안 - 조세조약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재정정책논집』, 21(1) : 157-186.
- 조은주·이영환(2018). “현행 법인지방소득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의정논총』, 13(1) : 71-110.
- 주만수·최병호·서정섭(2010). 『경제활동과 지방세원의 연계문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과제, 1-96.
- 최병호·정종필·이근재(2011).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면세점 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 최성은(2014).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최원규·김진아(2017). 『지방세 징수촉탁제도 개선방안 :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1-69.

- 하능식·고은비(2019a). 『주민세 재산분 과세체계 개편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2018(23) : 1-88.
- 하능식·최진섭·고은비·김병남(2019b). 『지방소득세 자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해외사례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 하능식·이선영(2016). 『재산분 주민세 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차보고서, 2016 : 72-74.
- 하능식(2014). 『정책분 지방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연구: 담배소비세와 주민세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 하능식·김필환·이선화·김민정·신미정·이선영(2017). 『중장기 지방세제 발전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6).
- 하태중(2017). “전기차(EV) 등 자동차세 개선 방안 - 경자동차세 도입에 따른 지방세수 확충”, 『지방세포럼』, 35(0) : 120-136.
- 허등용(2018). “개인지방소득세 세수격차의 소득 원천별 기여도 분석 및 납세지 개편에 대한 시사점”, 『재정학연구』, 11(2) : 105-128.
- 한국조세연구원(2008). 『흡연 관련 국민부담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정책과제』, KT&G 수탁 보고서.
- 한국지방세연구원(2017). 『한국지방세60년사 제 3권 지방세 운영』, 한국지방세연구원.
- 행정안전부(2018).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 Bird, R. M. Tax assignment revisited. Working paper, *University of Toronto*. 2000
- Chaloupka, F. J., & Warner, K. E. “The economics of smoking”. *Handbook of health economics*. 1(2000) : 1539-1627.
- Fisher, R. C. *State and local public finance*. Tompson higher edu. 2007
- Gujarati, D. N. *Basic econometrics*, McGraw-Hill Education, 2012.
- Harvey, R., & Gayer, T. Public finance. *McGraw-Hill Higher Education*. 2007
- McLure Jr, C. E. “The tax assignment problem: ends, means, and constraints”. *Austl. Tax Forum*. (1994) : 153-183.
- Musgrave, R. A., Musgrave, P. B., and Bird, R. M. “Public finance in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McGraw-Hill*. 5(1989)
- Oates, W. E. *Fiscal federalism*.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1972.
- Weingast, B. R. “Second generation fiscal federalism: Implications for decentralized democratic gover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Available at SSRN 1153440*. 2006
- World Bank. “Economics of Tobacco Toolkit”. 2004
- 고양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 법인세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자치법

경기 고양시(2017). 『사회조사 보고서』.

경기 성남시(2017). 『사회조사 보고서』.

경기 수원시(2017). 『사회조사 보고서』.

경기 용인시(2017). 『사회조사 보고서』.

경기도(2017). 『경기통계연보』.

경기도(2017). 『사회조사 보고서』.

경남 창원시(2017). 『사회조사 보고서』.

고용노동부(2011-2017).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시도/시/군/구)”, 『사업체노동실태현황』.

보건복지부(2011-2017). “흡연율(시도/시/군/구)”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청(2011-2017). “주민등록인구(시도/시/군/구)”, 『주민등록인구현황』.

한국감정원(2012-2017).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시도/시/군/구)”,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한국감정원(2011-2017). “지가변동률(시도/시/군/구)”, 『전국지가변동률조사』.

행정안전부(2011-2017). 『지방세 통계연감』.

지방재정365 <http://lofin.mois.go.kr>. 접속일 2019.07.31.

Abstract

A study on finding measures to increase local tax revenue in Goyang City

Howon Suk*, Juhyun Lee*

This study aims to explore ways to increase local tax revenue in Goyang City based on the panel data analysis that examines how different influence factors affect local tax revenue, and the comparative analysis that reviews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local tax revenue in five large cities (Goyang, Suwon, Seongnam, Yongin, and Changwon)

The analysis period is from 2011 to 2017. The targets of panel data analysis are Si (city) which are divided according to population size (0.5 million, 1 million) and Gun. The comparative analysis is for the status of revenue of 5 large cities' local tax items including Goyang city for each year.

The results of panel data and comparative analysis are as follows:

When it comes to the cities that have over one million in population, the influence of GRDP is very large compared to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it is thus necessary to be strategic to attract and nurture high-value-added industrial sectors special to the area. Unlike medium and small cities, it is significant for large cities to enhance the inflow of people with the ability to pay taxes, not just population growth. Also, the aged population, unlike in smaller cities, positively

* Goyang Research Institute, Goyang, Korea

influence local tax revenue;

The results of comparative analysis of 5 large cities' tax items show that the local tax revenue of Goyang City is significantly smaller compare to other cities. The difference in resident tax revenue between Goyang City and four other metropolitan cities is mainly due to the gap between the corporate portion per capita and the employee portion. The reasons for low income tax revenue in Goyang are attributed to low revenues from local corporate taxes and special collection.

Also, the property tax revenue in Goyang City fell below the average of the 4 other cities, which resulted from the comparatively low revenues from housing and land portion to Yongin and Seongnam city.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measures:

First, as Goyang City is a part of the so-called 'over-concentration control region' under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it is difficult to relocate and attract companies due to heavy acquisition taxes in controlled region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seek measures to ease regulations in Goyang City based on the provisions of tax exemption in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border area". Additionally, the government can consider reducing corporate local income tax burden of corporations through flexible tax rates;

Second, get the status of locations by checking where sales, regional and main offices, or perhaps headquarters in Goyang City are. For the purpose of paying corporate local income taxes, if the head or principal office of a corporation is located in Goyang City, it is necessary to suggest the utilization of the withholding system, and if sales or branch offices or just a place of business,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change (or maintain if it is) Goyang to a place to pay taxes;

Third, there needs to actively promote the utilization of the collection reward system and devise measures to promote citizens' access to reporting for the enhancement of the local tax collection rate in Goyang, and to examine whether the

reference land and housing prices in Goyang truly reflect the rapidly changing regional values of Goyang City;

Finally, many large-scale investment projects are under way and outstanding tourism resources are in place in Goyang. Greater efforts should be made to increase non-tax revenues by making better use of these resources.